

이 과제는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책
연구용역사업의 일환으로 연구되었음

다문화가족의 중장기 전망 및 대책 연구: 다문화가족의 장래인구추계 및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설동훈 · 서문희
이삼식 · 김명아

2009



보건복지가족부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이 보고서는 연구진의 연구용역 수행 결과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중장기 전망 및 대책 연구:
다문화가족의 장래인구추계 및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설동훈 · 서문희

이삼식 · 김명아

2009년 10월



보건복지가족부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A Study of the Medium- to Long-term Prospects and Measures of Multicultural Family in Korea:

On the Focus of the Population Projection of Multicultural Family in
Korea, and the Analysis of Its Socio-economic Impacts on Korean Society

Dong-Hoon Seol
Moon-Hee Suh
Sam-Sic Lee
Myoung-Ah Kim

October 20, 2009



보건복지가족부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75 Yulgok-ro, Jongno-gu, Seoul 110-793, Korea

제 출 문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연구용역 ‘다문화가족의 중장기 전망 및 대책 연구: 다문화가족의 장래인구추계 및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을 중심으로’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9 · 10 · 20

연구수행기관: 사단법인 한국이민학회

연구책임자: 설 동 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서 문 희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

이 삼 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 명 아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시간강사)

연구조원: 박 순 영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최 효 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최 석 호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감사의 글

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여러 분들의 헌신적인 도움을 받았다. 장래인구추계에 대해 자문을 해 주신 서울대 사회학과 권태환 명예교수님, 아주대 사회학과 최진호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델파이조사 설계와 미래 예측작업에 도움을 주신 이해경 배재대 교수님, 정기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책기획실장님, 한건수 강원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님, 이정혜 IOM한국사무소 대표 등 한국이민학회 회원들, 전광희 충남대 교수님, 김태현 한국교원대 교수님 등 한국인구학회 회원들께 감사드린다. 이 분들은 질문지 검토, 조사 결과 해석, 보고서 작성 등 연구의 각 단계에 걸쳐 도움을 주셨다. 여러 분들의 도움과 협조에 힘입어 이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

2009년 10월 20일

연구진을 대표하여 설동훈

『다문화가족의 중장기 전망 및 대책 연구: 다문화가족의 장래인구추계 및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요약문

설동훈 · 서문희 · 이삼식 · 김명아

1.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및 방법

1) 연구목적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정착 이민자라 할 수 있는 ‘결혼이민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장래인구를 추계하는 작업과 그들의 유입이 한국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이민자를 수용한 나라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다 가지지만, 그 중 어떤 측면이 더욱 중요한가는 나라마다 또 상황마다 달리 나타나므로, 한국의 사정은 어떠한가를 파악하기로 한다. ‘다문화가족의 인구추계’와 ‘결혼이민자 유입이 한국사회에 던지는 긍정적-부정적 효과 분석’을 토대로, 다문화가족 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 이 세 가지 작업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첫째 과제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 즉 다문화가족의 장래인구를 추계하여, 정책 대상 규모를 예측하는 데 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는 ‘결혼이민자’를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으로 규정한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다문화가족’은 ① ‘결혼이민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②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의 대상은 모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모두 아우른다. 전자를 결혼이민자, 후자를 혼인귀화자로 파악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는 ‘외국 국적을 가진 결혼이민자’와 ‘한국 국적을 가진 혼인귀화자’를 아울러 결혼이민자라 부르기로 한다. 그렇지만 국적취득자를 적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혼인귀화자’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추계하려고 하는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에 국한한다. 한국인 배우자가 그 과거 한국인과 결혼하여 낳은 자녀는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손자녀 또는 그보다 후세 자녀들도 포함하지 않는다.

둘째, 2020년의 시점에서 이민자 수용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한국사회가 맞볼 수 있는 편익과, 지출해야 하는 비용의 내용과 각각의 크기를 파악한다. 2009년과 2020년의 사회 전체적 수준의 총편익과 총비용을 계산하고, 이어서 2020년 ‘이민자 사회통합 지원 비용’(정부 예산)의 크기를 계산한다. 그리고 지원 비용 중 사회복지비용을 파악한다.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보장 수급자 수를 토대로 2020년의 다문화가족 수급자 수를 추산하고, 또 다문화가족 자녀 보육 현황과 보육료 지원 비용을 추산한다.

셋째,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과 전망 하에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비전과 대책을 수립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내용에 따라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첫째, 국제결혼 또는 이민 현상은 한국정부의 정책뿐 아니라 송출국의 정책, 송출국 사회의 요인, 국내 결혼 시장의 변화 등 여러 요인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가정을 하고, 제한된 조건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 장래인구추계 방법은 ‘조성법(造成法) 또는 코호트요인법’(cohort component method)을 이용하기로 한다. ‘조성법’은 기존 인구 자료를 기초로 인구동태율(출생, 사망, 이민율 등)을 반영하여 매년 7월 1일 기준 장래 인구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통계청에서는 『장래인구추계』를 할 때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삼아 조성법을 적용한다. 추계인구는 기준일이 7월 1일인 연앙(年央)인구로, 2009년 다문화가족 인구인 확정인구(population estimates)와 향후 인

구변동(출생, 사망, 국제이동)을 고려하여 작성된 장래추계인구(population projections)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2009년 다문화가족 기초현황자료를 토대로 조성법을 적용하여 장래인구를 추계하였다.

둘째, 결혼이민자 수용의 편익-비용 분석 방법은 두 단계에 걸쳐 있다. 우선, 2009년의 결혼이민자 수용에 따른 편익-비용의 구성요소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 각각의 편익과 비용의 상대적 크기를 계산한다. ‘총비용 중 정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면, 편익-비용의 각 구성요소별 금액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 다문화가족 1인당 정부예산의 증가율을 조사하여, 2020년의 장래추계인구가 2009년 인구보다 몇 배 많은 지를 계산하여 그 값을 곱하면, 2020년에 필요한 정부예산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핵심이 되는 수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델파이(delphi) 기법을 채택한다. 그것은 미래의 현상을 연구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예측하고자 하는 문제에 관하여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분석하고 분류·정리하는 일련의 절차라 할 수 있다. 델파이 기법은 연구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을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정보를 객관화할 수 있다. 델파이 기법은 정확한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미래 예측과 추정 작업에 널리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인구추계와 델파이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이민자 수용의 편익-비용 분석, 정부의 결혼이민자 지원 비용 분석, 그리고 사회복지비용 분석을 수행한다.

셋째, 경험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세부 대책을 만들었다.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효과를 최대한으로 억제하는 정책을 개발하려고 한다. 주요 방법은 이론과 문헌연구다. 초안이 완성된 후에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그것을 정교화 하였다.

2. 다문화가족 인구 추계

1) 추계 방법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족 추계는 가족성원으로서는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주민과

한국인배우자 및 자녀 각각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은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로 세분하여 추계한다. 남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중국 조선족, 중국 한족, 미국, 일본, 기타국적으로 세분한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중국 조선족, 중국 한족,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몽골, 태국, 기타국적으로 세분한다. 추계 기간은 2010~2020년이다.

다문화가족 구성원 추계 방법으로는 ‘조성법(造成法)을 적용한다. 조성법은 기준연도(t)의 각 세별 인구(연령 a)에 출생을 더하고 사망을 감하며 순이동인구(외국으로부터 이입인구 - 외국으로 이출인구)를 더하여 다음해(t+1) 연령 a+1세 인구를 추계한다. 한편, t+1년도의 0세 인구는 t년도의 15~49세 여성인구에 해당 연령의 출산율을 적용하여 구한다. 조성법은 인구변동요인 즉, 출산, 사망, 인구이동의 변화에 대해 가정함으로써, 추계결과로 인구변동지표를 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조성법은 성별 및 연령별 추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본 연구에서 조성법을 적용한 주요 목적이기도 하다.

조성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은 외국인과 한국인배우자가 국제결혼 후 국내에 체류할 경우에 형성되는 가족으로서, 결혼신고를 하였으나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경우와 이혼하여 국외로 이동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이동상태는 추계대상에의 포함 또는 배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국제결혼이동의 패턴은 취업, 유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국제이동의 패턴과 다르다. 이에 따라 본 추계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국제이동률을 적용하되, 국제결혼부부(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에 대해서는 국제결혼이동 패턴(추이)을 적용하도록 한다. 즉, 국제결혼부부 인구 추계에 적용하는 인구균형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P(t+n) = P(t) + B - D + MI - DE$$

(P 인구, B 출생수, D 사망자수, I 유입인구, E 유출인구, t는 년도, MI는 국제결혼 후 체류자수, ME는 국제결혼 후 해외 체류자수, DE는 국내체류자 중 이혼 후 이출자수)

국제결혼부부 인구 추계에 적용하는 인구균형방정식을 구성하는 각 요소의 개념, 기준, 이용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기준인구(base population): 보건복지가족부의 2009년 다문화가족 기초현황자료를 이용하였다. 인구추계시 기준인구는 연앙(年央, mid-year) 시점의 인구로 설정한다. 다문화가족 기초현황자료 구축 일자(5월 1일)와 연앙일자(7월 1일) 간에 2개월 차이가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2009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다문화가족의 변동사항(출생, 사망, 이입 또는 이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추계에서는 2009년 5월 1일 이후 2개월간의 변화가 전체 다문화가족의 규모나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세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연령을 2009년 7월 1일자 기준으로 환산하여 출신국별·성별·연령별 연앙인구를 설정하였다.

② 출산력: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산력은 출신국의 사회·경제적 및 보건의료적 환경, 한국으로 이입한 집단의 특수성(학력수준 등), 한국인남편 및 가족의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남성결혼이민자의 한국인부인도 한국의 사회환경, 국제결혼을 선택한 집단의 특수성, 외국인배우자의 특성(출신국이나 가치관) 등의 영향을 받아 일반적인 한국인여성과 다른 출산력을 가질 것이다.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추계에서는 출신국별로 출산력을 산정·적용하였다.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배우기간출산율(period marital fertility rate)을 적용하였다. 주된 이유로 출산율 산정(출생아수÷여성수)시 분모가 되는 여성결혼이민자 또는 남성결혼이민자의 한국인부인 모두는 기혼여성으로서, 일반적인 기간출산율 산정 시와 달리 분모에 미혼여성이 포함될 수 없기 때문이다. 유배우출산율은 모의 연령별 출생아수(조사 자료에서 2008·5·1~2009·4·30 기간 출생한 자녀 수 이용)를 해당연령의 여성인구(모두 기혼여성으로 0세 자녀수 산정 시 적용된 기간의 중간 시점인 2008년 11월 1일 기준으로 연령을 환산하여 적용)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그리고, 결혼이민여성 또는 결혼이민남성의 한국인부인의 출산력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마련이나, 일반적인 인구추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추계에서도 현 출산율이 2020년까지 그대로 지속된다는 중위(中位)가정을 적용하였다. 출생성비의 경우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배우자가 성장하였던 사회문화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다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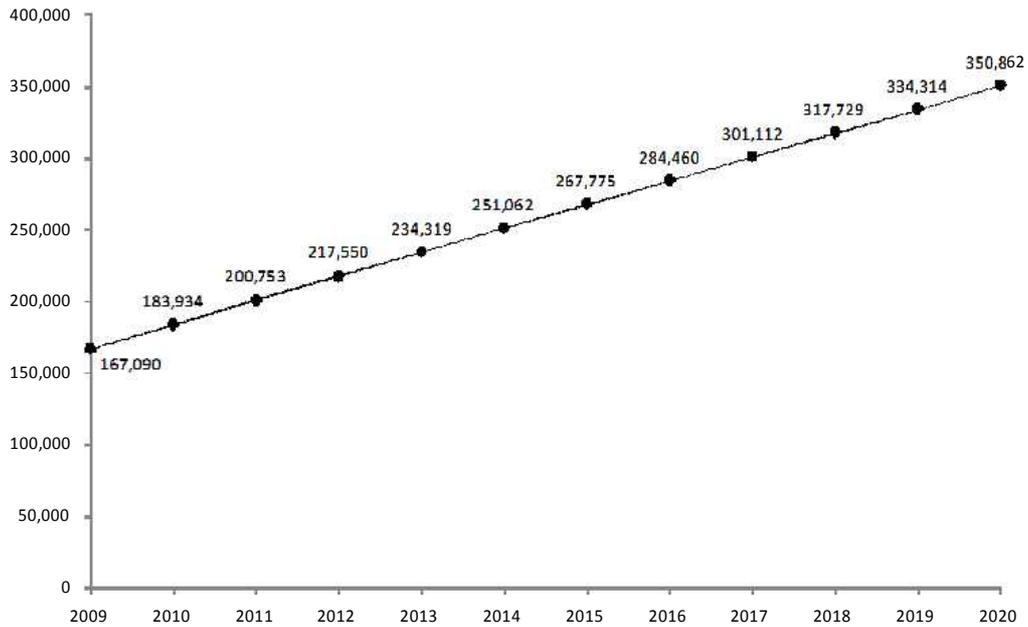
수 있다. 따라서 본 추계에서는, 출생아를 남녀별로 구분하기 위해 통계청의 2006년 한국 장래인구 추계 시 설정하였던 출생성비 변화 가정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③ 사망력: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결혼이민자와 자녀의 사망력이 장기적인 체류 과정에서 한국인 사망력에 근접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한국인 평균 사망력을 적용하였다. 한국인 평균 사망력으로는 통계청의 2006년 인구추계 가정으로서 성별·연령별 사망확률을 이용하였다.

④ 국제이동력: 결혼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혼이민자와 배우자의 국제이동력(또는 다문화가족의 범위에서의 이출 또는 이입)은 ‘최근 3년(2006~2008년)간 국제결혼 및 국제이혼 건수의 평균치 중 국내거주율(또는 국내잔존율)’을 적용하였다. 국내잔존율은 결혼이민자의 성별 및 출신국별 현 인구규모와 출생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출신국별로 성·연령별 인구나 출생아수(0세 자녀수)의 규모를 지나치게 급격하게 변동(증감)시키지 않은 수준의 결혼 및 이혼 후 잔존율을 설정하였다. 이렇게 설정한 잔존율은 2020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국제결혼부부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한국인의 일반적인 국제이동력으로서, 통계청의 2006년 인구추계 가정인 2000~2005년간 성별 연령별 국제순이동률의 평균치를 적용하였다.

2) 결혼이민자 수 추계 결과

총 국제결혼이민자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 167천명에서 2020년 351천명으로 110.0%(연평균 6.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성결혼이민자는 2009년 17천명에서 2020년 39천명으로 128.3%(연평균 7.5%) 증가하며, 여성결혼이민자는 동 기간 150천명에서 312천명으로 107.9%(연평균 6.7%) 증가할 것으로 각각 전망된다. 즉, 여성결혼이민자는 남성결혼이민자에 비해 2009년 8.7배 많으나 남성결혼이민자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그 격차는 2020년 7.9배로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제결혼 중 ‘한국인남편-외국인아내’ 형태가 지배적이나, 점차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에 따라 ‘외국인남편-한국인아내’ 형태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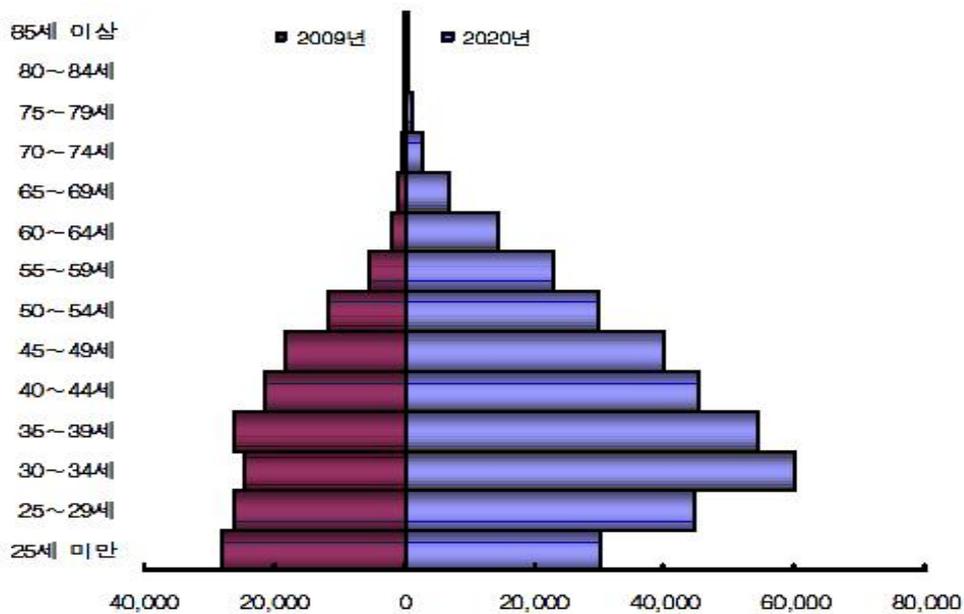
[그림 1] 결혼이민자의 장래인구추계, 2009~2020년

출신국별 결혼이민자 증가율의 차이로 인하여, 출신국별 결혼이민자의 분포도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비중은 2009년 중국 조선족 41.3%, 중국 한족 22.8%, 미국 6.3%, 일본 3.2% 등의 순이며, 기타국가들의 비중은 26.5%로 나타난다. 조선족과 한족을 합한 중국 출신이 64.1%로 거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추계 결과에서도 출신국별 순위는 동일하게 나타나나, 그 비중은 사뭇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조선족(38.0%)과 중국 한족(20.2%)의 중국출신이 58.2%로 줄어들고, 미국(3.3%)과 일본(2.9%)의 비중도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기타국가들의 비중은 2009년 26.5%에서 2020년 35.5%로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로써 동남아시아 근로자들이 국내에서 결혼하여 정착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비중은 2009년 중국 조선족(31.1%), 중국 한족(29.9%), 베트남(20.4%), 필리핀(6.4%), 일본(3.2%), 캄보디아(1.9%) 등의 순이었으나, 2020년에는 중국 조선족(31.0%), 중국 한족(22.1%), 베트남(26.2%), 필리핀

(5.9%), 일본(3.7%), 캄보디아(2.8%) 등의 순으로 변화될 전망이다. 조선족의 비중은 크게 변하지 않은 반면, 한족과 필리핀의 비중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베트남, 일본, 캄보디아, 기타국가 등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 비중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요컨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중국 중심에서 다국화(동남아시아 국가 등) 경향이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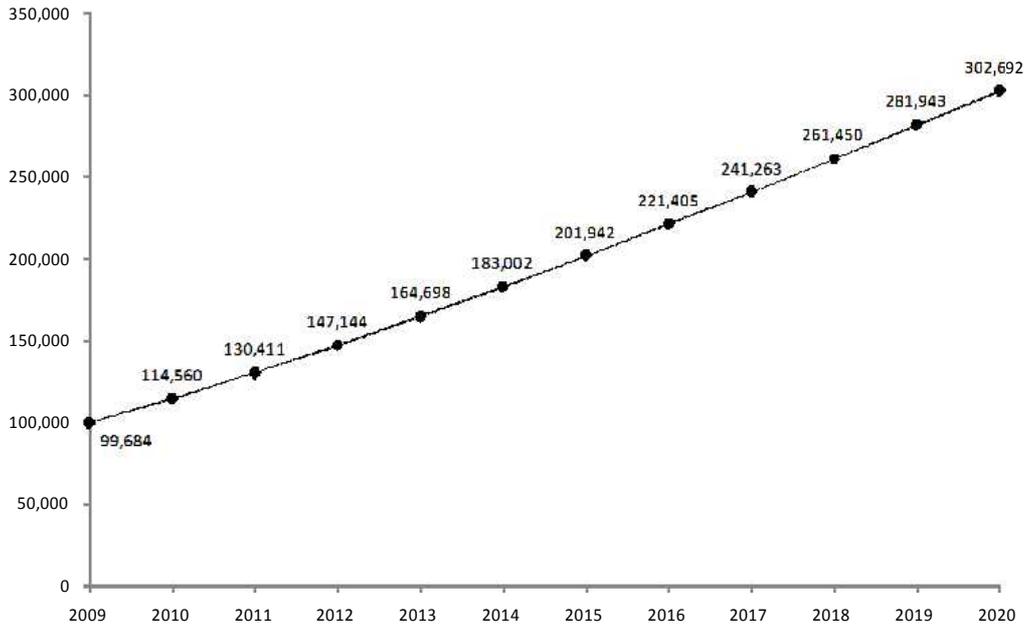
결혼이민자 유입 기간이 길어지면서, 결혼이민자의 연령 구성도 2009년과는 달라질 것이 명백하다. 2009년과 2020년의 성별·연령별 인구구성 자료를 비교하면,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최다수 집단이 20대에서 30대로 바뀔 것이고, 남성 결혼이민자는 40대에서 30대로 바뀔 것이다. [그림 2]는 성별 구분 없이 연령별로만 2009년과 2020년 사이의 인구 구성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2020년에는 30세 미만 결혼이민자 수는 상대적으로 적고, 30세 이상 결혼이민자 수가 많아지는 형태로 바뀔 것이다.



[그림 2] 결혼이민자 연령별 인구 구성의 변화, 2009~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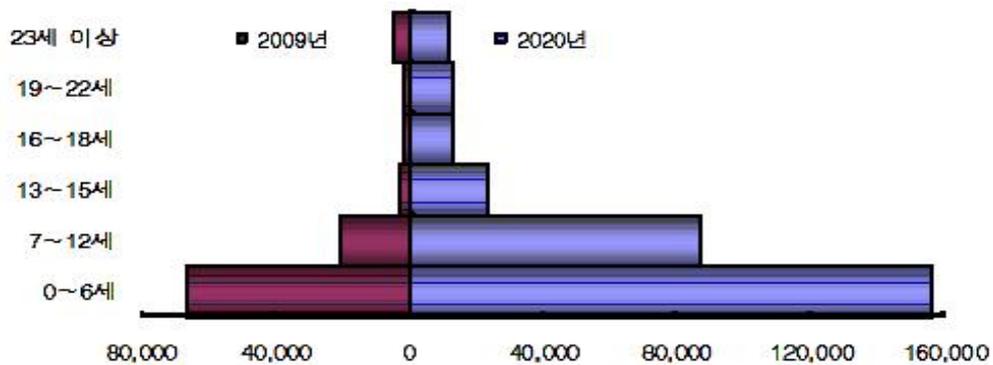
3) 결혼이민자의 자녀수 추계 결과

결혼이민자의 자녀수는 출신국별 가입여성인구 규모와 그들의 출산력에 의해 결정된다. [그림 3]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의 자녀수는 2009년 현재 총 99.7천명이며, 그것은 2020년 302.7천명으로 약 2배(203.7%, 연평균 10.1%) 증가할 전망이다. 남성결혼이민자의 자녀수는 동 기간 5.7천명에서 15.8천명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수는 93.9천명에서 286.9천명으로 각각 증가할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수의 증가율은 205.4%로, 남성결혼이민자 자녀수의 증가율 175.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일반적으로 남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들이 중국, 일본, 미국 등으로 상대적으로 저출산 성향이 강해오다가, 그들의 배우자인 한국여성들의 저출산 성향도 강하다. 반면,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는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상대적으로 고출산 성향이 높은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한 출산 성향의 차이가 향후 출신국가별 결혼이민자의 자녀수 증가 추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 결혼이민자 자녀의 장래인구추계, 2009~2020년

출신국별 결혼이민자 자녀수의 증가율 차이가 두드러짐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자녀수의 출신국별 분포도 변화할 전망이다. 2009년 남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로 자녀수 비중은 기타국가(42.4%), 조선족(26.2%), 한족(17.6%), 미국(7.7%), 일본(6.1%) 등의 순이었으며, 2020년에도 그 순위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그렇지만 기타국가의 비중이 56.6%로 증가하는 반면, 조선족(20.5%), 한족(14.9%), 미국(4.6%), 일본(3.5%) 등의 비중은 줄어들 전망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로 자녀수 비중은 2009년 한족(25.4%), 조선족(24.3%), 베트남(22.5%), 필리핀(10.9%) 등의 순이나, 2020년에는 베트남(41.0%), 조선족(15.9%), 한족(14.4%), 필리핀(8.3%), 캄보디아(8.1%) 등의 순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그림 4] 결혼이민자 자녀의 학령별 인구 구성의 변화, 2009~2020년

한편, 결혼이민자의 자녀의 연령 구성은 결혼이민자의 결혼시기(국내이입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내 이입시기가 빠를수록 결혼이민자의 연령이 높을 것이며, 이에 따라 자녀들의 연령도 높을 것이다. [그림 4]에는 2009~2020년의 결혼이민자 자녀의 학령별 인구구성이 제시되어 있다. 결혼이민자의 증가에 따라 모든 학령기에서의 결혼이민자의 자녀수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육·유아교육기 아동(0~6세)은 2009년 66.8천명에서 2020년 156.2천명으로 100%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초등학교학령기 아동(7~12세)은 동 기간 20.1천명에서 86.6천명으로 4배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중학교학령기 아동(13~15세)은 3.2천명에서

23.1천명으로 7배 수준, 고등학교학령기 아동(16~18세)은 1.9천명에서 12.9천명으로 6배 이상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대학교학령기 인구(19~22세)는 2.2천명에서 12.6천명으로 6배 정도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노동참여가능인구(23세 이상)는 4.7천명에서 11.3천명으로 2배 이상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남성결혼이민자와 여성결혼이민자 간의 연령별 자녀 구성은 다소 정도 차이가 있으나 거의 유사하며, 향후에도 유사하게 변화할 전망이다. 이러한 결혼이민자의 자녀수의 증가 속도 및 규모는 보육정책, 교육정책, 노동정책 등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수 추계결과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다문화가족 구성원 수 추계, 2009~2020년

(단위: 명, 비)

연도	결혼이민자	자녀	전체	결혼이민자	자녀	전체
2009년	167,090	99,684	266,774	1.000	1.000	1.000
2010년	183,934	114,560	298,494	1.101	1.149	1.119
2011년	200,753	130,411	331,164	1.201	1.308	1.241
2012년	217,550	147,144	364,694	1.302	1.476	1.367
2013년	234,319	164,698	399,017	1.402	1.652	1.496
2014년	251,062	183,002	434,064	1.503	1.836	1.627
2015년	267,775	201,942	469,718	1.603	2.026	1.761
2016년	284,460	221,405	505,865	1.702	2.221	1.896
2017년	301,112	241,263	542,375	1.802	2.420	2.033
2018년	317,729	261,450	579,179	1.902	2.623	2.171
2019년	334,314	281,943	616,257	2.001	2.828	2.310
2020년	350,862	302,692	653,554	2.100	3.037	2.450

3. 결혼이민자 수용의 사회·경제적 비용-편익 분석

1) 이민자 수용의 사회·경제적 편익과 비용 추계 방법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영역을 ① 노동시장, ② 복지, ③ 사회적 고립, 공간적 격리 극복, ④ 문화 향유, ⑤ 정치 참여, ⑥ 연쇄이민

(가족이민, 이민의 장기 지속) 여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영역에서 편익과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여섯 가지 영역의 상대적 중요성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고, 각 영역 내부에서 편익과 비용이 동시에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델파이조사를 위한 질문 문항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 델파이’ 방법을 시행하되, 이-메일을 통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2009년 10월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한국이민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인구학회의 세 학회 회원으로 이민연구 경력이 있거나 현장·정책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였다. 델파이 질문지는 다문화가족 증가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포함한다. 제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이민자 수용으로 인한 편익-비용의 항목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핵심이었다. ① 노동시장, ② 복지, ③ 사회적 고립, 공간적 격리 극복, ④ 문화 향유, ⑤ 정치 참여, ⑥ 연쇄이민의 영역에서 이민자 수용으로 인한 편익과 비용의 내용을 기술하라고 요구하였다. 제1차 조사에는 21명이 응답하였다.

제1차 조사 결과 응답 내용을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각 영역별로 응답자들이 편익과 비용으로 제시한 응답을 정리하여 제2차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제1차 조사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제2차 조사는 그들의 의견을 정확히 측정(measurement)하는 데 주력하였다. 각 질문별 선택지로 리커트(Likert) 척도를 제시하여 고르게 하거나, 수치를 직접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민자 수용으로 인한 편익과 비용의 비교, 여섯 개 영역의 상대적 중요성 평가, 비용과 편익의 크기 측정, 2020년 이민자 통합 지원 비용의 증가율 등을 측정하였다. 제2차 델파이 조사에는 22명이 응답하였다.

2) 결혼이민자 수용의 사회·경제적 편익과 비용 분석 결과

<표 2>는 2009년과 2020년의 결혼이민자 수용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과 비용을 계산한 것이다. 2009년 결혼이민자 수용의 편익과 비용의 금액을 계산하면, 한국사회 전체의 편익은 1,171억 원이고, 비용은 1,148억 원으로, 23억 원의 편

익이 발생한다. 노동시장 영역에서의 편익은 242억 원, 비용은 179억 원으로 편익이 62억 원만큼 발생한다. 사회복지 영역의 편익은 156억 원, 비용은 231억 원으로 편익이 -74억 원만큼 발생한다. 사회적 고립과 공간적 격리 극복 영역의 편익은 169억 원이고 비용은 203억 원으로 편익이 -34억 원 만큼 발생한다. 문화영역의 편익은 254억 원이고 비용은 168억 원으로 편익이 86억 원만큼 발생한다. 정치영역의 편익은 148억 원이고 비용은 186억 원으로 편익이 -38억 원만큼 발생한다. 연쇄이민영역의 편익은 202억 원이고 비용은 181억 원으로 편익이 21억 원만큼 발생한다. 요컨대, 2009년 결혼이민자 수용의 편익과 비용은 노동시장, 문화, 가족이민과 이민의 장기지속의 영역에서는 순편익이 발생하고, 사회복지와 사회적 고립 및 공간적 격리 극복, 정치영역에서는 순비용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표 2> 결혼이민자 수용의 편익과 비용, 2009~2020년

(단위: 억 원; 2009년 불변가격)

	2009년			2020년		
	편익	비용	편익-비용	편익	비용	편익-비용
전체	1,171	1,148	23	4,726	4,633	93
노동시장	242	179	62	975	725	251
사회복지	156	231	-74	632	931	-299
고립·격리	169	203	-34	681	820	-138
문화	254	168	86	1,025	677	348
정치	148	186	-38	598	751	-153
연쇄이민	202	181	21	814	730	85

2009년 물가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2009년의 다문화가족 1인당 지원비용이 100이라고 가정하고, 2009~2020년 다문화가족 구성원 1인당 지원 금액의 증가율을 조사한 결과, 평균 증가율은 164.8%로 계산되었다. 이 평균 증가율을 이용하여 2020년의 다문화가족 구성원 1인당 지원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020년 다문화가족 1인당 지원 금액은 1,148억 원으로 추정되며, 그 결과를 이용하여 2020년 다문화가족 수용에 따른 총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 2009년에 비교해서 2020년의 다문화가족 구성원 수는 2.45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므

로, 총비용은 4,633억 원으로 추산된다.

<표 2>에는 2020년의 결혼이민자 수용의 편익과 비용이 2009년 불변가격으로 제시되어 있다. 2020년의 전체적인 편익은 4,726억 원이고, 비용은 4,633억 원으로, 순편익이 93억 원 발생할 것으로 계산된다. 세부영역으로 보면, 노동시장 영역에서는 편익이 975억 원, 비용이 725억 원으로, 251억 원의 순편익이 발생한다.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편익이 632억 원, 비용이 931억 원으로, 299억 원의 순비용이 발생한다. 사회적 고립과 공간적 격리 극복 영역에서는 편익이 681억 원, 비용이 820억 원으로, 138억 원의 순비용이 발생한다. 문화영역에서는 편익이 1,025억 원, 비용이 677억 원으로, 348억 원의 순편익이 발생한다. 정치영역에서는 편익이 598억 원, 비용이 751억 원으로 153억 원의 순편익이 발생한다. 연쇄이민 영역에서는 편익이 814억 원, 비용이 730억 원으로, 85억 원의 순편익이 발생한다. 요컨대, 2020년 결혼이민자 수용에 따른 총편익이 총비용에 비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영역별로 분석해 보면, 노동시장, 문화, 연쇄이민 영역에서는 순편익이 발생하고, 사회복지, 사회적 고립과 공간적 격리 극복, 정치 영역에서는 순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3> 결혼이민자 지원 비용 정부예산, 2009~2020년

(단위: 억 원; 2009년 불변가격)

	2009년		2020년	
	금액	%	금액	%
전체	511	100.0	2,063	100.0
한국어 또는 교육 지원	318	62.2	884	42.9
이민자·가족 지원	120	23.5	570	27.6
다문화 환경 조성사업 및 기타	61	11.9	458	22.2
사회통합이수제 관련 사업	12	2.3	151	7.3

<표 3>은 2009년 정부 예산으로 사용하는 결혼이민자 지원 비용의 구성 내역과 2020년 필요한 것으로 계산된 내역을 보여준다. 2009년도 결혼이민자 지원 비용(정부예산)은 다문화가족 지원 부처 예산을 근거로 하여 산출한 것이다. 2009년도 결혼이민자 지원 총금액은 511억 원이고, ‘한국어 또는 교육 지원’은 318억 원,

‘이민자·가족 지원’은 120억 원, ‘다문화 환경 조성사업 및 기타’는 61억 원, ‘사회통합이수제 관련 사업’은 12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0년 결혼이민자 또는 그 자녀 지원 비용 금액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총비용은 2,063억 원이며, ‘한국어 또는 교육 지원’은 884억 원, ‘이민자·가족 지원’은 570억 원, ‘다문화 환경 조성사업 및 기타’는 458억 원, ‘사회통합이수제 관련 사업’은 151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3) 결혼이민자 수용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아동 양육 비용 분석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은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다. 2009년 4월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8,249명인데, 그 중 5,503명은 외국인이고, 2,746명은 국적취득자다. <표 4>에서는 시도별 유형 건수를 기초로 기초생활 수급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수를 산출하여 전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비 비율을 산출하였다. 유형 건수로 산출한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수는 각각 4,051명, 7,024명으로 총 11,075명이다. 이는 전체적으로는 수급자의 0.77%이고 20세 이상 수급자 기준으로는 1.07%에 해당한다.

<표 4> 시도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비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 수급자 비율

(단위: 명, %)

시도	전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A)	20세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B)	기초생활보장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결혼이민자	배우자	계 (C)	전체대비 비율 (C/A)	20세이상 대비 비율 (C/B)
전체	1,444,010	1,038,677	4,051	7,024	11,075	0.77	1.07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표 5> 연령별 성별 보육시설 이용 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수 및 전체 대비 비율

(단위: 명, %)

구분	합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이상	비고
전체	23,103 (39.05)	1,327 (7.05)	5,091 (38.98)	6,051 (67.75)	4,638 (65.55)	3,597 (58.48)	2,399 (46.97)	561	23,664

주: ()는 전체 아동 대비 비율.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4) e-보육 자료.

<표 5>에 제시된 2009년 4월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총 23,103명으로, 전체 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의 39.05%다. 이용률은 연령별로 보면 0세아 7.1% 1세아 39.0%, 2세아 67.8%, 3세아 65.6%, 4세아 58.5%, 5세아 47.0%이다. 시설유형별로 시설 이용 아동 분포를 살펴보면, 민간보육시설에 아동의 58.9%가 다니고 있고, 가정보육시설에 16.0%, 법인 13.5%, 국공립 11.1%의 순이다.

<표 6>에서 보듯이, 2009년 4월 현재 보육시설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은 총 19,626명으로 전체 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의 33.2%다. 연령별로는 0세아 6.7% 1세아 34.9%, 2세아 60.4%, 3세아 51%, 4세아 46.7%, 5세아 38.8%이다. 그러한 보육료 지원으로 2009년 4월 현재 50억2280만원이 집행되었다(표 7).

<표 6> 연령별 성별 보육료 지원 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수 및 전체 대비 비율

(단위: 명, %)

구분	합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계
전체	19,626 (33.18)	1,237 (6.57)	4,559 (34.91)	5,391 (60.36)	3,608 (51)	2,871 (46.68)	1,960 (38.37)	419	20,045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4) e-보육 자료.

<표 7> 2009년 4월 결혼이민자 가정 아동 보육료 지원금

(단위: 명, %)

대상자 수	보육료 지급 총액	비고
20,045	502,280만원	전체
19,626	497,622만원	5세 이하

주: 6세 포함.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4) e-보육 자료.

연령별, 보육료 지원수준별 대상 아동수를 보완, 추정된 후에 각 연령 및 지원 수준별 지원금을 곱하여 이를 모두 합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산정하였다. <표 8>은 연도별 아동연령별 기본보육료, 차등보육료, 만5세아 및 장애아 무상 보육비용을 추정한 것이다. 월간 4종류의 보육료 지원액은 2009년에 총 51억 5천만 원 수준에서 2015년에 2009년 불변가격으로 약 1.8 배인 93억 6천만 원 수준으로 증가하고 2020년에는 2.2배인 114억8100만원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간 비용으로 환산하면 2009년 618억 원이고 2020년 1377억 7200만원 규모다.

<표 8> 연도 및 아동연령별 월 보육료 지원 비용 추계, 2009~2020년

(단위: 백만 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0세아	436	552	593	632	668	701	732	760	783	804	825	845
1세아	1320	1109	1403	1507	1605	1697	1783	1861	1930	1989	2044	2098
2세아	1246	1555	1306	1652	1775	1890	1998	2099	2192	2273	2342	2408
3세아	1342	1876	2340	1966	2487	2672	2845	3008	3160	3300	3422	3526
4세아	461	556	777	969	814	1030	1107	1178	1246	1309	1366	1417
5세아	343	401	482	675	841	707	894	961	1023	1082	1137	1187
계	5150	6048	6901	7400	8190	8697	9360	9868	10335	10757	11137	11481

주: 1) 보육서비스 이용률과 보육료 지원기준이 2009년 하반기와 동일하다고 가정함, 2000년 불변가격임.

2) 본 추계에서 두 자녀 가정 지원과 영아 양육수당이 제외되었음.

4. 결혼이민자 유입과 사회통합정책의 방향

1) 유입국에서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에 대한 이론적 접근

이민자들의 사회·경제적 통합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동화(同化) 시각, 인적자본이론, 구조적 시각이 대표적이다. 한국사회에서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에 관한 체계적 연구는 거의 없으므로, 여기서는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동화 시각(assimilation perspectives)은 이민자의 거주기간과 취업기간에

따라 이민자들의 경제적 성취가 결정되는 것으로 본다. 동화 시각은 시간과 문화 노출 효과를 강조한다.

<표 9>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에 대한 세 가지 이론적 접근

동화 시각	인적자본이론	구조적 시각
· “이민자들은 한 세대 내 또는 여러 세대에 걸친, 여러 단계의 사회경제적 통합 과정을 거친다.”	· “인적자본이 노동시장에서의 위치와 경제적 성과의 차이를 결정한다.”	· “인종·종족 위계가 소수자들이 사회적 자원과 기회에 접근할 때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한다.”
· 거주기간, 취업기간, 현지어 구사능력, 현지문화 노출 정도 등	· 교육수준, 노동시장 숙련, 현지어 구사능력 등	· 인종, 출신국, 성, 공식·비공식 제도적 환경,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적 자본, 거주지 위치 등

둘째,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은 교육수준, 노동시장 숙련, 현지어 구사능력에 의한 노동시장에서의 위치와 경제적 성과의 차이를 설명한다. 인적자본이론은, 다양한 인종·출신국 배경을 가진 개인들이 충분한 인적자본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들은 성공에 이르는 ‘비교적 동등한 기회’를 가지는 것으로 예측한다.

셋째, 구조적 시각은 ‘결과적 동화와 종족간 적응’(eventual assimilation and interethnic accommodation)에 대하여 비판적이다. 구조적 시각은, 소수자가 사회적 자원과 취업기회, 주거, 교육 등에 평등하게 접근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제약하여 인종·종족 간 소득과 직업성취의 차이를 초래하는 ‘종족적 위계’(ethnic hierarchies)에 초점을 맞춘다. 구조적 시각은 ‘구조적 강제의 효과’(effects of structural constraints)를 설명한다.

‘동화 시각’의 핵심 명제는 “이민자들은 한 세대 내 또는 여러 세대에 걸친, 여러 단계의 사회경제적 통합 과정을 거친다.”인데, 거주기간, 취업기간, 현지어 구사능력, 현지문화 노출정도 등의 변수를 강조한다. ‘인적자본이론’의 핵심 명제는 “인적자본이 노동시장에서의 위치와 경제적 성과의 차이를 결정한다.”인데, 교육수준, 노동시장 숙련, 현지어 구사능력 등의 변수가 중요시된다. ‘구조적 시각’에서는 “인종·종

죽 위계가 소수자들이 사회적 자원과 기회에 접근할 때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인종, 출신국, 성, 공식·비공식 제도적 환경,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적 자본, 거주지 위치 등 구조적 변수를 중시한다. 이 세 가지 이론적 입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요 변수들은 정책을 수립할 때 핵심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2) 유입국 사회의 이민자 사회통합 모형

이민 수용국 사회가 이민자·이주노동자를 통합하는 방식은 구분배제모형, 동화모형, 다문화주의모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분배제유형이 외국인 또는 이민자에게 가장 배타적 태도를 취한다면, 다문화주의모형은 가장 우호적 태도를 취하며, 동화모형은 그 중간에 해당된다. 한국 정부의 이민자 통합 정책은, ‘용광로 동화모형’과 ‘쌍방적 통합 모형’ 및 ‘다문화주의 모형’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사회통합 대상 이민자별로 적합한 것을 채택하여야 한다.

첫째, 공화주의에 기초를 둔 ‘용광로 동화모형’은 톨레랑스(tolérance, 寬容)와 라이시테(laïcité, 政教分離原則)로 유명한 프랑스의 이민자 통합 정책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그 핵심은 이민자를 동화시켜 국민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공동체나 집단 수준의 동화’가 아니라 ‘개인 수준의 동화’를 전제로 한다.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이민자들에게 프랑스어와 기술을 가르쳐주고 프랑스 문화에 익숙해지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역시 이민자들이 프랑스 국민으로 쉽게 동화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프랑스에서 이민자에게 장기간에 걸친 문화적·민족적 다양성을 제공하는 정책은 발견되지 않는다. 독일의 이민자 통합 정책도 동화 모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쌍방적 통합’ 모형은 주류사회와 이민자가 상대방에게 적응하는 것을 기초로 한다. 주류사회가 이민자를 통합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변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를 ‘문화간주의’ 또는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라고 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나라는 아일랜드다.

셋째,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이민자 통합 정책은, 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

스웨덴·미국·영국 등 전체 국민 중에서 이민자 집단 또는 소수민족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다. 다문화주의 정책은 이민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본국 문화를 유지하도록 적극 지원하거나, 본국 문화를 유지하는 것을 방관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전자를 개입주의 모형, 후자의 자유방임주의 모형이라 칭한다. 전자의 사례로는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 및 스웨덴이, 후자의 사례로는 미국과 영국이 주로 거론된다. 각국 사회에서 다문화주의 정책이 등장한 요인에 주목하여야 한다. 캐나다는 프랑스어 사용 지역의 분리 독립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스트레일리아는 아시아 출신 이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다문화주의 정책을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의 이민자 통합정책은 어떠한 것이 바람직할까? 이민자 집단별로 통합모형을 여러 갈래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민자의 속성에 근거하여 각기 다른 사회통합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5.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전망과 대책

1) 미래 한국사회의 발전 전망

2020년 한국사회를 지배할 핵심단어는 ‘저출산·고령화’와 ‘통일’ 및 ‘다문화’로 요약된다. 이 세 가지는 장기간 지속되는 추세(trend)로, 현재 그 단초를 찾을 수 있고, 그것을 근거자료로 삼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10년 후 한국사회는 현재와 같은 ‘고령화사회’(aging society)가 아니라, ‘고령사회’(aged society)의 모습을 띠 것이다. 생산연령인구(노동력)의 감소, 노인 피부양인구의 급증으로 요약되는 ‘인구지진’이 한국사회를 강타할 것이다. 젊은 노동력은 절대적 부족 상태가 되고, 노동력 자체도 고령화되어, 경제성장 동력의 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처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의 충격을 완화 내지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두 가지 추세로 ‘통일’과 ‘다문화’가 있다. 첫째, 10년 후에는 남북통일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임박한 상황이 될 것이다. 최소한 남북통일의 기운이 무르익어 가는 수준으로는 진전될 것

이다. 한국사회에 들어와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더 늘어날 것이다. 두 사회를 완전히 통합하기 이전의 단계에서는 ‘정치-경제 분리 원칙’에 기반을 둔 교류가 지속될 것이므로,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는 남북통일의 장애요인이 아니라 촉진요인이 될 것이다.

둘째, 한국 경제와 사회의 전지구화 현상의 반영으로 국내 이민자 수가 크게 늘 것이다. 2009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이민자는 단기계약 이주노동자 약 70만 명과 한국인과 국제결혼한 이민자 16만여 명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교체순환원칙’에 의하여 사람이 교체되면서 한국에 일시적으로 머무르지만, 결혼 이민자는 거의 전원이 국내에 정착하고 있다. 결혼이민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비율도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증가 추세를 보일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으로 왔다가 국내 기업에 취업하여 이민자로 정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다.

2020년 외국인·이민자와 그 자녀수는 2009년의 1,106,884명에 2.45를 곱한 값 2,711,866명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그것은 같은 해 추계인구 49,325,689명의 5.5% 수준이다.

<표 10> 한국의 외국인·이민자와 그 자녀 수, 2009~2020년

(단위: 명, %)

구분	2009년	2020년
총인구	49,593,665	49,325,689
외국인·이민자와 그 자녀 수	1,106,884	2,711,866
비율	2.2	5.5

자료: 행정안전부, 『200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2009.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2) 다문화가족정책의 중장기 전망

한국사회에 거주하는 이민자와 그 자녀의 수가 많아지고, 그들의 사회적 구성이 달라져가는 추이를 파악한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가족 정책이 나아갈 바를 탐색해

보기로 한다. 기존 다문화가족 정책의 요체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8년 발표한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대책』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그 후 약간의 수정·보완 절차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다문화가족정책은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국가: 글로벌 코리아”라는 비전을 갖고 있다. 다문화가족정책은 네 개의 목표를 갖고 있는데,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다문화가족자녀의 안정적 성장환경 조성,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다문화가족정책 추진 인프라 강화가 그것이다. 다문화가족정책의 기본 방향은 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강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이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수가 2.45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2020년까지 시간적 간격을 늘려서 살펴봐도 다문화가족정책 비전과 목표 및 기본방향은 바르게 정립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적응 수준을 높이려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각 부처가 맡고 있는 업무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그 역할 분담 내역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장기적 대안의 하나로 이민청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 이민청이 설립될 경우, 이민청에서는 다문화가족정책을 포함한 이민정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는 역할을 맡고, 집행 기능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맡으면 될 것이다.

현재의 다문화가족 정책은 ‘가족생애주기’(family life cycle) 개념을 응용한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수립된 것으로, 중장기적 시각을 포함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입국 전후로 재분류하여,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체계를 파악하면, 입국 전에는 ‘결혼준비지원’이, 입국 후에는 ‘초기 사회적응 지원’, ‘자녀 양육 지원’,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이 필요하다. 입국 전후부터 시간의 경과와 아울러 국적 취득이 이루어지면서 발생하는 정책 수요를 파악하는 작업도 필수적이다. 국적 취득 이전에는 이민자로서의 초기 적응 수요가 많다면, 국적 취득 이후에는 점차 일반 한국인의 정책 수요와 비슷해진다. 주요 대상별로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그것을 실행하여야 한다.

3) 다문화가족정책의 중장기 대책

여기에서는 여섯 가지 사항을 중장기 대책으로 제시하기로 한다. 첫째, 결혼이민자 복지혜택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그들이 한국인으로 귀화를 했든 안했든 ‘한국인의 배우자·부모·자녀’라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결혼이민자는 한국인의 가족 성원인 이상 자녀가 없고 외국 국적을 유지하더라도 복지제도 적용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한국인의 가족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자국민과 차등 없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부여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예산 제약이란 난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제도를 국민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러 유형의 외국인 중에서 ‘영주자’(F-5)와 ‘한국인의 배우자’(F-2-1) 및 ‘영주자의 배우자’(F-2-2)에 대해서는 ‘내국민 대우’를 해주는 방향으로 중장기 예산계획을 세워야 한다.

둘째, 결혼이민자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여야 한다. 결혼이민자 가족 중 일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고, 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아야 할 정도로 빈곤함에도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것은 한국정부가 한국인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그 ‘혼인의 진정성’만을 따져 ‘위장 결혼’이 아닌 경우 ‘인도적 관점’에서 거주 사증을 발급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런데 미국·영국·독일 등 선진복지국가에서는 자신의 배우자에게 안정된 주거와 생활여건을 제공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배우자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알선하는 국제결혼이 성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그러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결혼이민자의 기초적 생활 보장을 한국인 배우자(또는 그의 재정보증인)에게 요구함으로써 최소한의 경제적 지위 보장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국제결혼중개업체가 그러한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탈법 행위를 할 경우 처벌조항을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에 넣어둘 경우, 그 법률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조항으로 기능할 것이다. 결혼이민자 주거와 재정 능력 입증 제도가 시행되어 정착될 경우, 결혼이민자에게 차등 없는 복지 혜택을 부여하기는 매우 용이한 일이 될 것이다.

셋째,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그 명칭이 의미하는 바와는 달리 ‘다문화가족 일반’이 아니라 “낳 때부터”(生得的) 한국인과 결혼한 결혼이민자 또는 혼인귀화자 가족만 지원하는 법률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낳 때부터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또는 국적취득자만 지원하는 제한 규정은 삭제하는 게 옳다. 그것은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이룩하여야 한다.

넷째, 외국인과 국적취득자를 아우르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제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 ‘제한 외국인과 국적취득자 처우 기본법’으로 법률 명칭을 바꾸고, 결혼이민자는 외국인과 국적취득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개정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그렇게 되면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혼인귀화자라는 용어는 불필요하게 될 것이고, 행정안전부 조사의 ‘외국인주민’ 개념은 ‘이민자주민’으로 쉽게 바꾸어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다문화가족정책의 다문화 감수성을 함양해야 한다. 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효과를 줄이기 위하여 정부 정책에 다문화 감수성을 부여하려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국민들의 다문화사회의를 고취해야 한다. 다문화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민자와 한국인 양자가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각각 상대방에게 적응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적응의 부담은 “뿌리 뽑힌 삶”을 영위해야 하는 외국인·이민자에게 더욱 가중된다. 그들은 한국어를 익혀야 하고, 한국문화와 관습을 이해하고 적응하려 노력해야 한다. 한국인들의 부담은 외국인·이민자만큼 크지는 않으나, 낮설고 이질적인 존재를 용인하고 이해하여야 하는 과제가 던져진다. 한국인이은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학습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학교 교육은 물론이고, 대중매체를 활용한 국민의식 개혁 운동을 벌여야 한다.

목차

감사의 글	iii
제출문	v
요약문	vii
제1장 서론	1
1. 문제 제기	3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5
1) 연구내용	5
2) 연구방법	6
3. 다문화가족의 현재와 미래	8
4. 보고서의 구성	17
제2장 다문화가족 인구 추계	19
1. 다문화가족 인구 추계 개요	21
1) 추계 대상 및 기간	21
2) 추계방법 및 이용자료	21
2. 주요 분석 결과	29
1) 결혼이민자 수 추계 결과	29
2) 결혼이민자의 자녀수 추계 결과	34
3)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수 추계 결과	40
제3장 결혼이민자 수용의 사회·경제적 비용-편익 분석	41
1. 이민자 수용의 사회·경제적 편익과 비용	43
1) 사회·경제적 편익과 비용의 의미	43
2) 이민자 수용의 경제적 편익과 비용	44

3) 이민자 수용과 영역별 ‘사회적 배제’의 극복	50
2. 미래연구방법: 델파이 기법	56
1) 델파이 기법	56
2) ‘이민 전문가’ 델파이 조사 절차	57
3. 델파이 조사 설계	60
1) 영역별 편익과 비용의 측정	60
2) 영역별 편익과 비용의 점수 부여	63
3) 영역별 편익과 비용의 상대적 크기 평가	64
4) 총비용 중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비용의 크기 산출	65
5) 2020년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1인당 지원비용의 증가율 평정	66
6) 2020년 정부의 예산 지출 구성비율 평정	66
4. 비용-편익 분석 결과	68
1) 결혼이민자 수용의 사회·경제적 편익과 비용	68
2) 결혼이민자의 수용에 따른 편익과 비용의 상대적 크기	70
3) 결혼이민자 수용의 편익과 비용	74
4) 결혼이민자 지원비용의 구성과 금액	79
제4장 결혼이민자 수용의 사회복지비용 분석: 현재와 미래	81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과 비용추정	83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83
2) 비용 추정	89
3) 토의	92
2. 보육 현황과 보육료 지원 비용 추정	92
1) 보육시설 이용 현황	92
2) 보육료 지원 현황	95
3) 보육비용 추정	99
4) 토의	101

제5장	결혼이민자 유입과 사회통합정책의 방향	103
1.	유입국에서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에 대한 이론적 접근	105
1)	동화 시각	105
2)	인적자본이론	106
3)	구조적 시각	107
4)	세 이론의 비교 분석	110
2.	유입국 사회의 이민자 사회통합 모형	111
제6장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전망과 대책	117
1.	미래 한국사회의 발전 전망	119
2.	다문화가족정책의 중장기 전망	123
3.	다문화가족정책의 중장기 대책	128
1)	결혼이민자 복지혜택 차별 철폐	128
2)	국민의 배우자 비자 발급 요건의 강화	129
3)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 범위 확대	131
4)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개정	132
5)	다문화가족정책의 다문화 감수성 함양	133
6)	국민들의 다문화사회의식 고취	134
참고문헌	135
부록	147
부록 1.	다문화가족의 장래인구추계, 2009~2020년	149
부록 2.	제1차 전문가 델파이조사 질문지	164
부록 3.	제1차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정리	171
부록 4.	제2차 전문가 델파이조사 질문지	174
필자 소개	179

표 차례

<표 1-1> 한국의 국제결혼 건수, 1990~2008년	xvii
<표 1> 다문화가족 구성원 수 추계, 2009~2020년	xix
<표 2> 결혼이민자 수용의 편익과 비용, 2009~2020년	xx
<표 3> 결혼이민자 지원 비용 정부예산, 2009~2020년	xxi
<표 4> 시도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비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 수급자 비율	xxi
<표 5> 연령별 성별 보육시설 이용 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수 및 전체 대비 비율	xxii
<표 6> 연령별 성별 보육료 지원 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수 및 전체 대비 비율	xxii
<표 7> 2009년 4월 결혼이민자 가정 아동 보육료 지원금	xxii
<표 8> 연도 및 아동연령별 월 보육료 지원 비용 추계, 2009~2020년	xxiii
<표 9>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에 대한 세 가지 이론적 접근	xxiv
<표 10> 한국의 외국인·이민자와 그 자녀 수, 2009~2020년	xxvii
<표 1-1> 한국의 국제결혼 건수, 1990~2008년	8
<표 1-2> 국제결혼 배우자의 출신국 분포, 2000~2008년	11
<표 1-3> 국제결혼 부부의 초혼과 재혼 비율, 2000~2008년	11
<표 1-4> 국제결혼한 한국인의 초혼연령, 2000~2008년	12
<표 1-5> 국제결혼 부부의 평균 연령 차이, 2000~2008년	12
<표 1-6> 다문화가족의 이혼, 2002~2008년	13
<표 1-7> 성별·출신국별 결혼이민자 수, 2009년	14
<표 1-8> 결혼이민자의 자녀 수, 2009년	14
<표 1-9> 다문화가족의 자녀 수, 2009년	15
<표 1-10> 유형별 결혼이민자의 자녀 수, 2009년	16
<표 1-11> 학령별 결혼이민자의 자녀 수, 2009년	16
<표 2-1> 결혼이민남성의 출신국별 한국인 여성배우자 유배우출산율	25

<표 2-2> 여성이민자의 출신국별 유배우출산율	25
<표 2-3> 출생성비 변동 전망, 2009~2020년	26
<표 2-4> 평균수명 변동 전망, 2005~2020년	27
<표 2-5> 국제결혼 및 국제이혼 후 국내잔존율 가정	29
<표 2-6> 출신국별 결혼이민자 수 전망, 2009~2020년	30
<표 2-7> 연령별 결혼이민자 수 전망, 2009~2020년	33
<표 2-8>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결혼이민자의 자녀수 전망, 2009~2020년	35
<표 2-9> 연령별 결혼이민자의 자녀 수 전망, 2009~2020년	38
<표 2-10> 결혼이민자의 자녀의 학령별 인구 추계, 2009~2020년	39
<표 3-1> 다문화가족 증가에 따른 편익과 비용	53
<표 3-2> 다문화가족 지원 영역별 주요 비용 항목	54
<표 3-3> 노동시장 영역에서의 편익과 비용	60
<표 3-4>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편익과 비용	61
<표 3-5> 사회적 고립·공간적 격리 극복 영역에서의 편익과 비용	61
<표 3-6> 문화 영역에서의 편익과 비용	62
<표 3-7> 정치 영역에서의 편익과 비용	62
<표 3-8> 연쇄이민 영역에서의 편익과 비용	63
<표 3-9> 2009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부처별 예산 재분류	67
<표 3-10> 각 영역별 편익과 비용의 크기 비교, 2020년	68
<표 3-11> 편익과 비용에서 각 영역의 상대적 크기: 응답자 분포, 2020년	71
<표 3-12> 편익과 비용에서 각 영역의 상대적 크기: 단순 평균, 2020년	72
<표 3-13> 노동시장 편익 기준 사회복지비용의 상대적 크기, 2020년	73
<표 3-14> 편익과 비용에서 각 영역의 상대적 크기, 2020년	73
<표 3-15> 2009년 이민자 수용의 총비용 중 지원비용 511억 원이 차지하는 비율	74
<표 3-16> 결혼이민자 수용의 편익과 비용, 2009년	75
<표 3-17> 다문화가족 구성원 1인당 지원 금액의 증가율, 2009~2020년	76

<표 3-18> 다문화가족 구성원 수 추계, 2009~2020년	77
<표 3-19> 결혼이민자 수용의 편익과 비용, 2009~2020년	77
<표 3-20> 2020년 이민자 지원 비용의 바람직한 구성비율	78
<표 3-21> 결혼이민자 지원 비용 정부예산, 2009~2020년	79
<표 4-1> 성별, 한국인배우자 연령별 기초생활보장보장 수급 현황, 2009년	84
<표 4-2> 시도별 기초생활보장보장 수급 현황, 2009년	85
<표 4-3> 시도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비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 수급자 비율	87
<표 4-4> 출신국가별 기초생활보장보장 수급 현황, 2009년	88
<표 4-5> 생계급여 지급 총액, 2009년 7월	89
<표 4-6> 출신국가별 기초생활보장보장 발생비율, 2009년	90
<표 4-7> 연도별 기초생활보장보장 수급자수 추정, 2009~2020년	90
<표 4-8> 월 생계급여 및 2009년 대비 비율 추정, 2009~2020년	91
<표 4-9> 연령별 성별 보육시설 이용 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수 및 전체 대비 비율	93
<표 4-10> 연령별 시설유형별 보육시설 이용 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수	93
<표 4-11> 연령별 시도별 보육시설 이용 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수 및 전체 대비 비율	94
<표 4-12> 보육시설 이용 아동 부모 출신국가별 수 및 전체 대비 비율	95
<표 4-13> 연령별 성별 보육료 지원 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수 및 전체 대비 비율	95
<표 4-14> 연령별 시설유형별 보육료 지원 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수	96
<표 4-15>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 중 연령별 보육료 지원 대상	96
<표 4-16> 연령별 시도별 보육료 지원 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수 및 전체 대비 비율	97
<표 4-17> 연령별 보육료 지원 아동 부모 출신국가별 수 및 전체 대비 비율	98
<표 4-18> 2009년 4월 결혼이민자 가정 아동 보육료 지원금	98
<표 4-19>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 중 보육료 지원 대상 발생률, 2009년	99
<표 4-20> 연도 및 아동연령별 월 보육료 지원 비용 추계, 2009~2020년	100
<표 4-21> 2009년 대비 연도별 보육료 지원비용 비율, 2009~2020년	101

<표 5-1>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에 대한 세 가지 이론적 접근	110
<표 6-1> 한국의 외국인·이민자와 그 자녀 수, 2009~2020년	121
<표 6-2> 주요 OECD 회원국의 외국태생인구 비율, 2007년	121
<표 6-3> 한국의 외국인·이민자 수, 2004~2008년	122
<표 6-4> 미국인의 배우자가 비자 발급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재정보증서류 ..	129

그림 차례

[그림 1] 결혼이민자의 장래인구추계, 2009~2020년	xiii
[그림 2] 결혼이민자 연령별 인구 구성의 변화, 2009~2020년	xiv
[그림 3] 결혼이민자 자녀의 장래인구추계, 2009~2020년	xv
[그림 4] 결혼이민자 자녀의 학령별 인구 구성의 변화, 2009~2020년	xvi
[그림 1-1] 한국의 장래인구 추계, 2005~2050년	4
[그림 1-2]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 2010~2020년	4
[그림 1-3] 국내 결혼이민자의 거주 지역 분포, 2008년	10
[그림 2-1] 조성법에 의한 인구추계 과정	22
[그림 2-2] 2000~2005년 평균 국제순이동률, 2000년	28
[그림 2-3] 결혼이민자의 장래인구추계, 2009~2020년	31
[그림 2-4] 결혼이민자 인구 피라미드, 2009~2020년	32
[그림 2-5] 결혼이민자 연령별 인구 구성의 변화, 2009~2020년	34
[그림 2-6] 결혼이민자 자녀의 장래인구추계, 2009~2020년	36
[그림 2-7] 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별 인구 구성의 변화, 2009~2020년	37
[그림 2-8] 결혼이민자 자녀의 학령별 인구 구성의 변화, 2009~2020년	39
[그림 2-9]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장래인구추계, 2009~2020년	40
[그림 3-1] 이민자 수용의 경제적 효과	47
[그림 3-2] 두 차례에 걸친 전문가 델파이조사 질문지 표지	57
[그림 3-3] 제1차 전문가 델파이조사 문항의 보기	58
[그림 3-4] 제2차 전문가 델파이조사 문항의 보기	59
[그림 3-5] 편익-비용의 크기 평정 척도	64

[그림 3-6] 편익-비용의 측면에서 각 영역의 크기 평정 척도	65
[그림 5-1] 이민 수용국 사회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모형	112
[그림 5-2] 국제이주의 유형과 발전 효과	114
[그림 6-1] 다문화가족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및 비전	124
[그림 6-2]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정책과제	125
[그림 6-3]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체계	126
[그림 6-4] 다문화가족의 국적 취득 전후 정책 수요	127

제1장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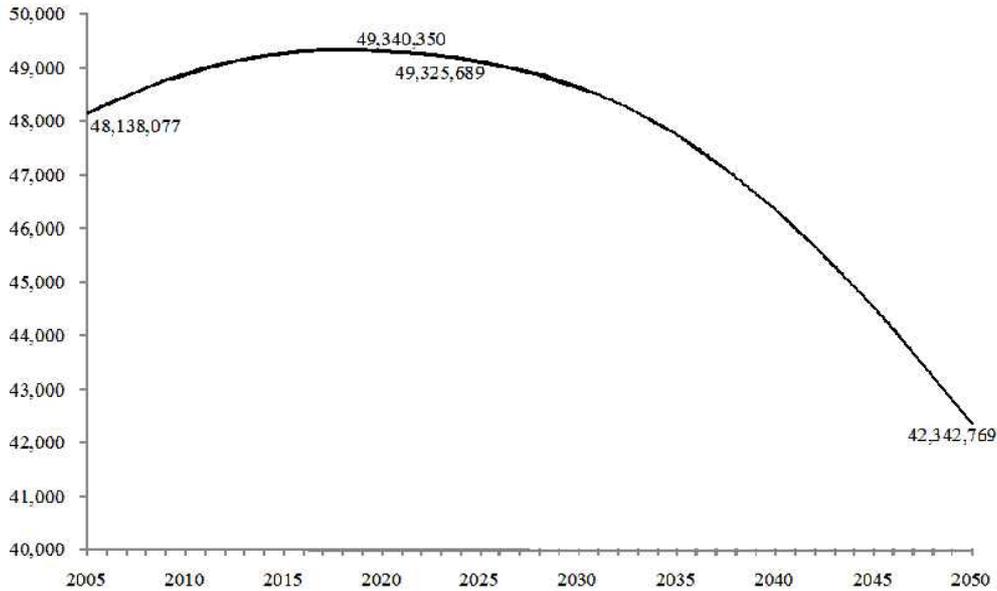
제1장 서론

1. 문제 제기

결혼이민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만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었다. 국제결혼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제결혼 자체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영역으로 보고 관여하고 있지 않으나, 국제결혼중개업을 규제함으로써 결혼이민자 또는 한국인 배우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증을 발급하고 있다.¹⁾ 그것은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취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이민자들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 각 부처에서는 그들을 한국사회에 통합하려는 목적에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여성부·법무부·교육과학기술부·농림수산식품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국어 또는 각종 한국사회적응 교육 지원, 이민자·가족 지원, 다문화 환경 조성사업과 관련 사업, 사회통합이수제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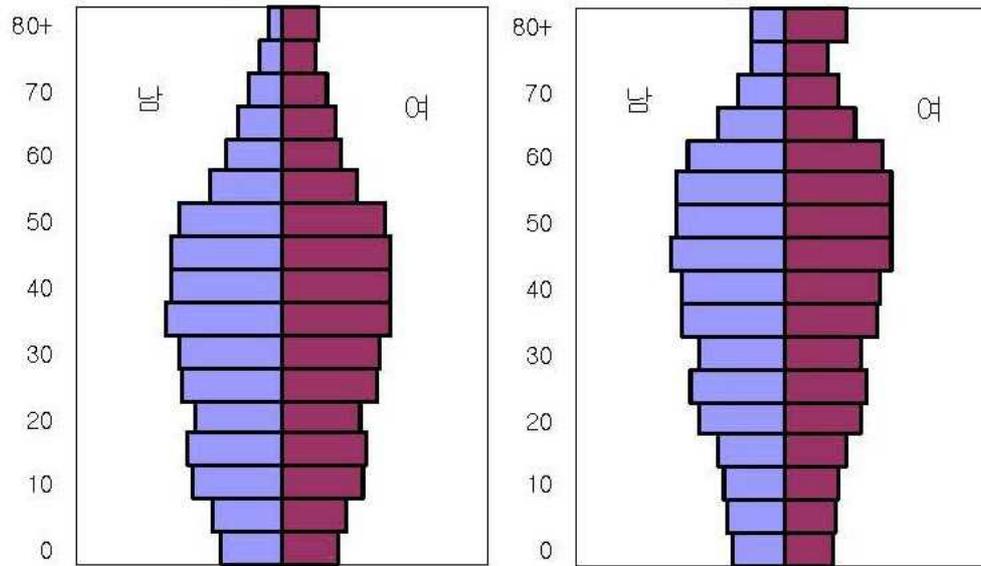
통계청에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토대로 계산하여 2006년 11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한국의 총인구는 2018년 49,340,350명으로 정점(peak)에 도달한 후,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1]에서 보듯이, 총인구는 2020년에 49,325,689명, 2030년에 48,634,571명, 2040년에 44,343,017명, 2050년에 42,342,769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아울러,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노인 인구의 구성비율이 점점 증가할 것이다. [그림 1-2]는 2010년과 2020년을 비교했을 때, 노인 인구 구성비율이 증가하고, 아동 인구 구성비율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1) 이민 수용의 핵심 원칙은 국익(national interests)과 인도주의(humanitarianism)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자료: 국가 통계 포털, <http://kosis.kr> 장래인구추계. 각 연도별 총인구를 이용하여 작성.

[그림 1-1] 한국의 장래인구 추계, 2005~2050년



(가) 2010년

(나) 2020년

주: 인구 피라미드는 총인구에 대한 연령별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p. 52.

[그림 1-2]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 2010~2020년

장래인구 추계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또는 국적취득자 수가 포함된다. 그렇지만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는 총인구와 시도별 인구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므로, 외국인 또는 국적취득자 수의 추이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정착 이민자라 할 수 있는 ‘결혼이민자’ 인구의 장래추계를 하는 작업은 필수적이다.

결혼이민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유입이 한국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작업도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민자를 수용한 나라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다 가지지만, 그 중 어떤 측면이 더욱 중요한가는 나라마다 또 상황마다 달리 나타나므로, 한국의 사정은 어떠한가를 파악하는 작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다문화가족의 인구추계’와 ‘결혼이민자 유입이 한국사회에 던지는 긍정적-부정적 효과 분석’을 토대로, 다문화가족 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상의 세 가지 작업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기초자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의 첫째 과제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 즉 다문화가족의 장래인구를 추계하여, 정책 대상 규모를 예측하는 데 있다. ‘제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는 ‘결혼이민자’를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제한외국인”으로 규정한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다문화가족’은 ① ‘결혼이민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②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의 대상은 모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모두 아우른다. 전자를 결혼이민자, 후자를 혼인귀화자로 파악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는 ‘외국 국적을 가진 결혼이민자’와 ‘한국 국적을 가진 혼인귀화자’를 아울러 결혼이민자라 부르기로 한다. 그렇지만 국적취득자를 적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혼인귀화자’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추계하려고 하는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에 국한한다. 한국인 배우자가 그 과거 한국인과 결혼하여 낳은 자녀는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손자녀 또는 그보다 후세 자녀들도 포함하지 않는다.

둘째, 2020년의 시점에서 이민자 수용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한국사회가 맞볼 수 있는 편익과, 지출해야 하는 비용의 내용과 각각의 크기를 파악한다. 2009년과 2020년의 사회 전체적 수준의 총편익과 총비용을 계산하고, 이어서 2020년 ‘이민자 사회통합 지원 비용’(정부 예산)의 크기를 계산한다.

셋째, 지원 비용 중 사회복지비용을 파악한다.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보장 수급자 수를 토대로 2020년의 다문화가족 수급자 수를 추산하고, 또 다문화가족 자녀 보육 현황과 보육료 지원 비용을 추산한다.

넷째,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과 전망 하에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비전과 대책을 수립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내용에 따라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첫째, 국제결혼 또는 이민 현상은 한국정부의 정책뿐 아니라 송출국의 정책, 송출국 사회의 요인, 국내 결혼 시장의 변화 등 여러 요인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가정을 하고, 제한된 조건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 장래인구추계 방법에는 ‘수학적 방법’과 ‘조성법(造成法) 또는 코호트요인법(cohort component method)’이 있다. 우선, ‘수학적 방법’은 ‘전체 인구’를 이용하며 선형식, 지수법, 고펜르츠 모형 등 합당한 수학 공식을 적용하여 장래인구를 예측하는 기법이다. 법무부·통계청(2008)과 강혜정(2009: 54-62)이 각각 외국인 또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장래인구추계를 할 때

적용한 방법이 바로 이것이다. ‘수학적 방법’은 자료의 제약이 심할 경우 불가피하게 이용하는 방법이다. 다음, ‘조성법’은 기존 인구 자료를 기초로 인구동태율(출생·사망·이민율 등)을 반영하여 매년 7월 1일 기준 장래 인구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통계청에서는 『장래인구추계』를 할 때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삼아 조성법을 적용한다. 추계인구는 기준일이 7월 1일인 연앙(年央)인구로, 2009년 다문화가족 인구인 확정인구(population estimates)와 향후 인구변동(출생, 사망, 국제이동)을 고려하여 작성된 장래추계인구(population projections)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2009년 다문화가족 기초현황자료를 토대로 조성법을 적용하여 장래 인구를 추계하였다.

둘째, 결혼이민자 수용의 편익-비용 분석 방법은 두 단계에 걸쳐 있다. 우선, 2009년의 결혼이민자 수용에 따른 편익-비용의 구성요소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 각각의 편익과 비용의 상대적 크기를 계산한다. ‘총비용 중 정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면, 편익-비용의 각 구성요소별 금액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 다문화가족 1인당 정부예산의 증가율을 조사하여, 2020년의 장래추계인구가 2009년 인구보다 몇 배 많은 지를 계산하여 그 값을 곱하면, 2020년에 필요한 정부예산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핵심이 되는 수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델파이(delphi) 기법을 채택한다. 그것은 미래의 현상을 연구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예측하고자 하는 문제에 관하여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분석하고 분류·정리하는 일련의 절차라 할 수 있다. 델파이 기법은 연구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을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정보를 객관화할 수 있다. 델파이 기법은 정확한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미래 예측과 추정 작업에 널리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인구추계와 델파이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이민자 수용의 편익-비용 분석, 정부의 결혼이민자 지원 비용 분석, 그리고 사회복지비용 분석을 수행한다.

셋째, 경험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세부 대책을 만들었다.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효과를 최대한으로 억제하는 정책을 개발하려고 한다. 주요 방법은 이론과 문헌연구다. 초안이 완성된 후에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그것을 정교화 하였다.

3. 다문화가족의 현재와 미래

미래사회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현재의 다문화가족의 상황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표 1-1>에는 1990~2008년의 국제결혼건수가 제시되어 있다. 1990~1994년에는 국제결혼이 연 5천 건 수준(전체 결혼의 2%미만)이었으며, 대부분 해외로 이주하였다. 국제결혼 건수는 1995년에 13,494건(전체 결혼의 3.4%)으로 급증하였고, 그해 이후 국제결혼으로 인한 한국인의 국외유출보다는 외국인의 국내유입이 더 많아졌다. 말하자면, 1995년은 한국의 국제결혼이주의 전환점(turning point)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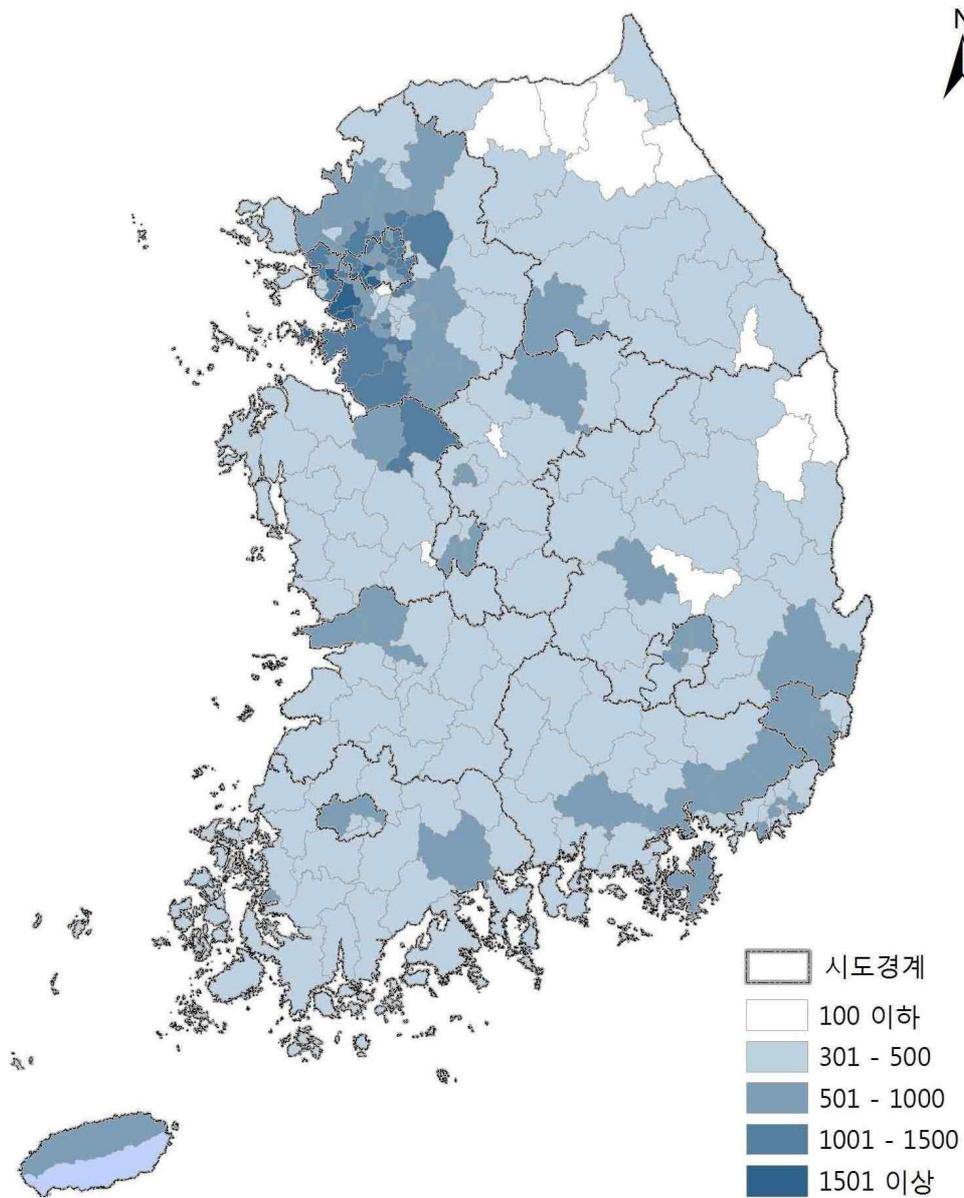
<표 1-1> 한국의 국제결혼 건수, 1990~2008년

연도	전체 결혼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건수	%	건수	%	건수	%
1990	399,312	4,710	1.2	619	0.2	4,091	1.0
1991	416,872	5,012	1.2	663	0.2	4,349	1.0
1992	419,774	5,534	1.3	2,057	0.5	3,477	0.8
1993	402,593	6,545	1.6	3,109	0.8	3,436	0.9
1994	393,121	6,616	1.7	3,072	0.8	3,544	0.9
1995	398,484	13,494	3.4	10,365	2.6	3,129	0.8
1996	434,911	15,946	3.7	12,647	2.9	3,299	0.8
1997	388,591	12,448	3.2	9,266	2.4	3,182	0.8
1998	375,616	12,188	3.2	8,054	2.1	4,134	1.1
1999	362,673	10,570	2.9	5,775	1.6	4,795	1.3
2000	332,090	11,605	3.5	6,945	2.1	4,660	1.4
2001	318,407	14,523	4.6	9,684	3.0	4,839	1.5
2002	304,877	15,202	5.0	10,698	3.5	4,504	1.5
2003	302,503	24,776	8.2	18,751	6.2	6,025	2.0
2004	308,598	34,640	11.2	25,105	8.1	9,535	3.1
2005	314,304	42,356	13.5	30,719	9.8	11,637	3.7
2006	330,634	38,759	11.7	29,665	9.0	9,094	2.8
2007	343,559	37,560	10.9	28,580	8.3	8,980	2.6
2008	327,715	36,204	11.0	28,163	8.6	8,041	2.5
1990~2008	6,874,634	348,688	5.1	243,937	3.5	104,751	1.5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 연도.

이후에도 국제결혼 건수는 매년 늘어났다. 국제결혼 건수는 2003년에 25,659건(전체 결혼의 8.4%)으로 그 전년도에 비해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그러한 추세는 한 동안 지속되었는데, 2004년에는 34,640건(전체 결혼의 11.2%), 2005년에는 42,356건(전체 결혼의 13.5%)으로 증가하였다. 2006년 이후 국제결혼 건수는 다소 주춤한 양상을 보여 2006년 38,759건, 2008년 36,204건 등 2년 연속 감소하였다. 요컨대, 정부가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개입을 강화한 2006년 이후 국제결혼 규모가 약간 줄었지만 여전히, 총 결혼건수의 10%를 상회할 정도로 높다.

2008년 전체 결혼 가운데 외국 여자와 한국 남자가 결혼한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농어촌 지역(13.8%)이 도시 지역(7.6%)보다 높다. 직업별로는 2008년에 결혼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 남자 6,458명 중 38.3%에 해당하는 2,472명이 외국 여자와 결혼하였다. 그것은 저출산으로 인한 신부 부족으로 야기된 결혼압박(marriage squeeze)으로 설명할 수 있다. 조건이 열악한 농촌 총각들이 강한 결혼압박을 받았고, 그 결과 그들이 배우자를 찾기 위해 외국으로 간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농촌지역 주민 또는 농업종사자가 국제결혼을 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결혼이민자가 주로 거주하는 곳은 도시다. 한국인의 8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고, 결혼이민자들은 자신의 배우자가 살고 있는 곳에 거주지를 정하기 때문이다. 사회계층을 기준으로 보면, 도시지역에서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은 최상층과 최하층 집단이 대부분이다. 대다수는 도시 빈곤층 남자들이 외국에서 배우자를 찾아오는 유형이고, 상대적으로 그 수가 매우 적지만 한국 여자들이 외국인 남자와 결혼하는 유형도 있다. 외국인 남자들은 저숙련 이주노동자와 전문기술직 종사자 또는 유학생이 대부분이다. 그 결과, 결혼이민자는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하게 되었다.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인 젊은이들이 거주를 기피하는 농촌 지역에 정착하면서 농업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농촌사회 재활성화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림 1-3]은 국내 결혼이민자의 거주 지역 분포를 보여준다. 기초 지방자치단체별 결혼이민자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100명 이하인 지역은 거의 없고, 301~500명 지역이 거의 대부분이고, 각 시도의 중심지역에는 501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1501명 이상 밀집하여 있는 지역도 있다.



자료: 박세훈·정소양(2009: 5).

[그림 1-3] 국내 결혼이민자의 거주 지역 분포, 2008년

<표 1-2>에서 국제결혼 배우자의 출신국 분포를 보면, 1990년대 초반에는 미국 또는 일본 남자와 한국 여자의 국제결혼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나, 1995년 이후에

는 한국 남자와 중국 또는 아시아 저개발국 출신 외국 여자의 결혼이 국제결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1-2> 국제결혼 배우자의 출신국 분포, 2000~2008년

(단위: 건,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
한국남자+외국여자	6,945	9,684	10,698	18,751	25,105	30,719	29,665	28,580	28,163	100.0
중국	3,566	6,977	7,023	13,347	18,489	20,582	14,566	14,484	13,203	46.9
베트남	77	134	474	1,402	2,461	5,822	10,128	6,610	8,282	29.4
필리핀	1,174	502	838	928	947	980	1,117	1,497	1,857	6.6
일본	819	701	690	844	809	883	1,045	1,206	1,162	4.1
캄보디아	-	-	-	19	72	157	394	1,804	659	2.3
태국	240	182	327	345	324	266	271	524	633	2.2
몽골	64	118	194	320	504	561	594	745	521	1.8
우즈베키스탄	43	66	183	328	247	332	314	351	492	1.7
기타	962	1,004	969	1,218	1,252	1,136	1,236	1,359	1,354	4.8
한국여자+외국남자	4,660	4,839	4,504	6,025	9,535	11,637	9,094	8,980	8,041	100.0
일본	2,630	2,664	2,032	2,250	3,118	3,423	3,412	3,349	2,743	34.1
중국	210	222	263	1,190	3,618	5,037	2,589	2,486	2,101	26.1
미국	1,084	1,113	1,204	1,222	1,332	1,392	1,443	1,334	1,347	16.8
캐나다	150	164	172	219	227	283	307	374	371	4.6
호주	78	78	90	109	132	101	137	158	164	2.0
영국	64	69	86	88	120	104	136	125	144	1.8
파키스탄	36	63	126	130	100	219	150	134	117	1.5
독일	82	94	81	94	109	85	126	98	115	1.4
기타	326	372	450	723	779	993	794	922	939	11.7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 연도.

<표 1-3> 국제결혼 부부의 초혼과 재혼 비율, 2000~2008년

(단위: %)

결혼종류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한국남자+ 외국여자	초혼(A)	75.3	66.8	65.5	58.3	53.5	55.7	63.6	62.8	64.7
	재혼(B)	24.7	33.2	34.5	41.7	46.5	44.3	36.4	37.2	35.3
	비(A/B)	3.1	2.0	1.9	1.4	1.2	1.3	1.8	1.7	1.8
한국여자+ 외국남자	초혼(A)	63.2	61.2	63.3	56.8	45.9	43.3	55.2	57.6	58.4
	재혼(B)	36.8	38.8	36.7	43.2	54.1	56.7	44.8	42.4	41.6
	비(A/B)	1.7	1.6	1.7	1.3	0.8	0.8	1.2	1.4	1.4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 연도.

국제결혼을 하는 한국인들은 재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1-3>을 보면, 2008년 외국인 여자와 결혼한 한국인 남자의 재혼 비율은 35.3%이고, 외국인 남자와 결혼한 한국인 여자의 재혼 비율은 41.6%다. 한국인이 국제결혼하는 경우 재혼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제결혼은 재혼자의 비율이 높기도 하지만, 만혼(晩婚)의 가능성도 높다. <표 1-4>에서 국제결혼한 한국인의 초혼연령을 국내결혼한 사람의 그것과 비교하면, 남녀 모두 높다. 국제결혼한 사람의 평균초혼연령은 남자는 평균 37.18세, 여자는 평균 30.69세로, 국내결혼자보다 각각 6.28세, 2.12세 더 높다.

<표 1-4> 국제결혼한 한국인의 초혼연령, 2000~2008년

(단위: 건, 세)

연도	한국 남자의 평균초혼연령		한국 여자의 평균초혼연령	
	한국인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한국인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2000	29.14	34.18	26.44	29.90
2001	29.35	34.94	26.73	30.13
2002	29.57	35.33	26.98	29.88
2003	29.80	36.40	27.26	30.44
2004	30.07	37.19	27.51	31.26
2005	30.28	37.74	27.78	31.80
2006	30.43	37.28	28.01	30.74
2007	30.65	37.22	28.26	31.16
2008	30.90	37.18	28.57	30.69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 연도.

<표 1-5> 국제결혼 부부의 평균 연령 차이, 2000~2008년

(단위: 건, 세)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한국 남자+외국 여자	6.9	7.5	7.9	8.3	8.4	9.1	11.6	11.5	11.8
한국 여자+외국 남자	6.6	6.5	5.2	4.0	3.1	2.7	4.1	4.3	4.1
한국 여자+한국 남자	2.7	2.6	2.6	2.6	2.6	2.5	2.4	2.4	2.3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 연도.

국제결혼한 한국인의 재혼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만혼자가 비교적 많은 편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2008년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 부부의 결혼 연령차가 한국인 부부보다 9.5세 많고,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 부부의 결혼 연령차는 한국인 부부보다 1.8세 많다. <표 1-5>에 의하면, 2008년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 부부의 평균 결혼 연령차는 11.8세로 2000년의 6.9세보다 4.9세 증가하였고,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 부부의 평균 결혼 연령차는 4.1세로 2000년의 6.6세보다 2.5세 줄어들었다.

<표 1-6>을 보면, 다문화가족의 이혼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결혼 건수가 증가하였으므로, 국제이혼건수도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지만, 그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증가 추세는 급격하다. 외국인과 혼인한 부부의 이혼은 2002년 1,744건으로 전체 이혼(144,910건)의 1.2%에 머물렀다. 그런데 2008년에는 크게 늘어나 11,255건으로 전체 이혼(116,535건)의 9.7%를 차지하였다. 그것은 같은 해 국제결혼건수와 비교할 때 31.1% 수준이다. 2008년 국제이혼건수 중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이혼’은 70.7%(7,962건)이고,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의 이혼’은 29.3%(3,293건)이다.

<표 1-6> 다문화가족의 이혼, 2002~2008년

(단위: 건,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이혼건수	144,910	166,617	138,932	128,035	124,524	124,072	116,535
외국인과의 총 이혼	1,744	2,012	3,300	4,171	6,136	8,671	11,255
총이혼 대비 구성비	1.2%	1.2%	2.4%	3.3%	4.9%	7.0%	9.7%
총국제결혼건수	15,202	24,776	34,640	42,356	38,759	37,560	36,204
총국제결혼 대비 비	11.5%	8.1%	9.5%	9.8%	15.8%	23.1%	31.1%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 연도.

<표 1-7>에는 2009년 5월 1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수가 제시되어 있다. 167,090명의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가 있는데, 남자가 17,237명, 여자가 149,853명이다. 출신국별 구성비율은 앞서 살펴본 국제결혼의 구성비율과 유사하다.

<표 1-7> 성별·출신국별 결혼이민자 수, 2009년

(단위: 명)

	전체	남자	여자
전체	167,090	17,237	149,853
중국(조선족)	53,754	7,115	46,639
중국(한족)	48,698	3,933	44,765
베트남	30,779	165	30,614
필리핀	9,799	204	9,595
일본	5,364	547	4,817
캄보디아	2,841	9	2,832
몽골	2,503	45	2,458
태국	2,242	41	2,201
미국	1,623	1,083	540
러시아	1,039	54	985
대만	517	116	401
인도네시아	481	54	427
중앙아시아	2,126	82	2,044
남부아시아	2,084	1,620	464
기타 동남아시아	275	100	175
기타 나라	2,965	2,069	896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 기초현황자료, 2009.

<표 1-8> 결혼이민자의 자녀 수, 2009년

(단위: 명)

	전체	현재 국제결혼 자녀	외국인배우자 자녀
전체	99,797	96,116	3,681
중국(조선족)	24,349	22,665	1,684
중국(한족)	24,868	23,414	1,453
베트남	21,209	21,122	87
필리핀	10,417	10,343	74
일본	6,818	6,792	26
캄보디아	1,938	1,933	6
몽골	1,627	1,486	141
태국	1,617	1,589	28
미국	868	858	10
러시아	655	636	20
대만	441	418	23
인도네시아	434	432	2
중앙아시아	1,602	1,552	50
남부아시아	1,032	1,006	25
기타 동남아시아	250	250	0
기타 나라	1,671	1,620	51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 기초현황자료, 2009.

<표 1-8>에는 국내 거주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국제결혼부부의 자녀’와 ‘외국인 배우자의 이전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의 구성이 제시되어 있다. 그 각각은 96,116명과 3,681명이고,② 도합 99,797명이다. 이 수치는 <표 1-9>에 제시된 행정안전부 통계의 결혼이민자의 자녀수 92,690명보다 7,107명 더 많다. 보건복지가족부 기초현황자료는 결혼이민자 1세가 아니면 나이에 관계없이 ‘결혼이민자의 자녀’로 파악한 반면, 행정안전부의 집계통계는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③)

<표 1-9> 다문화가족의 자녀 수, 2009년

(단위: 명, %)

구분	전체	결혼이민자의 자녀			한국인 부모
		소계	외국인-한국인 부모	외국인부모	
자녀수	107,689	92,690	88,485	4,205	14,999
비율	100.0	86.1	82.2	3.9	13.9

자료: 행정안전부, 『200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2009.

<표 1-10>에서 자녀수의 구성비율을 보면, 여성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94.2%, 남성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5.8%이다.④ 그리고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집단은 중국 한족 출신 결혼이민자의 자녀다. 결혼이민자 수는 중국 조선족이 한족보다 수가 많으나, 자녀수는 오히려 한족이 더 많다. 그 까닭은 중국 조선족 출신 이민자 중 고령자가 많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중국 조선족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 출신 이민자들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연령대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조선족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기 때문이다. 그것은 중국 조선족의 “중간입국자녀”에는 19세 이상 성인이 다수 포함

- 2) ‘외국인 배우자의 이전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 또는 “중간입국자녀”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 보면, 0~6세 11.4%, 7~12세 11.7%, 13~15세 7.3%, 16~18세 12.4%, 19~22세 25.7%, 23세 이상 31.5%다. 19세 이상 성인 연령집단은 대부분 중국 조선족 또는 한족 출신이다.
- 3) 행정안전부 집계통계와 보건복지가족부 기초현황자료의 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별 분포를 비교해보면, 행정안전부 통계의 연령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행정안전부 통계에서 만 0세 아동 수가 1세 아동 수보다 훨씬 적고, 18세 청소년 수가 17세 청소년 수보다 꽤 많은 것 등은 연령 측정 과정에서의 혼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4) <표 1-8>에서 연령과 성 등 핵심정보가 미비한 113명을 제외한 99,684명을 분석하였다.

되어 있는 것으로도 입증된다. <표 1-11>은 자녀의 학령 단계 연령별로 자녀수를 보여준다. 자녀들은 0~6세의 취학이전 연령대에 모여 있다. 2020년이 되면 그들은 청소년이 되어 있을 것이고, 이민자 자녀 문제가 지금과는 다른 양상으로 바뀔 것이다.

<표 1-10> 유형별 결혼이민자의 자녀 수, 2009년

(단위: 명, %)

	인원	구성비율
전체 결혼이민자 자녀	99,684	100.0
남성 결혼이민자 자녀	5,744	5.8
중국 조선족	1,505	1.5
중국 한족	1,010	1.0
미국	440	0.4
일본	353	0.4
기타	2,436	2.4
여성 결혼이민자 자녀	93,940	94.2
중국 조선족	22,860	22.9
중국 한족	23,834	23.9
베트남	2,117	21.2
필리핀	10,268	10.3
일본	6,480	6.5
캄보디아	1,923	1.9
몽골	1,597	1.6
태국	1,596	1.6
기타	4,265	4.3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 기초현황자료, 2009.

<표 1-11> 학령별 결혼이민자의 자녀 수, 2009년

(단위: 명)

	전체	남자결혼이민자 자녀	여자결혼이민자 자녀
전체	99,684	5,744	93,940
0~6세	66,825	3,466	63,359
7~12세	20,888	1,100	19,787
13~15세	3,174	227	2,947
16~18세	1,934	189	1,745
19~22세	2,160	208	1,952
23세 이상	4,703	554	4,150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 기초현황자료, 2009.

4. 보고서의 구성

제1장은 서론으로 문제 제기, 연구 목적, 연구 내용과 방법론, 기존 연구의 검토 등을 다룬다. 제2장에서는 조성법을 사용하여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다문화가족 인구를 추계한다. 제3장에서는 2020년 결혼이민자 수용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을 한다. 사회전체의 총편익-총비용을 계산하고, 정부 예산으로 충당되는 지원 비용을 산출한다. 제4장에서는 공공부조와 아동양육 서비스로 지출되는 사회복지비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결혼이민자가 유입된 상황에서 바람직한 사회통합정책의 방향을 모색한다. 제6장에서는 결론으로, 중장기적 전망 하에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비전과 대책을 제시한다.

제2장

다문화가족 인구 추계

제2장 다문화가족 인구 추계

1. 다문화가족 인구 추계 개요

1) 추계 대상 및 기간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족 추계는 가족성원으로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주민과 한국인배우자 및 자녀 각각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주민은 국적미취득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기타사유로 국적을 취득한 자로 구성된다.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주민의 배우자는 한국인배우자를 가리킨다.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현재의 외국인과 한국인 부부간에 태어난 자녀’와 ‘외국인의 이전 배우자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포함하고, ‘한국인배우자의 이전 한국인배우자와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인자녀’는 제외한다. 결혼이민자의 손자녀는 추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은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로 세분하여 추계한다. 남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중국 조선족, 중국 한족, 미국, 일본, 기타국적으로 세분한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중국 조선족, 중국 한족,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몽골, 태국, 기타국적으로 세분한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성별 및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추계하되, 가족 단위의 추계는 실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추계의 명칭은 다문화가족 추계이나 실제로는 다문화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외국인(남녀별)과 그 한국인배우자 및 자녀를 추계하는 것이다. 한국인배우자는 자녀 추계를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추계되었으나, 그 결과는 본 보고서에 제시하지 않았다. 본 추계의 기간은 2010~2020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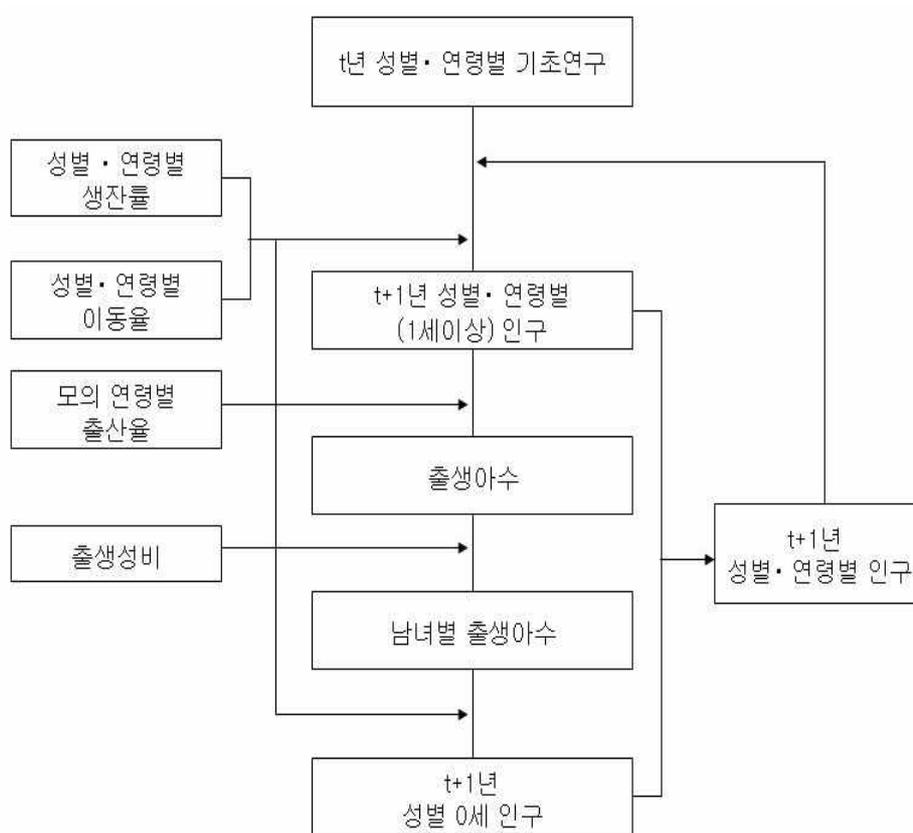
2) 추계방법 및 이용자료

다문화가족 구성원 추계 방법으로는 ‘조성법(造成法) 또는 코호트요인법’(cohort

component method)을 적용한다. 조성법은 출생·사망·인구이동 등의 인구변동요소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대표적인 인구추계방법으로, 우리나라 통계청뿐 아니라 국제기구 및 대부분 국가(정부)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조성법은 출생·사망·인구이동 등을 조합하는데, 기본적으로 인구균형방정식(demographic balancing equation)을 적용한다. 인구균형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P(t+n) = P(t) + B - D + I - E$$

(P 인구, B 출생수, D 사망자수, I 유입인구, E 유출인구, t는 연도)



[그림 2-1] 조성법에 의한 인구추계 과정

조성법은 기준연도(t)의 각 세별 인구(연령 a)에 출생을 더하고 사망을 감하며 순이동인구(외국으로부터 이입인구 - 외국으로 이출인구)를 더하여 다음해(t+1) 연령 a+1세 인구를 추계한다. 한편, t+1년도의 0세 인구는 t년도의 15~49세 여성인구에 해당 연령의 출산율을 적용하여 구한다. 조성법은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장래인구를 추계하는 것으로 그 과정은 [그림 2-1]에 조성법에 의한 인구추계 과정을 흐름도(flow chart)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조성법은 인구변동요인 즉, 출산·사망·인구이동의 변화에 대해 가정함으로써, 추계결과로 인구변동지표를 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조성법은 성별 및 연령별 추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본 연구에서 조성법을 적용한 주요 목적이기도 하다.

조성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은 외국인과 한국인배우자가 국제결혼 후 국내에 체류할 경우에 형성되는 가족으로서, 결혼신고를 하였으나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경우와 이혼하여 국외로 이동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이동상태는 추계대상에의 포함 또는 배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국제결혼이동의 패턴은 취업, 유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국제이동의 패턴과 다르다. 이에 따라 본 추계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국제이동률을 적용하되, 국제결혼부부(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에 대해서는 국제결혼이동 패턴(추이)을 적용하도록 한다. 즉, 국제결혼부부 인구 추계에 적용하는 인구균형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P(t+n) = P(t) + B - D + MI - DE$$

(P 인구, B 출생수, D 사망자수, I 유입인구, E 유출인구, t는 년도, MI는 국제결혼 후 체류자수, ME는 국제결혼 후 해외 체류자수, DE는 국내체류자 중 이혼 후 이출자수)

이하에서는 국제결혼부부 인구 추계에 적용하는 인구균형방정식을 구성하는 각 요소의 개념, 기준, 이용자료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가. 기준인구(base population)

추계는 기준연도 이후 일정기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기준연도의 인구를 기준인구(base population)라고 한다. 조성법에서는 기준인구에 인구변동요인의 변화가정을 적용하여 향후 인구를 추정한다. 본 추계에서 기준인구를 설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의 2009년 다문화가족 기초현황자료를 이용하였다. 다문화가족 기초현황자료는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2009년 5월 1일 기준시점으로 현장 확인 및 작성한 자료로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현황(성, 생년월일, 출신국, 국적미취득 국제결혼이나 혼인귀화자 등의 기본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구추계시 기준인구는 연앙(年央, mid-year) 시점의 인구로 설정한다. 다문화가족 기초현황자료 구축 일자(5월 1일)와 연앙일자(7월 1일) 간에 2개월 차이가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2009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다문화가족의 변동사항(출생·사망·이입 또는 이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추계에서는 2009년 5월 1일 이후 2개월간의 변화가 전체 다문화가족의 규모나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세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연령을 2009년 7월 1일자 기준으로 환산하여 출신국별·성별·연령별 연앙인구를 설정하였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의 2009년 다문화가족 기초현황자료는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체류현황자료를 기초로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자료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과소 조사되었다. 두 자료간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출신국과 성별을 기준으로 가중치(행정안전부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자료)를 산정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부부(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에게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설정한 2009년 7월 1일자 기준인구는 이하 추계결과로서 2009년 다문화가족(구성원)으로 제시하였다.

나. 출산력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산력은 출신국의 사회·경제적 및 보건의료적 환경, 한국으로 이입한 집단의 특수성(학력수준 등), 한국인남편 및 가족의 상황에 의해 영향

을 받을 것이다. 남성결혼이민자의 한국인부인도 한국의 사회환경, 국제결혼을 선택한 집단의 특수성, 외국인배우자의 특성(출신국이나 가치관) 등의 영향을 받아 일반적인 한국인여성과 다른 출산력을 가질 것이다.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추계에서는 출신국별로 출산력을 산정·적용하였다.

<표 2-1> 결혼이민남성의 출신국별 한국인 여성배우자 유배우출산율

한국인배우자(여성) 연령	결혼이민남성의 출신국						
	전체	중국	조선족	중국 한족	일본	미국	기타
15~19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20~24	0.0881	0.0537	0.1070	0.0000	0.0000	0.0000	0.1052
25~29	0.1074	0.0776	0.1211	0.0853	0.1073	0.1110	0.1110
30~34	0.1034	0.0821	0.0710	0.1726	0.0847	0.1254	0.1254
35~39	0.0483	0.0301	0.0381	0.0623	0.0411	0.0661	0.0661
40~44	0.0170	0.0086	0.0160	0.0000	0.0123	0.0288	0.0288
45~49	0.0049	0.0000	0.0049	0.0000	0.0000	0.0141	0.0141

주: 연령별유배우출산율(AMFR)=모 연령별 출생아수/해당 연령 유배우여성수

<표 2-2> 여성이민자의 출신국별 유배우출산율

결혼이민여성 연령	결혼이민여성의 출신국									
	전체	조선족	한족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태국	몽골	기타
15~19	0.1686	0.0204	0.0473	0.1743	0.1426	0.0470	0.3220	0.1117	0.1855	0.1741
20~24	0.2276	0.1458	0.1790	0.2268	0.2341	0.1766	0.4131	0.1024	0.2186	0.1704
25~29	0.1663	0.1366	0.1526	0.1895	0.1762	0.2185	0.3835	0.1337	0.1596	0.1204
30~34	0.0942	0.0831	0.0801	0.1255	0.1059	0.1902	0.2612	0.1076	0.1252	0.0947
35~39	0.0435	0.0371	0.0320	0.0733	0.0541	0.1251	0.1813	0.0528	0.0339	0.0669
40~44	0.0140	0.0076	0.0082	0.0497	0.0278	0.0331	0.3326	0.0256	0.0113	0.0412
45~49	0.0034	0.0014	0.0011	0.0281	0.0067	0.0033	0.0000	0.0123	0.0000	0.0260

주: 연령별유배우출산율(AMFR)=모 연령별 출생아수/해당 연령 유배우여성수

출산력 변화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기간출산력(period fertility), 코호트출산력(cohort fertility) 등을 적용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간출산력방법은 최근의 연령별출산율 수준이 향후에도 계속 유지되거나 일정한 변화율에 따라 변화할 것이라는 가정을 채택하고 있다. 본 추계에서는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배우기간출산율(period marital fertility rate)을 적용하였다. 주된

이유로 출산율 산정(출생아수÷여성수)시 분모가 되는 여성결혼이민자 또는 남성결혼이민자의 한국인부인 모두는 기혼여성으로서, 일반적인 기간출산율 산정 시와 달리 분모에 미혼여성이 포함될 수 없기 때문이다. 유배우출산율은 모의 연령별 출생아수(조사 자료에서 2008·5·1~2009·4·30 기간 출생한 자녀 수 이용)를 해당연령의 여성인구(모두 기혼여성으로 0세 자녀수 산정 시 적용된 기간의 중간 시점인 2008년 11월 1일 기준으로 연령을 환산하여 적용)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산정한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유배우출산율은 <표 2-1>과 <표 2-2>에 각각 제시하였다. 결혼이민여성 또는 결혼이민남성의 한국인부인의 출산력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마련이나, 일반적인 인구추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추계에서도 현 출산율이 2020년까지 그대로 지속된다는 중위(中位)가정을 적용하였다.

<표 2-3> 출생성비 변동 전망, 2009~2020년

(단위: 여아 100명당 남아수)

연도	출생성비	연도	출생성비	연도	출생성비
2009	107.52	2013	107.01	2017	106.62
2010	108.16	2014	107.66	2018	106.53
2011	107.25	2015	106.80	2019	106.44
2012	107.71	2016	106.70	2020	106.36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출생성비의 경우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배우자가 성장하였던 사회문화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인배우자는 결혼이민자에 비해 남아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한국사회에서 출생성비가 자연적인 상태(여아 100명당 남아 105~106명)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결혼부부의 출생아 성비도 유사하게 변화할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추계에서는, <표 2-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출생아를 남녀별로 구분하기 위해 통계청의 2006년 한국 장래인구 추계 시 설정하였던 출생성비 변화 가정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다. 사망력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한국인배우자의 경우에는 한국인의 사망력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결혼이민자의 사망력은 출신국가의 환경(기후 등 생태환경, 사회·경제수준, 보건의료수준, 영양상태 등)과 한국사회로 입국 당시 연령 및 체류기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제결혼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의 사망력도 부모의 유전이나 생활습관 등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한 영향요인들을 고려하여 결혼이민자나 자녀의 사망력을 측정하는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본 연구에서 별도 추정하는 데에도 자료나 시간 상 한계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추계에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결혼이민자와 자녀의 사망력이 장기적인 체류 과정에서 한국인 사망력에 근접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한국인 평균 사망력을 적용하였다. 한국인 평균 사망력으로는 통계청의 2006년 인구추계 가정으로서 성별·연령별 사망확률을 이용하였다. 2020년까지 성별·연령별 사망확률 변화를 평균수명으로 환산한 값은 <표 2-4>와 같다.

<표 2-4> 평균수명 변동 전망, 2005~2020년

(단위: 세)

연도	남자	여자	여-남	연도	남자	여자	여-남
2005	75.1	81.9	6.8	2015	76.9	83.6	6.7
2010	76.0	82.7	6.7	2020	77.8	84.5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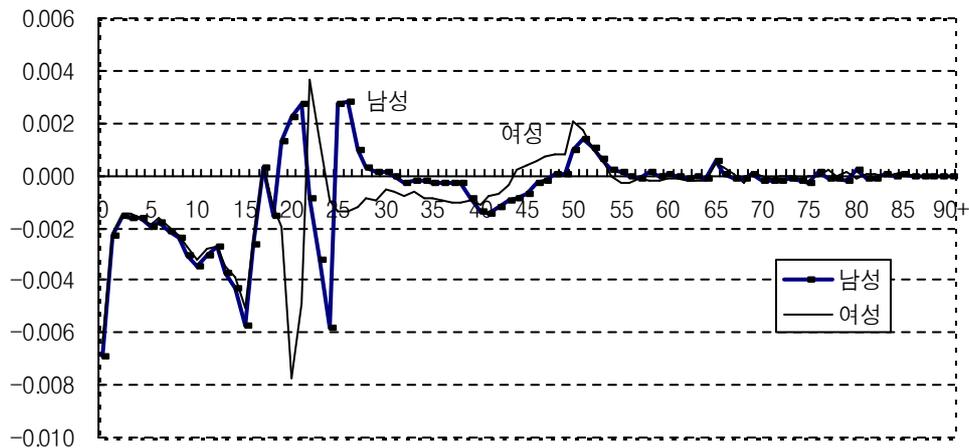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라. 국제이동력

본 추계에서는 국제결혼부부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한국인의 일반적인 국제이동력으로서, [그림 2-2]에 제시한 통계청의 2006년 인구추계 가정인 2000~2005년간 성별 연령별 국제순이동률의 평균치를 적용하였다.

다문화가족은 국제결혼을 통해 새로 형성되고, 일부는 이혼을 통해 해체되는 과정을 겪는다. 한국 내에서의 체류를 기준으로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규정할 경우, 국제결혼을 한 부부 모두가 새로운 다문화가족 형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들 중 일부는 한국의 행정기관에 결혼을 신고하는 법적인 절차를 거칠 뿐, 실제 외국

으로 이주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경향은 한국사회에서 한국인남편-외국인아내보다 외국인남편-한국인아내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나며, 후자의 경우에는 외국인남편의 출신국가가 동남아시아 등인 경우에 비해 미국이나 일본 등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그림 2-2] 2000~2005년 평균 국제순이동률, 2000년

국제이혼의 경우에도 일부는 한국에서 전혀 체류하지 않으면서 법적으로 이혼 신고만을 국내 행정기관에 접수할 것이다. 국내에서 결혼생활을 하였던 결혼이민자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출신국가로 돌아가거나, 한국에 그대로 체류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외국에서 체류하면서 법적인 이혼신고만 하는 경우나 한국 내 체류 중 이혼 후 본국으로 돌아가는 확률은 외국인여성보다는 외국인남성에게서 그리고 동남아 등의 출신보다는 미국이나 일본 출신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와 같은 결혼 및 이혼 패턴은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추계에 적용하는 것이 보다 정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자료는 없으므로, 본 추계를 위해서는 통계청의 국제결혼 및 국제이혼 통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즉, 결혼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혼이민자와 배우자의 국제이

동력(또는 다문화가족의 범위에서의 이출 또는 이입)은 <표 2-5>에 제시한 ‘최근 3년(2006~2008년)간 국제결혼 및 국제이혼 건수의 평균치 중 국내거주율(또는 국내잔존율)’을 가정하였다. 국내잔존율은 결혼이민자의 성별 및 출신국별 현 인구 규모와 출생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출신국별로 성·연령별 인구나 출생아수(0세 자녀수)의 규모를 지나치게 급격하게 변동(증감)시키지 않은 수준의 결혼 및 이혼 후 잔존율을 설정하였다. 이렇게 설정한 잔존율은 2020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2-5> 국제결혼 및 국제이혼 후 국내잔존율 가정

(단위: %)

출신국·성별	국제결혼시 국내 다문화가족 내 잔존율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 양측 동일 적용)	국제이혼시 국내 다문화가족 내 잔존율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 양측 동일 적용)
일본·미국 남성	20	0
이외 국가(남녀)	60	60

2. 주요 분석 결과

1) 결혼이민자 수 추계 결과

<표 2-6>에 따르면, 총 국제결혼이민자는 2009년 167천명에서 2020년 351천명으로 110.0%(연평균 6.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2-3 참조).¹⁾ 남성결혼이민자는 2009년 17천명에서 2020년 39천명으로 128.3%(연평균 7.5%) 증가하며, 여성결혼이민자는 동 기간 150천명에서 312천명으로 107.9%(연평균 6.7%) 증가할 것으로 각각 전망된다. 즉, 여성결혼이민자는 남성결혼이민자에 비해 2009년 8.7배 많으나 남성결혼이민자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그 격차는 2020년 7.9배로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제결혼 중 ‘한국인남편-외국인아내’ 형태가 지배적이거나, 점차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에 따라 ‘외국인남편-한국인

1) 연평균 증가율은 $\ln(P_{2020}/P_{2009}) \div 11$ 로 산정함.

아내' 형태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풀이된다.

<표 2-6> 출신국별 결혼이민자 수 전망, 2009~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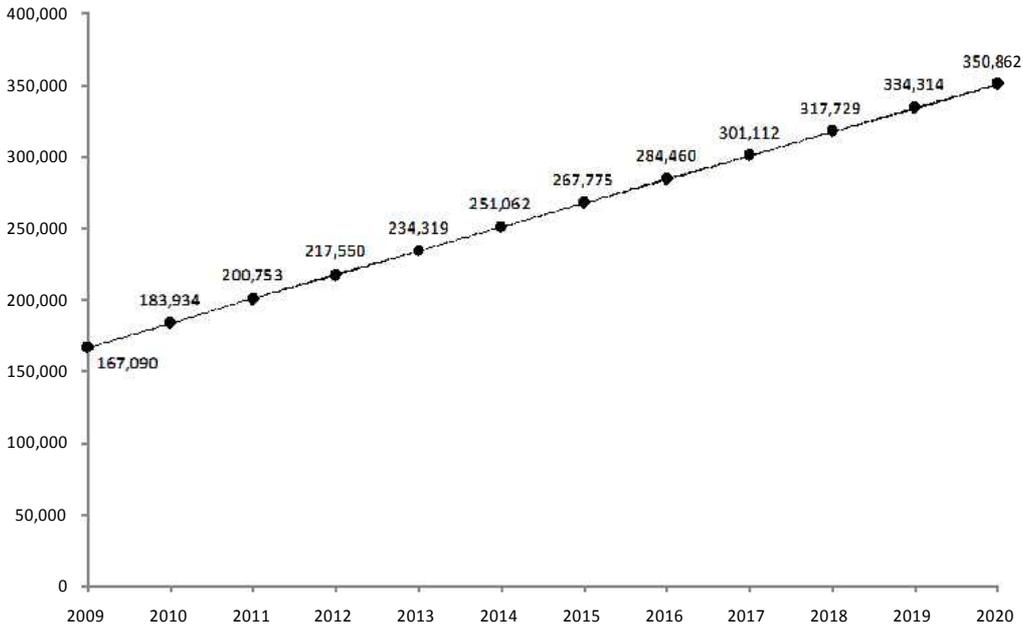
(단위: 명)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이민자 전체	167090	183934	200753	217550	234319	251062	267775	284460	301112	317729	334314	350862
남성이민자	17236	19299	21351	23396	25431	27456	29470	31472	33462	35440	37405	39356
중국 조선족	7120	7856	8588	9316	10040	10760	11475	12185	12890	13591	14286	14975
중국 한족	3929	4307	4682	5055	5426	5795	6162	6526	6888	7247	7603	7957
미국	1080	1101	1123	1144	1165	1185	1206	1225	1245	1264	1283	1301
일본	544	602	659	716	772	828	883	937	990	1043	1095	1146
기타	4563	5434	6300	7165	8028	8888	9745	10599	11449	12295	13139	13977
여성이민자	149854	164636	179402	194153	208888	223606	238306	252988	267650	282289	296909	311506
중국 조선족	46642	51215	55782	60341	64893	69437	73973	78500	83017	87524	92021	96507
중국 한족	44764	46977	49186	51390	53590	55786	57977	60164	62344	64519	66688	68850
베트남	30612	35259	39904	44547	49189	53828	58465	63101	67734	72365	76995	81622
필리핀	9596	10398	11200	12001	12802	13602	14401	15200	15999	16796	17593	18389
일본	4822	5431	6040	6648	7256	7862	8468	9073	9678	10281	10884	11486
캄보디아	2829	3360	3890	4421	4951	5481	6011	6541	7070	7599	8128	8657
몽골	2458	2759	3061	3362	3663	3963	4264	4564	4864	5164	5463	5762
태국	2199	2460	2720	2980	3240	3500	3759	4019	4278	4537	4796	5054
기타	5932	6776	7620	8463	9305	10146	10987	11827	12666	13504	14341	15178

남성결혼이민자는 출신국별로 중국 조선족이 7.1천명에서 15.0천명으로, 중국 한족이 2009년 3.9천명에서 2020년 8.0천명으로, 미국이 1.1천명에서 1.3천명으로, 일본이 0.5천명에서 1.1천명, 기타국가 출신이 4.6천명에서 14.0천명으로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출신국별로 2009~2020년 간 남성결혼이민자의 증가율은 기타국가(206.3%), 일본(110.8%), 중국 조선족(110.3%), 중국 한족(102.5%) 등의 순으로 높다.

여성결혼이민자는 중국 조선족이 2009년 46.7천명에서 2020년 96.5천명으로, 중국 한족이 44.8천명에서 68.9천명, 베트남이 30.6천명에서 81.6천명, 필리핀이 9.6천명에서 18.4천명, 일본이 4.8천명에서 11.5천명, 캄보디아가 2.8천명에서 8.7천명, 몽골이 2.5천명에서 5.8천명, 태국이 2.2천명에서 5.1천명 등으로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출신국별로 2009~2020년 간 여성결혼이민자의 증가율은 캄보디아(206.0%), 베트남(166.6%), 일본(138.2%), 몽골(134.4%), 태국(129.8%), 중국 조선

족(106.9%), 필리핀(91.6%), 한족(53.8%) 등의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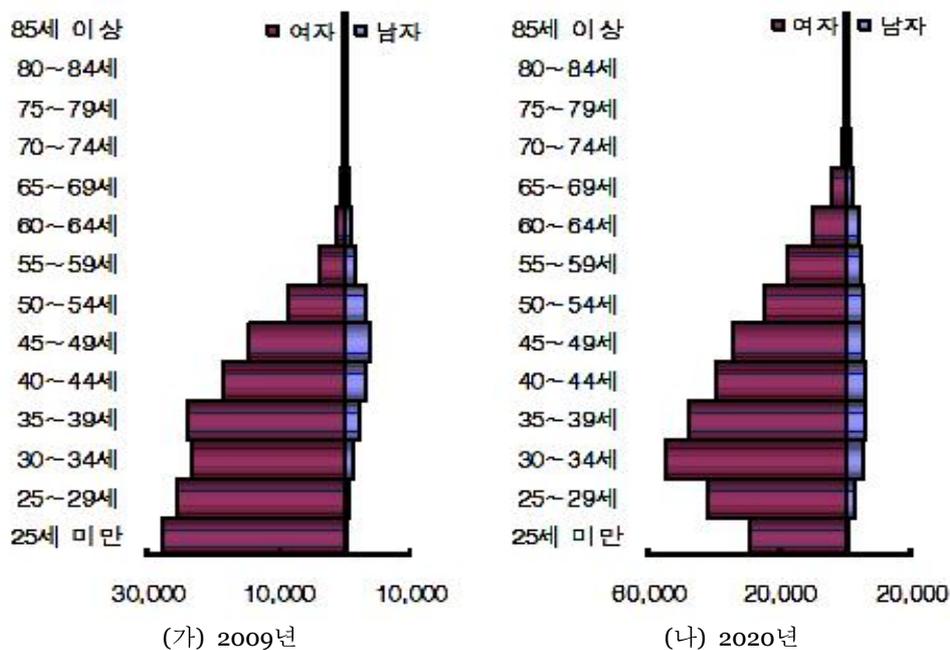
[그림 2-3] 결혼이민자의 장래인구추계, 2009~2020년

출신국별 결혼이민자 증가율의 차이로 인하여, 출신국별 결혼이민자의 분포도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비중은 2009년 중국 조선족 41.3%, 중국 한족 22.8%, 미국 6.3%, 일본 3.2% 등의 순이며, 기타국가들의 비중은 26.5%로 나타난다. 조선족과 한족을 합한 중국 출신이 64.1%로 거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추계 결과에서도 출신국별 순위는 동일하게 나타나나, 그 비중은 사뭇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조선족(38.0%)과 중국 한족(20.2%)의 중국출신이 58.2%로 줄어들고, 미국(3.3%)과 일본(2.9%)의 비중도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기타국가들의 비중은 2009년 26.5%에서 2020년 35.5%로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로써 동남아시아 근로자들이 국내에서 결혼하여 정착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비중은 2009년 중국 조선족(31.1%), 중국 한족

(29.9%), 베트남(20.4%), 필리핀(6.4%), 일본(3.2%), 캄보디아(1.9%) 등의 순이었으나, 2020년에는 중국 조선족(31.0%), 중국 한족(22.1%), 베트남(26.2%), 필리핀(5.9%), 일본(3.7%), 캄보디아(2.8%) 등의 순으로 변화될 전망이다. 조선족의 비중은 크게 변하지 않은 반면, 한족과 필리핀의 비중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베트남, 일본, 캄보디아, 기타국가 등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 비중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요컨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중국 중심에서 다국화(동남아시아 국가 등) 경향이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표 2-7>에는 연령별 결혼이민자 수의 변동 전망이 제시되어 있다. 결혼이민자 유입 기간이 길어지면서, 결혼이민자의 연령 구성도 2009년과는 달라질 것이 명백하므로, <표 2-7>에 나타난 남녀 결혼이민자의 연령별 인구구성 자료를 이용하여 [그림 2-4]와 같은 인구 피라미드를 그렸다. 2009년과 2020년의 성별·연령별 인구구성 자료를 비교하면,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최다수 집단이 20대에서 30대로 바뀔 것이고, 남성 결혼이민자는 40대에서 30대로 바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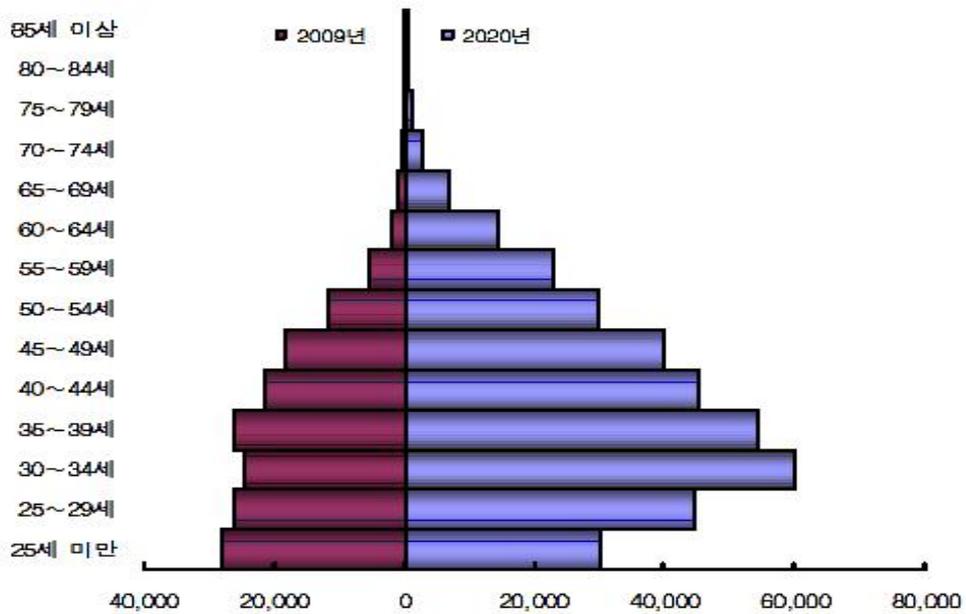


[그림 2-4] 결혼이민자 인구 피라미드, 2009~2020년

<표 2-7> 연령별 결혼이민자 수 전망, 2009~2020년

(단위: 명)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이민자 전체	167090	183934	200753	217550	234319	251062	267775	284460	301112	317729	334314	350862
24세 이하	28288	29525	29858	29336	28421	28446	28890	29827	29960	29970	29972	29972
25~29세	26318	30204	34814	38947	42972	45487	46279	45676	45024	44102	44127	44571
30~34세	24680	27446	29912	33513	36980	39994	43873	48474	52601	56620	59131	59923
35~39세	26337	28076	29493	30776	32289	34909	37669	40129	43723	47182	50191	54063
40~44세	21454	23306	26068	29232	31982	33700	35435	36849	38130	39640	42254	45007
45~49세	18513	20038	21951	23794	24168	25938	27784	30535	33685	36423	38137	39866
50~54세	11789	13713	14997	15775	18451	20570	22087	23989	25819	26199	27961	29803
55~59세	5467	6620	7864	9445	11057	12463	14364	15633	16404	19056	21157	22665
60~64세	2043	2596	3133	3705	4582	5563	6690	7905	9451	11032	12412	14281
65~69세	1064	1156	1260	1453	1703	2079	2611	3127	3680	4525	5473	6563
70~74세	610	670	765	865	928	1028	1114	1212	1395	1631	1986	2487
75~79세	300	326	365	415	468	530	584	669	759	814	905	981
80~84세	149	167	177	182	202	227	249	279	319	360	412	458
85세 이상	78	93	96	111	117	126	145	153	162	174	195	221
남자 소계	17236	19299	21351	23396	25431	27456	29470	31472	33462	35440	37405	39356
24세 이하	254	347	390	411	416	413	406	384	365	365	365	365
25~29세	644	1006	1364	1650	1888	2055	2155	2220	2260	2265	2262	2255
30~34세	1295	1673	2028	2408	2788	3151	3512	3868	4154	4391	4558	4658
35~39세	2159	2382	2569	2832	3098	3446	3823	4176	4555	4933	5295	5655
40~44세	2972	2979	3221	3457	3668	3796	4017	4203	4465	4730	5076	5451
45~49세	3613	3751	3831	3972	3928	4091	4100	4340	4573	4783	4911	5130
50~54세	3060	3413	3631	3739	4022	4197	4335	4415	4554	4513	4676	4686
55~59세	1632	1937	2295	2661	2999	3262	3605	3817	3923	4200	4372	4508
60~64세	698	846	985	1126	1369	1631	1922	2263	2612	2935	3187	3516
65~69세	402	434	464	511	576	682	819	947	1079	1306	1550	1822
70~74세	263	267	287	319	339	367	395	423	465	525	620	743
75~79세	138	149	166	186	207	216	219	237	264	281	305	328
80~84세	67	68	74	73	81	97	105	118	132	147	154	156
85세 이상	38	47	46	50	52	52	56	60	61	66	75	83
여자 소계	149854	164636	179402	194153	208888	223606	238306	252988	267650	282289	296909	311506
24세 이하	28035	29178	29469	28925	28005	28033	28484	29443	29595	29605	29607	29607
25~29세	25673	29198	33450	37297	41084	43432	44124	43457	42764	41837	41865	42316
30~34세	23385	25773	27884	31105	34191	36843	40361	44606	48447	52228	54573	55265
35~39세	24178	25694	26924	27944	29191	31463	33846	35953	39168	42249	44896	48408
40~44세	18482	20327	22847	25776	28314	29905	31417	32646	33665	34911	37178	39557
45~49세	14900	16286	18120	19821	20240	21846	23685	26196	29112	31640	33227	34736
50~54세	8729	10300	11366	12036	14429	16373	17752	19574	21265	21685	23286	25116
55~59세	3835	4683	5569	6784	8058	9202	10759	11816	12481	14856	16785	18157
60~64세	1345	1750	2148	2579	3213	3932	4768	5642	6840	8097	9226	10765
65~69세	663	722	796	942	1127	1397	1792	2180	2601	3219	3922	4741
70~74세	347	403	477	546	589	661	718	789	930	1106	1366	1744
75~79세	162	177	198	229	261	314	365	432	495	533	600	653
80~84세	81	99	103	108	121	130	144	161	187	214	258	302
85세 이상	40	46	50	61	65	74	89	93	101	109	120	139



[그림 2-5] 결혼이민자 연령별 인구 구성의 변화, 2009~2020년

[그림 2-5]는 성별 구분 없이 연령별로만 2009년과 2020년 사이의 인구 구성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2020년에는 30세 미만 결혼이민자 수는 상대적으로 적고, 30세 이상 결혼이민자 수가 많아지는 형태로 바뀔 것이다.

2) 결혼이민자의 자녀수 추계 결과

결혼이민자의 자녀수는 출신국별 가임여성인구 규모와 그들의 출산력에 의해 결정된다. 출신국별 출산력은 <표 2-1>과 <표 2-2>에서 제시한 바 있다. <표 2-8>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의 자녀수는 2009년 현재 총 99.7천명이며, 그것은 2020년 302.7천명으로 약 2배(203.7%, 연평균 10.1%) 증가할 전망이다(그림 2-6 참조). 남성결혼이민자의 자녀수는 동 기간 5.7천명에서 15.8천명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수는 93.9천명에서 286.9천명으로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수의 증가율은 205.4%로, 남성결혼이민자 자녀수의 증가율 175.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일반적으로 남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들이 중국, 일본, 미국

등으로 상대적으로 저출산 성향이 강한데다가, 그들의 배우자인 한국여성들의 저출산 성향도 강하다. 반면,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는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상대적으로 고출산 성향이 높은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한 출산 성향의 차이가 향후 출신국가별 결혼이민자의 자녀수 증가 추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8>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결혼이민자의 자녀수 전망, 2009~2020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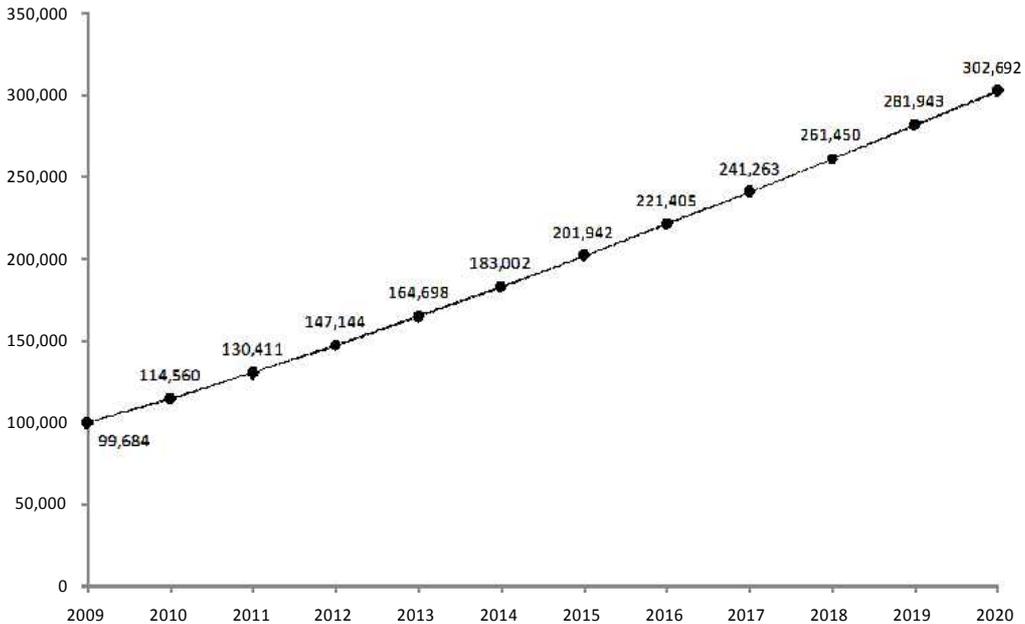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이민자 자녀	99684	114560	130411	147144	164698	183002	201942	221405	241263	261450	281943	302692
남성이민자 자녀	5744	6382	7093	7872	8715	9613	10561	11554	12586	13649	14737	15841
중국 조선족	1505	1619	1746	1883	2030	2185	2348	2518	2694	2875	3059	3246
중국 한족	1010	1118	1230	1347	1467	1590	1715	1841	1969	2098	2228	2357
미국	440	482	519	553	585	613	638	659	678	696	711	725
일본	353	369	386	403	420	438	456	475	493	512	531	550
기타	2,436	2,794	3,212	3,686	4,213	4,787	5,405	6,061	6,750	7,467	8,207	8,963
여성이민자 자녀	93940	108178	123318	139272	155983	173389	191381	209851	228678	247801	267206	286852
중국 조선족	22860	24440	26156	27992	29935	31980	34115	36329	38602	40916	43261	45626
중국 한족	23,834	25,892	27,845	29,687	31,434	33,096	34,679	36,180	37,596	38,932	40,196	41,391
베트남	21117	27822	35074	42830	51062	59724	68748	78076	87634	97405	107383	117542
필리핀	10268	11346	12466	13624	14814	16033	17276	18537	19815	21101	22392	23685
일본	6480	6924	7419	7961	8546	9172	9830	10518	11231	11956	12685	13415
캄보디아	1923	3269	4765	6402	8167	10053	12046	14128	16285	18513	20823	23219
몽골	1597	1881	2181	2493	2816	3148	3488	3831	4178	4526	4876	5226
태국	1596	1768	1949	2140	2338	2543	2754	2968	3186	3407	3629	3853
기타	4265	4836	5463	6143	6871	7640	8446	9283	10151	11045	11961	12894

출신국별로 2009~2020년 간 남성결혼이민자의 자녀수 증가율은 기타국가(267.9%), 중국 한족(133.4%), 중국 조선족(115.7%), 미국(64.8%), 일본(55.8%) 등의 순으로 전망된다.2) 기타국가 출신 남성결혼이민자는 주로 저숙련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와서 한국 여성과 결혼한 사람들로서, 동남아시아 나라 출신이 대다수다. 그들은 상대적으로 고출산 성향을 가진 나라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자녀수 증가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일본 출신 남성결혼이민자의

2) 이민자 유형별·출신국별·연령별(각세 단위) 다문화가족 인구추계는 부록 1에 제시하였다.

자녀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이들 국가의 남성결혼이민자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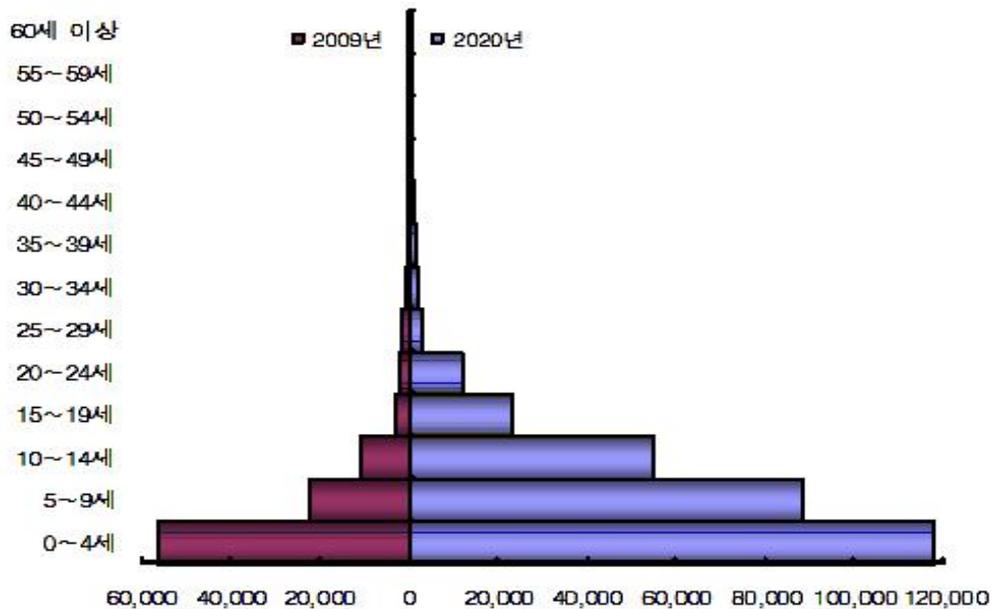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수 증가율은 캄보디아(1107.4%), 베트남(456.6%), 몽골(227.3%), 기타국가(202.3%), 태국(141.4%), 필리핀(130.7%), 일본(107.0%) 등으로 나타난다. 특히, 캄보디아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수는 2009년 1.9천명에서 2020년 23.2천명으로 11배,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수는 21.1천명에서 117.5천명으로 4.6배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최근 캄보디아와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의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다가, 이들의 다출산 성향이 아주 강한데 기인한다. 반면, 조선족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수 증가율은 2009~2020년 간 99.6%, 한족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수 증가율은 73.7%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전망이다. 중국 조선족과 한족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데다가, 그들의 저출산 성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이다.



[그림 2-6] 결혼이민자 자녀의 장래인구추계, 2009~2020년

출신국별 결혼이민자 자녀수의 증가율 차이가 두드러짐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자녀수의 출신국별 분포도 변화할 전망이다. 2009년 남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로 자녀수 비중은 기타국가(42.4%), 조선족(26.2%), 한족(17.6%), 미국(7.7%), 일본(6.1%) 등의 순이었으며, 2020년에도 그 순위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그렇지만 기타국가의 비중이 56.6%로 증가하는 반면, 조선족(20.5%), 한족(14.9%), 미국(4.6%), 일본(3.5%) 등의 비중은 줄어들 전망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로 자녀수 비중은 2009년 한족(25.4%), 조선족(24.3%), 베트남(22.5%), 필리핀(10.9%) 등의 순이나, 2020년에는 베트남(41.0%), 조선족(15.9%), 한족(14.4%), 필리핀(8.3%), 캄보디아(8.1%) 등의 순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한편, 결혼이민자의 자녀의 연령 구성은 결혼이민자의 결혼시기(국내이입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내 이입시기가 빠를수록 결혼이민자의 연령이 높을 것이며, 이에 따라 자녀들의 연령도 높을 것이다. <표 2-9>에는 연령별 결혼이민자의 자녀 수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이용하여 [그림 2-7]과 같은 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별 인구 구성을 나타내었다.



[그림 2-7] 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별 인구 구성의 변화, 2009~2020년

<표 2-9> 연령별 결혼이민자의 자녀 수 전망, 2009~2020년

(단위: 명)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인민자 자녀	99684	114560	130411	147144	164698	183002	201942	221405	241263	261450	281943	302692
0~4세	56360	65202	73728	80003	84435	92066	97317	102158	106545	110513	114118	117408
5~9세	22653	25649	29079	35833	45021	50861	58873	66611	72290	76276	83209	87964
10~14세	11039	13249	16102	17696	19072	21035	23816	26991	33247	41765	47213	54668
15~19세	3363	3795	4458	6136	8229	10512	12636	15375	16908	18227	20097	22747
20~24세	2479	2555	2604	2723	2859	3107	3521	4146	5757	7732	9846	11767
25~29세	1801	1850	1900	1924	1957	2031	2093	2134	2232	2344	2548	2891
30~34세	840	1004	1166	1315	1443	1514	1554	1595	1615	1641	1704	1755
35~39세	566	576	587	628	692	774	924	1074	1213	1332	1398	1435
40~44세	250	313	384	443	506	544	553	564	603	665	743	888
45~49세	144	167	159	180	198	244	305	375	433	495	533	542
50~54세	49	58	94	106	122	141	165	156	178	195	241	301
55~59세	55	45	45	46	49	48	56	92	103	119	138	161
60세 이상	84	99	104	111	115	125	128	134	140	146	153	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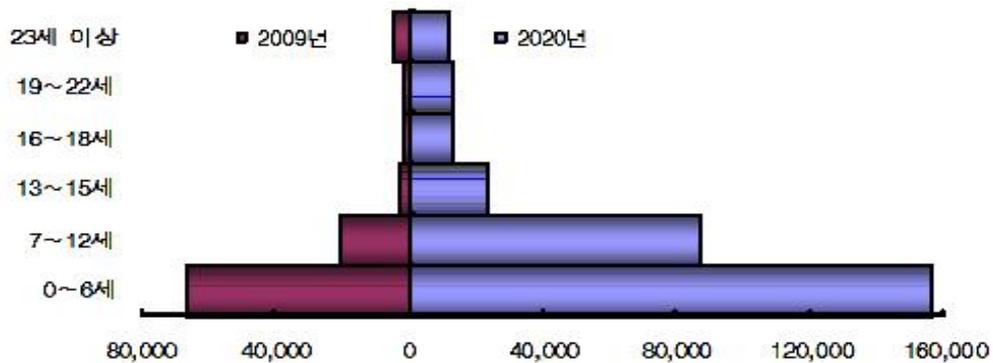
2020년에는 10세 미만 아동의 수가 2009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날 것이며, 2009년에는 거의 없는 만 19세 이상 성인 인구도 꽤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표 2-8>에는 2009~2020년의 결혼이민자 자녀의 학령별 인구구성이 제시되어 있다. [그림 2-8]은 2009년과 2020년의 학령별 결혼이민자 자녀의 수를 비교하여 보여준다. 결혼이민자의 증가에 따라 모든 학령기에서의 결혼이민자의 자녀 수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보육·유아교육기 아동(0~6세)은 2009년 66.8천명에서 2020년 156.2천명으로 100%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7~12세)은 동 기간 20.1천명에서 86.6천명으로 4배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중학교학령기 아동(13~15세)은 3.2천명에서 23.1천명으로 7배 수준, 고등학교학령기 아동(16~18세)은 1.9천명에서 12.9천명으로 6배 이상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대학교학령기 인구(19~22세)는 2.2천명에서 12.6천명으로 6배 정도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노동참여가능인구(23세 이상)는 4.7천명에서 11.3천명으로 2배 이상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남성결혼이민자와 여성결혼이민자 간의 연령별 자녀 구성은 다소 정도 차이가 있으나 거의 유사하며, 향후에도 유사하게 변화할 전망이다. 이러한 결혼이민자의 자녀수의 증가 속도 및 규모는 보육정책, 교육정책, 노동정책 등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표 2-10> 결혼이민자의 자녀의 학령별 인구 추계, 2009~2020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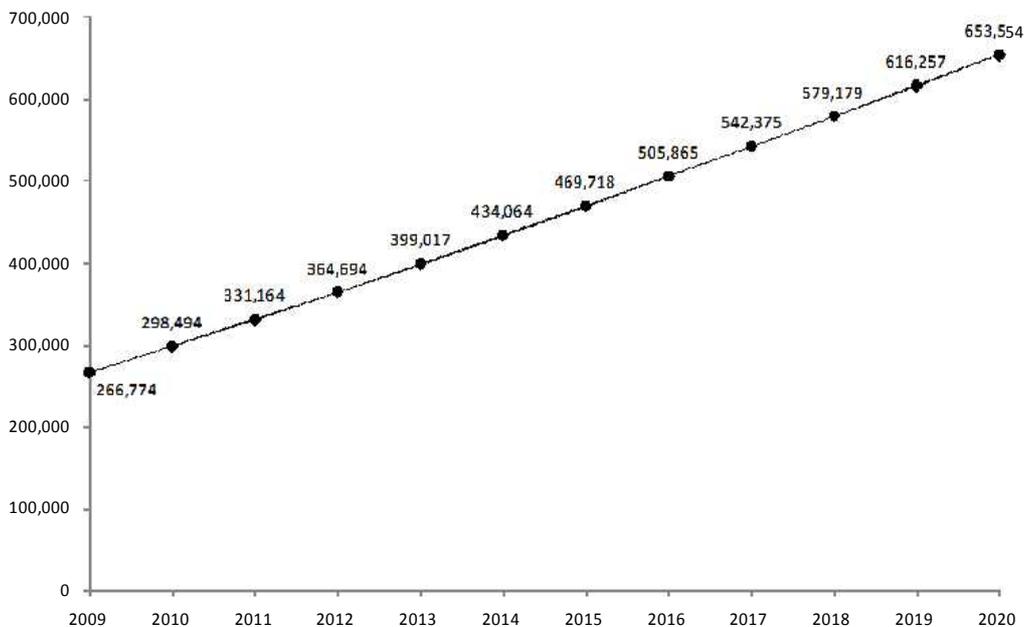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99684	114560	130411	147144	164698	183002	201942	221405	241263	261450	281943	302692
0~6세	66825	77628	88480	99342	109763	117887	124064	133132	139672	145657	151152	156192
7~12세	20888	22800	25191	28146	32338	38736	47892	54461	63093	71834	80254	86631
13~15세	3174	4709	6498	8383	9229	10469	11230	12186	13200	15195	18143	23063
16~18세	1934	2174	2552	3109	4607	6359	8215	9049	10261	11009	11951	12938
19~22세	2160	2220	2320	2442	2668	3100	3685	5284	7198	9201	10998	12609
23세 이상	4703	5030	5370	5722	6094	6451	6856	7292	7839	8553	9445	11259
남성결혼이민자 자녀	5744	6382	7093	7872	8715	9613	10561	11554	12586	13649	14737	15841
0~6세	3466	3885	4302	4736	5188	5566	5884	6475	6933	7357	7743	8091
7~12세	1100	1243	1459	1631	1841	2179	2615	2813	3112	3430	3768	4043
13~15세	227	253	280	396	503	610	635	664	761	895	1061	1280
16~18세	189	201	213	223	248	275	387	492	598	623	652	746
19~22세	208	222	232	257	251	264	282	309	335	453	572	676
23세 이상	554	578	607	630	685	720	757	801	846	891	941	1005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93940	108178	123318	139272	155983	173389	191381	209851	228678	247801	267206	286852
0~6세	63359	73743	84178	94606	104575	112322	118180	126657	132739	138300	143409	148101
7~12세	19787	21557	23732	26515	30497	36557	45277	51648	59980	68405	76485	82588
13~15세	2947	4456	6218	7988	8726	9859	10594	11522	12439	14300	17083	21783
16~18세	1745	1973	2339	2886	4359	6085	7828	8557	9663	10386	11300	12192
19~22세	1952	1998	2088	2186	2417	2836	3403	4975	6863	8748	10426	11933
23세 이상	4150	4452	4763	5092	5410	5730	6100	6492	6993	7663	8504	10254



[그림 2-8] 결혼이민자 자녀의 학령별 인구 구성의 변화, 2009~2020년

3)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수 추계 결과

[그림 2-9]에는 2009~2020년의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인구 규모가 제시되어 있다. 2009년 266,774명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 653,554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다. 결혼이민자 수가 2009년 167,090명에서 2020년 350,862명으로 늘어나고, 결혼이민자의 자녀수는 각각 99,684명에서 302,692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2009년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의 진입 단계에 있었다면, 2020년에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수가 증가할 뿐 아니라 국내 이주 기간이 장기화된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다문화사회가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9]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장래인구추계, 2009~2020년

제3장

결혼이민자 수용의 사회·경제적 비용-편익 분석

제3장 결혼이민자 수용의 사회·경제적 비용-편익 분석

1. 이민자 수용의 사회·경제적 편익과 비용

1) 사회·경제적 편익과 비용의 의미

이민자 수용에 따른 사회·경제적 총편익은 그들을 받아들임으로써 발생하는 이익과 그들의 부재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가치의 차이로 계산되고, 총비용은 그들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그렇지 않았을 때의 가치를 비교한 값이다. ‘이민자 수용의 총편익과 총비용의 차’가 양의 값을 가질 경우 긍정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음의 값일 경우 부정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05)에 의하면,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이민 수용은 긍정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새로 들어온 이민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산업 생산을 늘리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주장은 이민 수용의 긍정적 효과, 특히 경제적 편익을 강조한다. 보드바슨과 반덴버그(Bodvarsson and Van den Berg, 2009: 123-179)는 이민자들이 장기 거주하는 경우, 이민자들은 노동자로서 뿐만 아니라 소비자로서의 역할도 커지므로, 이민자들이 그들 수입의 일부분을 소비한다면 노동에 대한 파생효과가 나타남을 강조한다. 또 이민자들의 낮은 노동비용으로 인해 제품 공급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내국인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제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도 있지만, 문화적 다양성을 고취시키는 효과는 더욱 클 것이다. 다만,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일 뿐이다.

그렇지만 이민자 수용이 항상 긍정적 효과만 낳는 것은 아니다. 이민자 수용의 효과는 각국 노동시장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노동시장에서 인력부족(vacancies)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민자들이 그 부분을 채워준다면 편익은 매우 클 것이다. 그러나 실업이 만연해 있는데, 이민자들이 낮은 임금과 통제하기 쉬운 노동력을 이점으로 노동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다면, 편익보다는 비용이 더 커질 것이다. 기존 노동시장의 상황과 이민자의 직업 배치가 어떻게 어울리는가에 따라 이민자 수용의 편익과 비용의 크기가 제각각이 될 것이다(Chiswick, 2005; DeVoretz, 2004 참조).

또 인구감소가 진행되는 시기에 이민이 유입된다면 그 사회적 의미는 매우 크다. 저출산·고령화로 “국민국가 단위 사회의 지속”이 쟁점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람”이 늘어나는 효과는 더욱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갑자기 남북통일이 되어 인구감소의 충격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쟁점이 된다면 “통제 불가능한” 이민자의 유입은 재앙에 가까운 부정적 효과를 줄 것이다.

이민의 영향은 내국인 노동자들의 임금감소 및 실업, 주택, 취약인구, 범죄, 문화와 공동체 해체, 복지 지출, 공공서비스, 공공재정 등의 문제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U.K. House of Lords, 2007a; Gott and Johnston, 2002). 이민사회학 또는 이민경제학은 노동시장의 효과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경제문제를 기반으로 사회·문화·복지 효과에 관한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한 부정적 효과를 통제하는 것은 이민자를 수용하는 나라의 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과제일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이민자가 유입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진단하고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는데 정책적 관심이 집중된다.

2) 이민자 수용의 경제적 편익과 비용¹⁾

어떤 나라에 이민자가 들어와서 생활하는 것은 광범위한 경제적 효과를 미친다. 노동시장과 공공재정이 그 주된 영역인데, 노동시장에서는 이민자의 연령과 숙련 수준에 따라서 효과가 제 각각이고, 공공재정 부문은 이민자의 납세로 혜택을 볼

1) 이 절은 에런버그·스미스(Ehrenberg and Smith, 2006: 336-343)와 이규용·유길상·이해춘·설동훈·박성재(2007: 8-24) 및 보드바슨·반덴버그(Bodvarsson and Van den Berg, 2009: 107-182)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수 있고, 이민자로부터 발생하는 추가 공공지출로 인해 부담을 안게 될 수도 있다. 이민자의 연령과 숙련수준뿐만 아니라 체류기간과 이주 목적 등의 기준에서 이민자의 성격이 매우 다양하므로, 이민자가 어떤 나라에 들어온 것이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미친다고 단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민자의 유입이, 예컨대 임금 등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이 축적되어 있지만, 단순하게 일반화할 수 있는 명제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 “특정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식의 결론이 대부분이고, 명확한 결론이 있는 경우는 드물다. 임금이 시장의 힘에 의해 결정된다면 아마도 조정기간 중에는 실업이 증가하겠지만, 이민자의 유입으로 인해 이민자 유입국(host country) 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고 고용이 증가하며, 송출국에서는 반대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생각이다. 유연성이 부족한 노동시장에서는 이민자 유입국의 임금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더 작으며 실업이 더욱 늘고 더 오래 지속된다.

이민자의 숙련수준과 유형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이민자의 유입으로 인해 노동력의 규모와 숙련 구성이 변화하면 평균임금과 임금구조 역시 변화할 것이며, 그 결과 불평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만약 이민자의 유입이 압도적으로 단순노무직에 치우쳐 있다면, 단순노무직 종사자의 임금이 하락할 것이고, 동시에 전문기술직 종사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며 전문기술직 종사자의 임금은 상승할 것이다.

이민자 유입이 유입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경제학 이론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민자의 유입과 임금 또는 고용 사이의 경험적 증거 또는 통계적 상관성은 종종 약하며 확정짓기가 어렵다. 미국과 유럽에서 이루어진 계량경제학적 연구들은 특정 집단을 제외하면 이민자의 유입이 자국 노동자의 소득을 크게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의 연구들은 외국인들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민자들 자신만 제외하고는, 또는 유럽의 경우 보유 숙련이 거의 없는 일부 저숙련 이민자 집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노동부문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점유하는 노동시장이 겹치기 때문에, ‘정착한 이민자’와 ‘최근에 도착한 이민자’가 서로 직접 경쟁을 하지만, 후자가 기존 이민자의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별로 크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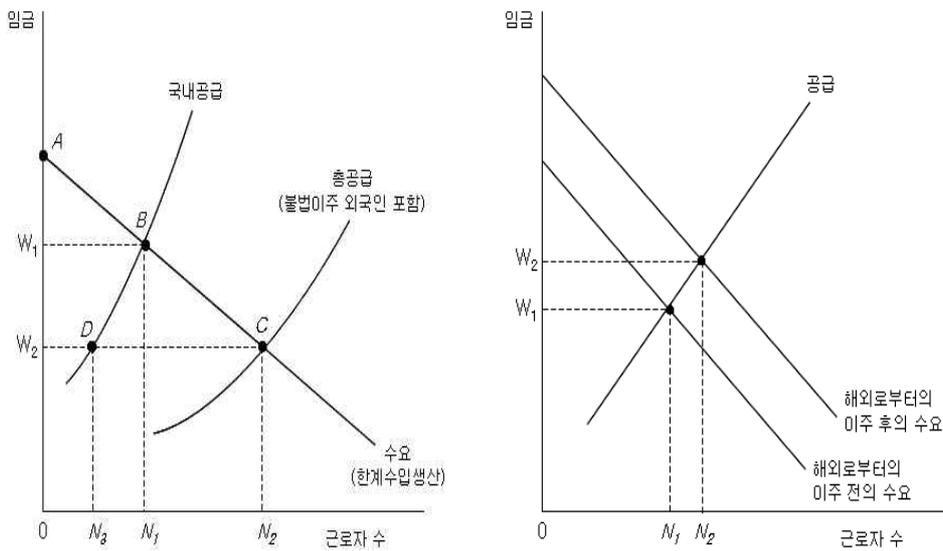
이민자의 유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민자의 인적 자원과 이주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이민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 각각이다. 경기 변동에 따른 이민자의 경험도 나라마다 시기마다 제 각각이다. 이민자 유입과 실업률 사이에는 명백한 관계는 없지만, 새로운 이민자의 유입으로 자국민의 실업이 증가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거의 늘 존재해 왔다. 그러한 우려는 실업률이 높고 장기실업이 만연한 일부 유럽에서 주로 발견된다. 그렇지만 경험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민자 유입과 실업률 간에 체계적 관계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적어도 다음 사실은 확실하다. 경기팽창과 부문별 노동력부족 시기에 이민자 유입은 두 차원에서 노동시장의 평형을 가져온다. 첫째, 팽창하는 노동력 수요를, 특히 그러한 수요가 매우 빠르게 증가할 때, 충족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보유 숙련이 거의 없는 이민자가 유입되면 자국민의 사회계층적 지위가 높아지고, 보다 역동적이고 사회에서 더 높은 가치를 두는 부문으로 자국 노동력이 재배치되는 효과를 갖는다. 사회적 사다리의 밑 부분에서의 활동들은 매우 매력적이지 못하며 만성적 노동력부족을 드러내는데, 이민자들이 그 부문의 활동을 맡게 된다. 그것은 ‘노동시장 분절론’(labor market segmentation theories)의 핵심이기도 하다. 자국민의 지리적 또는 부문간 노동이동이 활발하지 못한 나라에서는 이민자가 노동시장에 더 큰 유연성을 불어넣음으로써 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가. 이민자의 유입에 따른 이익과 손실

이민자 유입이 내국인들에게 해가 된다는 주장은, [그림 3-1]의 (가)에서 제시한 ‘단순노동자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와 같은 단일시장 분석에 종종 기초하고 있다. 일정 범위 내에서는 그 주장은 그럴듯하다. 외국으로부터의 이민자 유입이 단순노동자의 공급을 증가시킬 때, 단순노동자로 일하는 내국인들의 임금과 고용수준은 모두 감소된다. 유입국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총임금(total wage bill)은 [그림 3-1] (가)의 W_1ON_1B 로부터 W_2ON_3D 로 하락한다. 일부 내국인들은 감소된 임금에 대응하여 시장을 떠나며, 시장에 머무르는 노동자들은 더 작게 번다.

그렇지만 비록 저숙련 이민자의 유입이 국내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더라도, 이민자 유입이 내국인들 전체에게 필연적으로 해가 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설부른 판단일 수 있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값싼 노동력’을 가진 이민자의 유입은 노동의 생산물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분명히 편익을 준다. 임금이 감소되고 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그 노동력에 의해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는 양이 증가되고 가격은 하락한다.



(가) 단순노동자들에 대한 수요와 공급 (나) 저숙련자를 제외한 모든 노동자의 시장
 자료: Ehrenberg and Smith (2006: 336, 339).

[그림 3-1] 이민자 수용의 경제적 효과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노동자의 사용자들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명백히 편익을 얻는다. [그림 3-1]의 (가)에서 사용자의 이윤은 W_1AB 에서 W_2AC 로 증가한다. 그 이윤의 증가는 두 가지 중요한 효과를 가진다. 자본에 대한 수익을 증가시킴으로써, 투자자들이 공장과 설비에 투자를 증가시키는 신호로서의 역할을 한다. 또한 증가된 이윤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자가 되도록 유발시킬 것이다. 자본과 사용자 수의 증가는 궁극적으로 이윤율을 정상수준으로 하락시키겠지만,

최종적으로 국가의 자본보유량은 증가되고 일부 노동자들이 사용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형은 이민자 유입이 수요곡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림 3-1]의 (가)에서 수요곡선은 고정되어 있다. 이민자들이 자신의 근로소득 중 단순노동자에 의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부분이 작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지 하나의 시장을 살펴볼 때는 무리한 가정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이민자들은 유입국에서 소비자로서 지출하게 마련이다. 그렇게 추가된 수요는, [그림 3-1]의 (나)에 제시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고용기회를 만들어 낸다. 그러므로 저숙련 이민자와 명백한 대체관계에 있지 않은 노동자 또는 일반 시민들은 기존 경제활동인구에 이민자들이 추가되어서 나타나는 소비수요의 증가로 인해 편익을 얻는다.

한편, 숙련노동자와 저숙련노동자가 모두 노동시장에서 이민자와 대체관계에 있다고 가정하면, 이민자가 그 나라 경제에서 보완요소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규모효과’(scale effect)가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를 압도하는 것이다. 이민자 유입으로 경제활동인구 규모가 커지면서 총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규모효과’가 매우 커진다고 가정할 수 있다. 만약 숙련과 저숙련 노동자 모두 노동시장에서 이민자와 대체관계에 있다면, 숙련노동자들에 대한 수요가 저숙련 이민자 유입에 의해 증가한다는 것을 이론적 분석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숙련노동자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확실히 있다는 관찰 내용은 이론적 분석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생산과정에서 저숙련노동자와 보완관계에 있는 사람들, 예컨대 ‘생산 감독’ 등은 저숙련이민자의 유입에 의한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나. 이민자의 유입에 따른 순편익

지금까지는 이민자 유입이 소비자, 사용자, 그리고 숙련노동자와 저숙련노동자를 포함하는 여러 그룹의 내국인노동자들에게 미칠 가능성이 있는 효과를 분석하는 경제 모형을 소개하였다. 그 모형에 따르면, 그 집단들 중 일부는 명백히 이익을 얻고 있다. 그들 중에는 사용자, 소비자, 노동시장에서 이민자와 보완관계에 있

는 내국인노동자들이 포함된다. 노동시장에서 이민자와 강한 대체관계에 있는 내국인노동자들은 이민자 유입으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가장 크지만, 다른 집단에 속한 내국인노동자들의 이익 또는 손실은 ‘대체효과’와 ‘규모효과’라는 잠재적으로 상쇄되는 효과들이 공존하므로, 그 방향을 이론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 나아가, 실제 효과들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여러 집단들에 미치는 예상 효과는 별로 크지 않다.

그렇다면, “만약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 이민자 수용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과 손실을 입는 사람들이 모두 존재한다면,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손실을 입는 사람들’을 보상하고도 여전히 그 전보다 나아졌다고 느낄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만약 해외로부터의 이주가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총가처분소득(aggregate disposable income)을 증가시키면 “그렇다.”가 될 것이다.

이민자들은 소비자임과 동시에 생산자다. 따라서 이민자 유입이 그 나라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더 부유하게 만드는지 또는 더 가난하게 만드는지 여부는 ‘이민자들이 얼마만큼 소비하는가?’와 비교하여 ‘전체 생산에 얼마만큼을 추가하는가?’ 하는 상대적 크기에 좌우된다.

성인이 된 자녀들과 재결합(family reunification)하기 위하여 어떤 나라에 이민이 허용된 중·고령 이민자의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만약 그 이민자가 일을 하지 않고, 만약 그들이 자신들의 소비를 자녀 또는 내국인 납세자들에게 의존한다면, 분명히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1인당 총가처분소득은 하락한다.

그러나 만약 이민자가 도착 후 일을 한다면, 이윤극대화라는 사용자의 행태를 설명하는 모형들은 이민자들이 자신의 한계생산성을 초과하지 않는 임금을 지급 받을 것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만약 이민자가 자신의 소비를 자기의 근로소득에 의존한다면, 일을 하는 이민자들은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1인당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더욱이, 만약 이민자의 근로소득이 자신들이 이주한 나라에 추가시키는 생산물의 총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총가처분소득은 증

가할 것이다. 즉, 만약 노동력 공급의 변화가 이민자의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한계 수입생산을 상당히 낮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다면,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다면, 임금은 하락하고 산출량은 증가할 것이며, 추가된 산출량으로부터의 이윤은 아마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인 사용자들이 갖게 될 것이다.

3) 이민자 수용과 영역별 ‘사회적 배제’의 극복

이민자 수용을 통한 사회·경제적 편익-비용이 발생하는 영역은 연구자들마다 제각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민자는 개인으로 들어오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수자 집단(minority group)을 형성한다. “인종적·민족적·언어적·종교적·문화적 특성 때문에 그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다르게 구별되고 처우 받는 사람들”(Wirth, 1945)로 정의되는 소수자 집단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로 간주된다. 소수집단은 지배집단으로부터 차별적 취급을 받은 결과, 그 사회의 결속을 약화시키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 전체 사회에 비우호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그러한 차별적 처우 속에서 경제적·사회적·정치적 기회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은 경멸·미움·놀림·폭력의 대상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소외될 뿐 아니라 공간적으로 분리되며, 심지어는 공공정책 즉, 재산권리, 법의 보호, 투표권, 공공 서비스로부터 배제될지도 모른다. 그러한 사회생활의 참여로부터의 배제는 그 차별받는 집단들 스스로 열등하다는 인식을 갖게 만들고 또한 불평등한 대우에 대한 반항적인 태도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피차별 집단의 욕구 충족은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닌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극복의 관점에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사회는 장기실업과 저소득으로 인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개념으로 ‘사회적 배제’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 요체는 특정 사회집단의 빈곤은 경제적 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배제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다. 하층계급이 주류사회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시민으로서 활동할 수

없으며, 배제의 영역은 경제적 영역뿐 만이 아니라 다양한 경제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다의적 차원에서 파악해야 한다(Silver, 1994).

한 사회에서 사회적 배제가 발생하고 있는 영역은 경험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 한 예로 크로나워(Kronauer, 1998)는 하층계급의 사회적 배제가 발생하는 여섯 가지 영역을 제시하였다. 그 첫째는 ‘노동시장에서의 배제’(exclusion from the labor market)인데, 하층계급이 불안정한 위치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배제로서 다른 영역의 사회적 배제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둘째, ‘경제적 배제’(economic exclusion)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복지 수당에 의존한 생활을 영위하는 빈곤상태를 가리킨다. 셋째, ‘문화적 배제’(cultural exclusion)로, 하층계급이 형성하고 있는 문화가 주류문화에서 배제된 상태를 뜻한다. 넷째, ‘사회적 고립에 의한 배제’(exclusion by social isolation)인데, 사회적 관계의 질과 범위가 축소되는 것으로 개인적 고립과 동일한 고립에 처해 있는 동료들끼리의 차별적 교제를 의미한다. 다섯째, ‘공간적 배제’(spatial exclusion)이다. 하층계급의 거주지가 도시의 주변부에 집중하는 것으로, 그러한 공간적 격리는 사회적 접촉을 제한을 가져온다. 여섯째, ‘제도적 배제’(institutional exclusion)로, 개인이 교육·훈련 기관, 실직과 빈곤의 극복을 위한 관리기관, 공적·사적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상태를 뜻한다.

크로나워가 제시한 빈곤층의 사회적 배제가 발생하는 영역은 소수자 집단으로서 이민자의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배제’의 가장 핵심은 빈곤과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족 중 일부는 일반 빈곤층이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더 다양한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으므로, 몇 가지 추가 요소를 도입하면서 불필요한 요소는 과감히 삭제하는 게 필요하다.

이민자 수용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영역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이다. 노동시장에서 사회적 배제의 극복은 결혼이민자와 자녀들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데서 찾을 수 있고, 취업을 함으로써 경제적 배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극복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이민자가 열악한 대우를 받는 것은 언어 구사 능력의 제한, 또는 국내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경험 부족 등이 원

인으로 제기된다(United Nations, 2006: 97). 이민자가 노동시장 조건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면 생계비 확보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인종·민족·출신국 등의 요인에 따른 임금 차별 등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민자의 경제적 효과는 이민자들이 어떻게 일자리에 적응하는지의 문제(언어, 공식적 교육, 직업훈련 등)와 그 자녀들의 적응 과정에 달려 있다(Borjas, 1994). 결혼이민자라고 해서 일반적 이민자와 상황이 전혀 다를 게 없다.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 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다문화가족 스스로 우리 사회의 한 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통합은 부족한 노동력 자원의 충원을 통한 경제발전과 맞물리면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05).

다문화가족은 이민자 자국의 문화와 한국문화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존재이므로, 한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크게 하고 문화적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그러한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주류사회의 문화로부터 그들이 배제되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그러한 문화적 배제는 이민자 수용과 통합의 노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극복해야 한다.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민자들끼리의 자조(自助) 모임, 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문화가족 스스로 한국사회의 한 성원으로 인식하고 설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한 노력은 다문화가족을 한국사회의 한 성원으로 인정함으로써 사회 참여를 고취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다문화가족이 적응에 실패하여 “빈곤의 악순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죄에 연루되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면, 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은 게토(ghetto)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게토화를 막으려는 지역사회 수준의 집합적 노력, 즉 결혼이민자들끼리 또는 결혼이민자와 기존 한국인간의 사회적 접촉 기회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은 ‘사회적 공간으로부터 배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 될 것이다.

<표 3-1> 다문화가족 증가에 따른 편익과 비용

지원영역		내용	편익	비용
경제	노동시장	일자리 소득 기술혁신 산업구조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력 요소 투입에 의한 경제 성장 · 우수 기술을 가진 인재의 영입으로 경제 성장 · 노동력 풀의 증가(여러 문화에 걸친 전문가) · 지역고용의 안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투자 소홀 · 종족별 직종격리의 심화 · 내·외국인 노동자 간의 갈등 · 복지급여 의존해서 생활해야만 하는 빈곤층의 증가
	복지	복지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일거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간 복지관련시설의 재편 비용발생 · 복지비용 증가 · 질병유입으로 인한 의료비용 증가
사회		세계도시, 개도화, 사회적 격리에 따른 비용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지 또는 다문화중심지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 증가 · 다문화적 근거를 가진 인재 집단의 등장("다문화자녀의 이중언어의 사용은 글로벌 리더의 첫 걸음이다.") · 저숙련 노동의 안정적 노동력 풀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결혼가정의 증가에 따른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보호문제 발생 · 고립극복 비용 증가 · 외국인 범죄 증가 · 새로운 사회 하위계층화 또는 빈곤문화에 체화된 하위계층화 현상발생 · 집단 따돌림 및 왕따 · 자녀들의 성적문제 및 학습부진 · 지원비용 증가
문화		문화다양성, 문화적 배제 또는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의 다양한 현상 대두 · 문화적 다윈의식 증대 · 한국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 · 세계적 보편성과 특수성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질적 문화의 혼재에 따른 문화갈등 현상발생 · 민족우월감, 국수주의적 경향, 내국인의 인종차별 의식 심화 · 언어의 장벽 해소를 위한 사회적 비용 증가 · 이중문화로 인한 정체성 혼란
정치		정치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민족 정당 · 출신국별 투표 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민자 조직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 · 이민자 집단 폭동 발생 가능 · 정쟁의 여지 증가
연쇄이민		가족 이민, 이민의 장기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쇄이주로 인해 신규 이민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 · 한국어에 능숙하고 숙련된 안정적인 인적자원 공급 ·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교류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이민자 선별기준이 작동하기 어려움(이민의 양과 질 수준 통제 불가능) · 정착이민자의 증가로 이주 노동자 교체순환에 기반을 둔 고용허가제의 붕괴 가능성 · 정착이민자로 전환 · 혼잡비용

<표 3-2> 다문화가족 지원 영역별 주요 비용 항목

지원영역	내용	세부영역	
경제	노동시장	취업알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능력향상 교육(기술지원, 직장예절, 면접기술 등) · 취업알선 및 상담 · 특기개발 프로그램
		고용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능력 개발(직업훈련과 기능교육) · 전문기술에 맞는 언어습득 · 실업자 지원
	복지	의료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 및 공중보건 · 건강관리
		출산과 보육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지원 · 보육지원금
노인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지원 · 돌봄 서비스 지원 	
	사회보장	·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지원	
사회	사회적 고립, 공간적 격리 극복	한국인과의 유대	· 한국생활 적응 지원(고민, 갈등, 정신건강, 학대 및 가정폭력 등)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비지원(장학금) · 방과 후 학습(학습 부진 해결) · 아동 및 청소년 상담
		주택해결	· 임대보증금 및 공공주택금리 감소
문화	문화 향유	한국문화 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학습 · 한국생활 및 문화교육 · 통역서비스
		다문화현상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시설 신설 및 서비스 제공(주민자치센터, 문화 교류 프로그램 실시 등) · 다문화축제 지원
정치	정치 참여	생활정치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참여를 위한 상담 · 이민단체들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 · 법률 교육(이민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는 예방의 차원에서 법률적인 측면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선거 참여	· 선거공약의 통역서비스 제공
연쇄이민	가족이민, 이민의 장기 지속	가족 이민	· 세대별 통합대책비용(자녀 교육 및 성인 가족구성원을 위한 훈련)
		이민의 장기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지원 · 정착 지원

마지막으로 공적·사적 서비스로부터 배제 극복은 다문화가족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의 향상에서 단초를 찾을 수 있다. 크로나워(Kronauer, 1998)가 제시한 ‘제도적 배제’ 극복이란 취업 교육 또는 그와 관련된 공적·사적 서비스에 접근함으로써 해결되는데, 한국의 다문화가족은 전반적 사회복지제도 적용의 차별을 해소하는 접근성을 높이는 데서 찾아야 한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는 것을 통해 사회통합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결국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사정을 살펴보면, 부유한 나라들은 이민 수용을 통해 인적자본을 확보하고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사회·문화적 다양성과 질을 고취하는 효과를 도모한다. 더욱이 저출산·고령화의 해결책의 하나로 이민자 수용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한 긍정적 효과가 이민 수용에 의하여 곧 바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민을 받아들이는 나라는 이민자들의 건강관리, 다양한 주택해결책, 언어습득 프로그램, 안정고용 등을 위한 효과적인 이민자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이민자의 자녀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05). 이민자 수용이 인구 감소 해결로 직결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출산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예컨대 ‘임신한 여성들에 대한 유인체계’ 등의 정책 시행 대상에서 결혼이민자들이 제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영역을 <표 3-1>과 <표 3-2>에 제시한 것처럼 ① 노동시장, ② 복지, ③ 사회적 고립, 공간적 격리 극복, ④ 문화 향유, ⑤ 정치 참여, ⑥ 연쇄이민(가족이민, 이민의 장기 지속) 여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영역에서 편익과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여섯 가지 영역의 상대적 중요성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고, 각 영역 내부에서 편익과 비용이 동시에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델파이조사를 위한 질문 문항을 개발하였다.

2. 미래연구방법: 델파이 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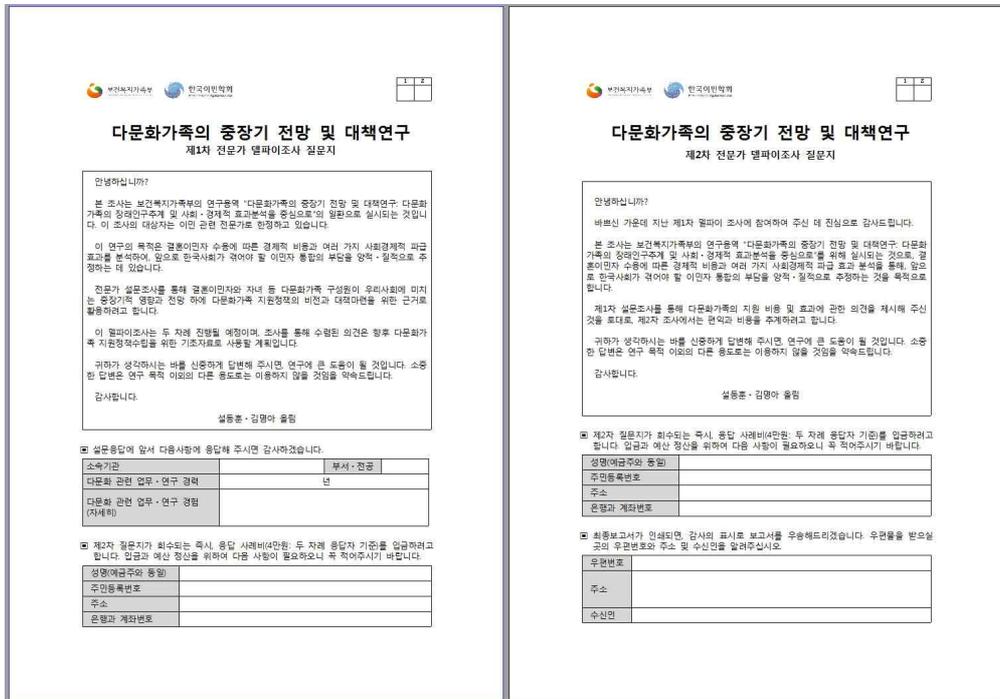
1) 델파이 기법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은 예측하고자 하는 문제에 관하여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분석하고 분류·정리하는 일련의 절차다. 델파이 기법은, 연구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을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정보를 객관화할 수 있고 정확한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예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추정을 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델파이 예측 방법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이종성, 2001: 26-27). 그것들은 미래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이므로 보완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합의 델파이’(consensus Delphi)는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는 문제 상황과 잘 정의된 문제 상황에 적합한 방법으로서, 다원화 되어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 통합이 목적이기 때문에 동일한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집단의 합의가 중요하다. 둘째는 ‘규범형 델파이’다. 그것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하여 가능한 한 광범위한 전망과 종합적인 관점을 구하기 위해 대안들을 수집한다. 의견의 합의와 수렴보다는 대안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의견 수집을 위해 유사한 이해관계나 전문성을 가진 패널이 필요하다. 셋째, ‘정책 델파이’ 접근은 다양한 정책 대안이나 자원분배 대안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 주장을 수집하려고 하는 방법이다. 그러한 예측방법들은 미래에 대한 관점을 마련하기 위해 어느 한 접근 방법만 배타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병행하여 사용한다.

델파이 과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지필(紙筆)형 질문지를 활용하는 ‘표준 델파이’(standard Delphi) 방법인데, 가장 일반적 형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 ① 연구자들이 질문지를 개발하여, 그것을 다수의 응답자들에게 발송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② 회수된 질문지를 정리하여, 제2차 질문지를 개발하여 응답자들에게 다시 보내 조사를 진행한다. ③ 제2차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자신의 견해를 재평가할 기회를 가진다. ④ 연구자와 여러 응답자들의 소통 과정을 통해

연구결과를 산출한다. 그 과정은 회의를 거쳐 투표를 통해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을 재현한 것이다. 둘째는 ‘실시간 델파이’(real-time Delphi) 방법인데,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아 질문지 발송과 회수를 반복하고, 그 결과를 정리·통합하여 편집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 델파이’ 방법을 시행하되, 이-메일을 통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그림 3-2] 두 차례에 걸친 전문가 델파이조사 질문지 표지

2) ‘이민 전문가’ 델파이 조사 절차

2009년 10월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한국이민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인구학회의 세 학회 회원으로 이민연구 경력이 있거나 현장·정책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였다. 제1차 조사에는 21명이 응답하였다. 제2차 델

파이 조사 대상자는 1차 조사 응답자들 중 2차 델파이조사에 응답을 한 16명과 표본 대체 응답자 6명을 표집대상으로 하였다. [그림 3-2]은 두 차례에 걸친 조사에 사용한 질문지 표지다.

델파이 질문지는 다문화가족 증가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포함한다. 제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이민자 수용으로 인한 편익-비용의 항목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핵심이었다(부록 2). ① 노동시장, ② 복지, ③ 사회적 고립, 공간적 격리 극복, ④ 문화 향유, ⑤ 정치 참여, ⑥ 연쇄이민(가족이민, 이민의 장기 지속)의 영역에서 이민자 수용으로 인한 편익과 비용의 내용을 기술하라고 요구하였다. 응답자들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을 돕기 위해 <표 3-1>과 <표 3-2>를 참고자료로 제공하였다. [그림 3-3]은 제1차 질문지의 일부를 보여준다.

I. 다문화가족 증가 효과

[문 3] 다문화가족 증가 효과
 □ 다문화가족의 증가 이후 어느 분야에서 많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든 의견을 기술해 주십시오.

• 의견란:

[문 4] 긍정적 효과
 □ 다문화가족의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의 분석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각 효과발생 영역별로 기술해주시요.

지칭영역	내용	긍정적 효과
경제	노동시장	
	복지	
사회	사회적 고립/공간적 격리 극복	
문화	문화 향유	
정치	정치 참여	
이민의 연쇄 이후	가족 이민	
	이민의 장기 지속	

[문 5] 부정적 효과
 □ 다문화가족의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의 분석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각 효과발생 영역별로 기술해주시요.

지칭영역	내용	부정적 효과
경제	노동시장	
	복지	
사회	사회적 고립/공간적 격리 극복	
문화	문화 향유	
정치	정치 참여	
이민의 연쇄 이후	가족 이민	
	이민의 장기 지속	

[문 6] 기타의견
 • 의견란:

[그림 3-3] 제1차 전문가 델파이조사 문항의 보기

I. 결혼이민자 수용의 사회·경제적 편익과 비용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2009년 5월 1일 기준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 수는 167,090명, 그 자녀의 수는 88,485명, 도합 255,575명입니다. 저희들이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와 그 자녀의 인구를 추가한 결과, 2020년에는 대략 2009년 인구의 두 배 남짓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한 상황을 알고자해서 다음 질문에 응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 1) 다문화가족 연구가 두 배로 증가한 2020년의 상황에서 결혼이민자 수용의 '총편익'과 '총비용'을 비교해보면, 어떠한 것으로 평가하십니까?

① 비용이 훨씬 크다 ② 비용이 약간 큰 편이다 ③ 비용-편익이 같다
 ④ 편익이 약간 큰 편이다 ⑤ 편익이 훨씬 크다

문 2) 제1차 조사 결과, 다음 각 영역에서의 편익과 비용으로 지적된 것을 정리하였습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다음 각 영역에서 2020년 결혼이민자 수용의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보면, 어떠한 것으로 평가하십니까?

2.1. 2020년 '노동시장'에서의 편익과 비용 비교?

편익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계속된 저출 노동력 보완 생산성향 인구의 양적 증가 문화적 다양성을 가진 인력 증가 우수 기술 인력 영입 노동력 요소 투입을 통한 경제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 일자리 감소 계속된 저출 노동력 대체 노동시장의 질적 저하 이민자 저출 격차의 심화 군포 발급률 증가 기술부가 소홀

① 비용이 훨씬 크다 ② 비용이 약간 큰 편이다 ③ 비용-편익이 같다
 ④ 편익이 약간 큰 편이다 ⑤ 편익이 훨씬 크다

2.2. 2020년 '사회복지'에서의 편익과 비용 비교?

편익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 부양돌봄 부담 국민의 삶의 기회 증가 복지 서비스의 다양화 다문화권 관련 복지 서비스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급여 의존 빈곤층 확대 부양돌봄 부담 이민자 사회통합 서비스 비용 증가 새로운 복지 대상 집단 증가 결혼이민자의 취약계층화

① 비용이 훨씬 크다 ② 비용이 약간 큰 편이다 ③ 비용-편익이 같다
 ④ 편익이 약간 큰 편이다 ⑤ 편익이 훨씬 크다

2.3. 2020년 '사회적 고립, 공간적 격차 극복'에서의 편익과 비용 비교?

편익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지구적 문화의 형성 문화간 소통 기회 증대 다문화 기반을 가진 인력 증가 선거투표의 기반 제공 사회 다양성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용 개도화·빈곤·범죄·다문화지역 이민자의 사회적 격차와 고립 소외된 취약계층 증가 문화적 혼란 가능 다양한 사회갈등 소원

① 비용이 훨씬 크다 ② 비용이 약간 큰 편이다 ③ 비용-편익이 같다
 ④ 편익이 약간 큰 편이다 ⑤ 편익이 훨씬 크다

2.4. 2020년 '문화'에서의 편익과 비용 비교?

편익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문화 창조 기회 증대 문화의 다양주의 증진 개방적 민족주의의 형성 다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 문화간 네트워크의 핵심인물 문화의 다양성과 사회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용 이민자의 문화 적응 문제 단일 문화권 복고주의 등장 폐쇄적 민족주의 또는 국수주의 이민자의 폐쇄적 문화공동체 정체성 혼란을 겪는 주변인 차별과 사회갈등

① 비용이 훨씬 크다 ② 비용이 약간 큰 편이다 ③ 비용-편익이 같다
 ④ 편익이 약간 큰 편이다 ⑤ 편익이 훨씬 크다

2.5. 2020년 '정치'에서의 편익과 비용 비교?

편익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의 권익의 참여 민주주의 소수자 집단의 정치 참여 지역 단위 정치의 민주주의 실현 다양한 정치적 요구와 민주주의 이민자의 정치참여와 사회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용 정치적 무관심 집단 증가 소수민족의 정치세력화의 실패 소수민족의 사회적 격차 심화 사회적 분열과 갈등의 심화 이민자의 집합행동: 지원, 폭동

① 비용이 훨씬 크다 ② 비용이 약간 큰 편이다 ③ 비용-편익이 같다
 ④ 편익이 약간 큰 편이다 ⑤ 편익이 훨씬 크다

2.6. 2020년 '가족이민과 이민의 장기적'에서의 편익과 비용 비교?

편익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이민을 통한 인구 증가 신규 이민자 안정적 순환 인구구조와 문화를 이계하는 인력 가족·친족·지역 문제에 형성 정치 가능한 외국인력 총합 외국과 교류·기술·투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용 가족이민의 사회적 관리 비용 증대 이민자 선별의 어려움 가능 이질적 문화 배경을 가진 인력 배타적·폐쇄적 이민자 집단 형성 교역·순환 중심 외국인력에도 불구 핵심층을 또는 지원 유출 증대

① 비용이 훨씬 크다 ② 비용이 약간 큰 편이다 ③ 비용-편익이 같다
 ④ 편익이 약간 큰 편이다 ⑤ 편익이 훨씬 크다

[그림 3-4] 제2차 전문가 델파이조사 문항의 보기

제1차 조사 결과 응답 내용을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부록 3). 각 영역별로 응답자들이 편익과 비용으로 제시한 응답을 정리하여 제2차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제1차 조사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합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제2차 조사는 그들의 의견을 정확히 측정(measurement)하는 데 주력하였다. 각 질문별 선택지로 리커트(Likert) 척도를 제시하여 고르게 하거나, 수치를 직접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민자 수용으로 인한 편익과 비용의 비교, 여섯 개 영역의 상대적 중요성 평가, 비용과 편익의 크기 측정, 2020년 이민자 통합 지원 비용의 증가율 등을 측정하였다(부록 4). [그림 3-4]는 제2차 질문지의 내용을 보여준다.

제2차 델파이 조사에는 제1차 조사에 응한 21명 중 16명이 응답하였고, 제1차 조사 대상자였으나 응답하지 않았던 6명이 참가하였다. 그들의 응답은 수치로 부호화(coding)하여 통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3. 델파이 조사 설계

1) 영역별 편익과 비용의 측정

제1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 나타난 이민자 증가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효과들에 대한 의견을 통합·재분류하여 긍정적 효과를 편익으로, 부정적 효과를 비용으로 정리하여 제2차 델파이 조사 질문 문항을 개발하였다.

가. 노동시장

다문화가족의 증가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익의 내용으로는 <표 3-3>에 제시되어 있듯이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노동력 요소의 투입에 의한 저숙련 직종 노동력의 보완, 생산 가능한 연령인구의 증가, 문화적 다양성을 가진 인력의 증가와 우수한 기술을 가진 노동력 유입, 그러한 노동력 요소 투입을 통한 경제 성장을 꼽았다. 다문화가족 증대에 따른 비용의 측면에서는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기존 일자리의 잠식과 저숙련 직종 노동력 대체, 노동인력의 질적 저하와 이민자 직종 격리의 심화, 근로 빈곤층의 증가, 기술투자의 소홀 등이 주로 지적되었다.

<표 3-3> 노동시장 영역에서의 편익과 비용

편익	비용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존 일자리 잠식
저숙련 직종 노동력 보완	저숙련 직종 노동력 대체
생산연령 인구의 양적 증가	노동인력의 질적 저하
문화적 다양성을 가진 인력 증가	이민자 직종 격리의 심화
우수 기술 인재 영입	근로 빈곤층 증가
노동력 요소 투입을 통한 경제 성장	기술투자 소홀

나. 사회복지

사회복지 측면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표 3-4>에 제시한 바와 같이, 다문화가족의 증대로 인한 편익의 발생 내용으로는 일자리 창출로 인한 경

제의 활성화와 부양능력의 증대, 국민의 삶의 기회가 증대될 뿐만 아니라 복지 서비스의 영역도 다양화되고 다문화 관련 서비스도 확대된다는 것이다. 반면, 다문화가족의 증대로 인해 복지급여에 의존하는 빈곤층의 증대와 부양부담의 가중,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서비스 비용의 증가와 새로운 복지 대상 집단의 증가, 그리고 결혼이민자가 취약 계층화가 비용의 측면으로 지적되었다.

<표 3-4>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편익과 비용

편익	비용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	복지급여 의존 빈곤층 증대
부양능력 증대	부양부담 가중
국민의 삶의 기회 증가	이민자 사회통합 서비스 비용 증가
복지 서비스의 다양화	새로운 복지 대상 집단 증가
다문화 관련 복지 서비스의 확대	결혼이민자의 취약계층화

다. 사회적 고립·공간적 격리 극복

사회적 고립과 공간적 격리의 극복을 통한 편익의 내용은 <표 3-5>에 제시되어 있다. 전 지구적 공간의 형성과 문화간 소통 기회의 증대, 다문화 기반을 가진 인재들의 증가, 전 지구화의 기반 제공 및 사회의 다양성이 증대하는 현상이 지적되었다. 비용의 측면에서는 빈곤, 범죄가 발생하는 지역의 집중화로 인한 계도화 현상과 그로 인한 이민자의 사회적 격리와 고립의 증가, 소외된 취약 계층의 증가 및 문화적 혼란이 가중되고 결국에는 다양한 사회갈등이 출현할 수밖에 없음이 주로 지적되었다.

<표 3-5> 사회적 고립·공간적 격리 극복 영역에서의 편익과 비용

편익	비용
전지구적 공간의 형성	계도화: 빈곤, 범죄 다발지역
문화간 소통 기회 증대	이민자의 사회적 격리와 고립
다문화 기반을 가진 인재 증가	소외된 취약 계층 증가
전지구화의 기반 제공	문화적 혼란 가중
사회 다양성 증대	다양한 사회갈등 출현

라. 문화

<표 3-6>은 다문화가족의 증대에 따른 문화의 다양성이나 문화적 갈등과 관련된 의견들의 종합이다. 편익의 측면에서는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의 증대와 문화적 다원주의의 등장, 개방적 민족주의와 타문화에 대한 관심의 증대, 그리고 문화 간 네트워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핵심 인물의 등장과 사회적 통합의 등장 등을 지적했다. 반면에 부정적 효과로 이민자의 문화 향유 배제, 단일 문화적 복고주의의 등장, 폐쇄적 민족주의 또는 국수주의, 이민자의 폐쇄적 문화공동체, 정체성 혼란을 겪는 주변인들의 등장, 차별과 사회갈등에서 비용이 발생할 것임이 드러났다.

<표 3-6> 문화 영역에서의 편익과 비용

편익	비용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 증대	이민자의 문화 향유 배제
문화적 다원주의 등장	단일 문화적 복고주의 등장
개방적 민족주의	폐쇄적 민족주의 또는 국수주의
타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	이민자의 폐쇄적 문화공동체
문화간 네트워크의 핵심인물	정체성 혼란을 겪는 주변인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통합	차별과 사회갈등

<표 3-7> 정치 영역에서의 편익과 비용

편익	비용
주민의 적극적 참여 민주주의	정치적 무관심 집단 증가
소수자 집단의 정치 참여	소수민족의 정치세력화와 갈등
지역 단위 정치적 민주주의 실현	소수민족의 사회적 배제 심화
다양한 정치적 요구와 민주주의	사회적 분열과 갈등의 심화
이민자의 정치참여와 사회통합	이민자의 집합행동: 시위, 폭동

마. 정치

<표 3-7>을 보면, 정치참여와 관련된 부분에서 비용의 측면으로는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집단이 증가할 것이며, 소수민족의 정치세력화와 갈등 또는 소수 민족의 사회적 배제, 사회적 분열과 갈등의 심화 그리고 이민자 집단의 시위, 폭동 등 집

합행동의 위험성이 지적되었다. 그렇지만 편익의 측면에서 보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민주주의의 확산과 소수자 집단의 정치 참여, 지역적 차원에서의 정치적 민주주의 실현 가능, 다양한 정치적 요구의 수용과 민주주의의 확산, 이민자의 정치 참여와 사회통합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바. 연쇄이민

<표 3-8>은 결혼이민자들의 가족 이민과 이민의 장기 지속에 따른 편익과 비용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비용의 측면에서는 가족이민에 따른 사회적 관리 비용이 증대할 것이며, 이민자 선별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고, 이질적 문화의 배경을 가진 집단들의 형성, ‘교체·순환원칙’에 기초한 고용허가제 등 이민자제도의 붕괴 위험, 해외송금이나 국내 자원 유출 증대 등의 내용이 지적되었다. 반면에 가족이민과 이민의 장기적 지속은 인구의 증가에 도움을 줄 것이고 신규 이민자의 안정적 충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편익을 강조한 응답자도 있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인력의 증가와 정착 가능한 외국 인력의 충원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점, 가족·친족·지역 공동체의 형성과 외국과 교류 지속 및 확대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었다.

<표 3-8> 연쇄이민 영역에서의 편익과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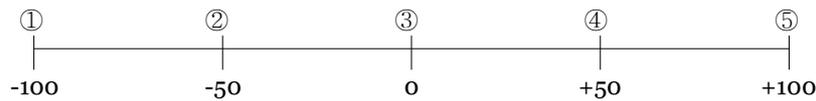
편익	비용
가족이민을 통한 인구 증가	가족이민의 사회적 관리 비용 증대
신규 이민자 안정적 충원	이민자 선별의 어려움 가중
한국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인력	이질적 문화 배경을 가진 인력
가족·친족·지역 공동체 형성	배타적·폐쇄적 이민자 집단 형성
정착 가능한 외국인력 충원	교체·순환원칙 외국인력제도 붕괴
외국과 교류 지속 및 확대	해외송금 또는 자원 유출 증대

2) 영역별 편익과 비용의 점수 부여

이상과 같이 분류된 편익과 비용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비교

평가하였다. 첫째, 비용과 편익에 대한 전체적인 비교평가(총편익과 총비용)와 각 영역별(노동시장, 사회복지, 사회적 고립·공간적 격리 극복, 문화, 정치, 연쇄이민)로 이루어진 편익과 비용을 비교 평가하였다. 둘째, 전체비교평가와 영역별 비교평가를 통해 순효과(net effect)를 파악하였다. 즉, 총편익과 총비용의 측면에서 영역별 편익-비용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총편익과 총비용 및 각 영역별 편익과 비용의 크기를 재기 위한 측정 도구는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그 항목은 ① ‘비용이 훨씬 크다’ ② ‘비용이 약간 큰 편이다’ ③ ‘비용과 편익이 같다’ ④ ‘편익이 약간 큰 편이다’ ⑤ ‘편익이 훨씬 크다’이다. 그 척도는 평균값을 산출하기 위하여, [그림 3-5]에 제시한 방식, 즉 ‘비용이 훨씬 크다’는 -100점, ‘비용이 약간 큰 편이다’는 -50점, ‘비용과 편익이 같다’는 0점, ‘편익이 약간 큰 편이다’는 +50점, ‘편익이 훨씬 크다’는 +100점의 값을 주었다.



[그림 3-5] 편익-비용의 크기 평정 척도

3) 영역별 편익과 비용의 상대적 크기 평가

편익과 비용의 측면에서 각 영역의 상대적 크기를 측정하였다. 첫째, 제1차 조사에서 많은 응답자들이 노동시장에서의 편익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편익’을 기준(100)으로 나머지 영역들의 편익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평가하도록 하였다. 둘째, 제1차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많이 지적해 준 ‘사회복지 비용’을 기준 100으로 두고 나머지 영역들의 비용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평가하도록 하였다. 셋째, ‘노동시장에서의 편익’과 ‘사회복지 비용’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평가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에서의 편익’의 크기를 기준(100)으로 하고 ‘사회복지 비

용'의 크기를 평정(評定)하도록 하였다.

선택지로는 ① '25 미만' ② '25~49' ③ '50~99' ④ '100' ⑤ '101~149' ⑥ '150 이상'의 리커트 척도를 제시하였다. 상한선을 150으로 한 것은 기준으로 삼은 두 개의 항목이 편익-비용의 각 측면에서 첫째 또는 둘째에 달하는 것이므로, 1.5배 정도 이상의 편익 또는 비용은 지나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3-6] 편익-비용의 측면에서 각 영역의 크기 평정 척도

예컨대, '노동시장 편익'과 '사회복지 비용' 영역을 기준으로 다른 영역에서 ④를 응답했을 경우에는 '100-100=0'으로 동일하게 여긴다. ④를 제외한 응답에 대해서는 '기준 100-범주평균'을 통해 상대적 크기를 알아 볼 수 있다. 평균을 산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각의 값을 [그림 3-6]에 제시한 방식으로 재부호화(recode)하였다. 여기서 기준영역보다 상대적 크기가 낮은 경우에는 편익과 비용이 적게 발생하고, 상대적 크기가 높은 경우에는 편익과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셋째 단계에서 측정한 '노동시장의 편익'과 '사회복지비용'의 비교·평정 값을 이용하여 편익의 각 영역과 비용의 각 영역의 값을 표준화할 수 있다. 편익과 비용 값의 단위를 표준화한 다음에는 각 영역별 편익과 비용의 차이를 계산할 수 있다. 그 값의 크기는 [그림 3-5]의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한 값과 비교함으로써 '측정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다.

4) 총비용 중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비용의 크기 산출

결혼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총편익과 총비용은 화폐 단위로 환산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이 총비용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측정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앞에서 총비용의 주요 항목들을 하나씩 점검하였고, 또 정부 예산의 주요 쓰임새와 금액(2009년 511억 원)을 제시하였다. 응답자들은 1% 이상 100% 이하의 점수를 기재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평균을 산출하여, 그 511억 원에 그 역수를 곱하면, 2009년 기준 이민자 수용의 총비용이 산출된다. 그 값을 이용하면, 각 영역별 비용과 편익도 원 단위 화폐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5) 2020년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1인당 지원비용의 증가율 평정

‘다문화가족 지원비용’을 2009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부처별 예산을 기준으로 파악하고, 결혼이민자와 자녀의 수가 2009년의 2.45배 수준이 되는 2020년의 다문화가족 지원비용을 계산하였다. ‘2009년 다문화가족 1인당 지원비용’을 100이라고 가정하고, 2020년 다문화가족 1인당 지원 비용의 상대적 크기를 평정(評定)하라고 요구하였다. 선택지로는 ① ‘25 미만’ ② ‘25~49’ ③ ‘50~99’ ④ ‘100’ ⑤ ‘101~149’ ⑥ ‘150~199’ ⑦ ‘200~299’ ⑧ ‘300~499’ ⑨ ‘500 이상’의 리커트 척도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평균을 계산할 때에는 각 값의 중간값, 즉 12.5, 37.5, 75, 100, 125, 175, 250, 400, 500의 값을 부여하였다. 2009년 다문화가족 1인당 지원비용을 기준으로 2020년 다문화가족 1인당 지원 비용의 영역에서 ④를 응답했을 경우에는 ‘100-100=0’으로 동일하게 여긴다. 그렇지만 총 지원비용은 2009년의 2.45배 수준으로 는다. 인구 추계의 결과 2020년 인구는 2.45배 수준이므로 1인당 지원비용에 2.45를 곱해야 전체 지원비용이 계산되기 때문이다.

6) 2020년 정부의 예산 지출 구성비율 평정

다문화가족 인구가 2.45배로 수준으로 늘어난 2020년의 상황에서, 정부의 예산 지출내역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것을 위해, 2009년의

<표 3-9> 2009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부처별 예산 재분류

(단위 : 백만 원, %)

영역	부처	사업명	사업별 규모	총예산	비율	
한국어 또는 교육 지원	복지부	○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	21,456	31,785	62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관리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제공				
		-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언어 발달 지원			
	교과부	○ 다문화가족자녀 교육 지원 사업	800			
		○ 근로장학금 지원	2,200			
		○ 시도교육청 맞춤형 교육 지원	3,500			
	행안부	○ 다문화정착을 위한 지도자 교육	928			
		○ 취업안내 교육	557			
		○ 외국인주민 생활책자 제작	216			
		○ 지자체 공무원 순회교육	26			
	문화부	○ 다문화사회의 한국어교육 진흥	580			
		○ 다문화가족 자녀대상 한국어방문학습교재개발	500			
		○ 한국어교육 다각화(국내외 보급)	865			
		○ 다문화교육 및 공연 프로그램 운영	157			
		- 중앙박물관 다문화 교육				
		- 국립어린이 민속박물관 다문화교육				
	- 국악원 공연(아시아, 우리는 하나)					
	이민자·가족 지원	복지부	○ 다문화가족지원	3,164	11,962	24
○ 국제결혼중개업 및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281			
법무부		○ 외국인 사회통합 지원	2,461			
행안부		○ 결혼이민자 친정부모 초청격려	510			
문화부		○ 이주민 문화적응 및 교류지원	1,420			
농식품부		○ 이주 여성농업인 지원	426			
여성부		○ 이주여성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	3,500			
		-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예방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시스템 구축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200		
다문화 환경 조성사업 및 기타	복지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4,844	6,136	12	
		○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생활안정지원	180			
	문화부	○ 다문화도서관 조성 및 프로그램지원	250			
		- 다문화도서관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 「도서관 책꾸러미」 돌려보기				
		- 다문화체험 전시				
		○ 행복한 책읽기 사업(독서진흥콘텐츠 개발)	50			
		○ 다문화사회환경 조성(교육홍보확대)	800			
사회통합이수 제 관련 사업	법무부	○ 사회통합이수제	1,200	1,200	2	

예산 511억 원의 내역을 ① 한국어 또는 교육 지원(62%), ② 이민자·가족 지원(24%), ③ 다문화 환경 조성사업 및 기타(12%), ④ 사회통합이수제 관련 사업(2%)으로 재분류하여 제시하고(표 3-9 참조), 응답자들에게 2020년의 구성비율을 평정해달라고 요구하였다. 2020년 지원예산 총액에 각 항목별 구성비율을 곱하면, 항목별 예산액을 계산할 수 있다.

4. 비용-편익 분석 결과

1) 결혼이민자 수용의 사회·경제적 편익과 비용

<표 3-10>은 2020년 결혼이민자의 편익과 비용을 비교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편익이 약간 큰 편이다’라는 평가가 50.0%로 가장 높았고, ‘비용이 약간 큰 편이다’는 27.3%, ‘편익과 비용이 같다’와 ‘편익이 훨씬 크다’가 각각 9.1%, ‘비용이 훨씬 크다’ 4.5%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볼 때, 응답자들은 2020년의 결혼이민자 수용의 총편익과 총비용의 비교에서 편익이 약간 클 것이라고 응답했다.

<표 3-10> 각 영역별 편익과 비용의 크기 비교, 2020년

	(단위: %; N=22)						
	전체	노동시장	사회복지	고립·격리	문화	정치	연쇄이민
비용이 훨씬 크다(-100)	4.5	0.0	31.8	4.5	0.0	4.5	4.5
비용이 약간 큰 편이다(-50)	27.3	22.7	36.4	45.5	9.1	59.1	22.7
비용-편익이 같다(0)	9.1	13.6	4.5	18.2	22.7	4.5	18.2
편익이 약간 큰 편이다(50)	50.0	45.5	22.7	27.3	45.5	31.8	45.5
편익이 훨씬 크다(100)	9.1	18.2	4.5	4.5	22.7	0.0	9.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15.9	29.5	-34.1	-9.1	40.9	-18.2	15.9
표준편차	56.5	52.7	64.3	52.6	45.3	50.1	54.3

각 영역별 편익과 비용의 크기를 비교 평가해 보면, 영역별로 다양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노동시장 영역에서는 ‘편익이 약간 큰 편이다’가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비용이 약간 큰 편이다’는 22.7%, ‘편익이 훨씬 크다’ 18.2%, ‘편익과 비용이 같다’가 13.6%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비용이 약간 큰 편이다’가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비용이 훨씬 크다’가 31.8%, ‘편익이 약간 큰 편이다’가 22.7%, ‘편익과 비용이 같다’와 ‘편익이 훨씬 큰 편이다’가 각각 4.5%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고립·공간적 격리극복의 영역에서는 ‘비용이 약간 큰 편이다’가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편익이 약간 큰 편이다’ 27.3%, ‘편익과 비용이 같다’ 18.2%, ‘비용이 훨씬 큰 편이다’와 ‘편익이 훨씬 크다’가 각각 4.5%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 영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의견은 ‘편익이 약간 큰 편이다’(45.4%)였으며, ‘편익과 비용이 같다’와 ‘편익이 훨씬 큰 편이다’가 각각 22.7%, ‘비용이 약간 큰 편이다’가 9.1%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치 영역에서는 ‘비용이 약간 큰 편이다’가 59.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순으로는 ‘편익이 약간 큰 편이다’ 31.8%, ‘비용이 약간 큰 편이다’와 ‘편익이 비용이 같다’는 의견이 각각 4.5%로 나타났다. 연쇄이민 영역에서는 ‘편익이 약간 큰 편이다’가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비용이 약간 큰 편이다’가 22.7%, ‘편익과 비용이 같다’가 18.2%, ‘편익이 훨씬 큰 편이다’가 9.1%, ‘비용이 훨씬 큰 편이다’가 4.5%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결혼이민자 수용에 따른 효과에서 편익이 약간 클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영역별로는 노동시장 영역과 문화영역, 연쇄이민의 영역에서는 편익이 약간 클 것이라는 의견이 다른 의견들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사회복지 영역과 사회적 고립과 공간적 고립극복의 영역과 정치 영역에서는 비용이 약간 클 것이라는 의견들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편익과 비용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평균점수를 제시했다. <표 3-10>에 제시되어 있듯이 비용이 훨씬 클 경우는 -100점, 비용이 약간 클 경우는 -50점, 편익과 비용이 같을 경우에는 0점, 편익이 약간 클 경우에는 +50점, 편익이 훨씬 클 경우에는 -100점의 값을 부여하여 평균을 계산하였다. 전체 평균에서

는 총편익과 총비용 간에 15.9 만큼의 차이가 나타났다. 각 세부영역별로는 문화 영역 40.9, 노동시장 영역 29.5, 연쇄이민 영역 15.9 만큼 편익과 비용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회복지 영역은 -34.1, 정치 영역은 -18.2, 사회적 고립과 공간적 격리 영역은 -9.1만큼의 차이가 발생했다. 전체적 측면에서는 2020년 결혼이민자 증대에 따른 효과에서 비용보다는 편익이 약간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세부영역별로는 문화, 노동시장, 연쇄이민의 영역에서는 편익의 효과가 크고, 사회복지, 정치, 사회적 고립과 공간적 격리의 영역에서는 비용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임을 알 수 있다.

2) 결혼이민자의 수용에 따른 편익과 비용의 상대적 크기

<표 3-11>은 결혼이민자 수용에 따른 편익과 비용에서 각 영역의 상대적 크기를 응답자 분포로 나타낸 것이다.

먼저, 편익에서 노동시장 영역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을 제외한 다른 영역의 분포를 본다면, 사회복지영역에서는 '50~99'가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5~59'(22.7%), '25미만'(13.6%)과 '100'(13.6%), 그리고 '150 이상'(4.5%)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고립과 공간적 격리 극복의 영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크기는 '25~49'와 '50~99'로 각각 36.4%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101~149'(13.6%), '25미만'과 '100', '150이상'이 각각 4.5%로 가장 낮았다. 문화영역에서는 '100'과 '50~99'가 각각 2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1~149'가 22.7%, '150이상'이 18.2%, '25~49'가 4.5%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치영역에서는 '50~99'가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5미만'과 '50~99'가 각 18.2%, '100'(9.1%), '101~149'(4.5%)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쇄이민영역에서는 '50~99'가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1~149'(22.7%), '100'(18.2%), '25~49'(13.6%), '25미만'(9.1%), '150이상'(4.5%)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용에서는 사회복지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영역을 제외한 다른 영역을 본다면, 노동시장 영역에서는 '50~99'가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났

고, '25~49'와 '101~149'가 각각 18.2%, '25미만'이 13.6%, '100'과 '150이상'이 각각 9.1%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고립과 공간적 격리의 극복 영역에서는 '50~99'가 54.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0'(22.7%), '101~149'(13.6%), '20미만'과 '150이상'이 각 4.5%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영역에서는 '50~99'가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25~49'가 22.7%, '25미만'과 '150이상'이 각각 9.1%, '100'이 4.5%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치영역에서는 '50~99'가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0'(27.3%), '25~49'(13.6%), '150이상'(9.1%), '25미만'(4.5%)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쇄이민영역에서는 '50~99'가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1~149'가 18.2%, '25미만'과 '25~49'가 각 9.1%, '100'이 13.6%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용의 측면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50~99'의 크기가 가장 높다.

<표 3-11> 편익과 비용에서 각 영역의 상대적 크기: 응답자 분포, 2020년

(단위: %; N=22)

편익	노동시장	사회복지	고립·격리	문화	정치	연쇄이민
25 미만	-	13.6	4.5	0.0	18.2	9.1
25~49	-	22.7	36.4	4.5	18.2	13.6
50~99	-	45.5	36.4	27.3	50.0	31.8
100	100.0	13.6	4.5	27.3	9.1	18.2
101~149	-	0.0	13.6	22.7	4.5	22.7
150 이상	-	4.5	4.5	18.2	0.0	4.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용	노동시장	사회복지	고립·격리	문화	정치	연쇄이민
25 미만	13.6	-	4.5	13.6	4.5	9.1
25~49	18.2	-	0.0	22.7	13.6	9.1
50~99	31.8	-	54.5	36.4	45.5	50.0
100	9.1	100.0	22.7	4.5	27.3	13.6
101~149	18.2	-	13.6	13.6	0.0	18.2
150 이상	9.1	-	4.5	9.1	9.1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3-12>는 2020년 편익과 비용에서 각 영역의 상대적 크기를 단순 평균 낸 결과다. 먼저, 편익에서 평균의 단순 합은 484.7이고 100을 기준으로 잡은 노동시장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 중에서 문화영역의 평균은 105.1로 가장 높은 점수

를 보였고, 다음으로 연쇄이민영역의 평균은 83.5, 사회적 고립과 공간적 격리 극복의 영역 평균은 69.9, 사회복지 영역의 평균은 64.8, 정치영역은 61.4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문화영역은 기준이 되는 100보다 값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기준보다 편익이 높게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비용에서 평균의 단순 합은 497.7이고 100을 기준으로 잡은 사회복지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영역은 사회적 고립과 공간적 격리 극복의 영역으로 평균이 88.1이고, 다음으로는 정치영역의 평균점수가 80.7, 연쇄이민영역의 평균은 78.4, 노동시장 영역의 평균은 77.8, 문화영역의 평균은 72.7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준 100보다 모두 낮은 점수를 기록하여, 다른 영역의 비용이 기준인 사회복지비용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3-12> 편익과 비용에서 각 영역의 상대적 크기: 단순 평균, 2020년

(N=22)

	편익		비용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단순 합)	484.7	-	497.7	-
노동시장	100.0	-	77.8	43.5
사회복지	64.8	33.8	100.0	-
고립·격리	69.9	36.7	88.1	27.9
문화	105.1	31.0	72.7	42.5
정치	61.4	31.6	80.7	32.7
연쇄이민	83.5	38.5	78.4	32.5

<표 3-13>은 2020년 노동시장 편익 기준 사회복지비용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한 것이다. 분포를 보면 ‘50~99’와 ‘101~149’가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0’이 22.7%, ‘25 미만’과 ‘25~49’ 그리고 ‘150 이상’이 각각 4.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분포를 이용하여 계산한 평균값은 95.5이다. 즉, 그것은 노동시장 편익이 100이라고 했을 때 사회복지비용이 95.5라는 뜻이다.

<표 3-13> 노동시장 편익 기준 사회복지비용의 상대적 크기, 2020년

(N=22)

구분	%
25 미만(12.5)	4.5
25~49(37.5)	4.5
50~99(75)	31.8
100(100)	22.7
101~149(125)	31.8
150 이상(150)	4.5
계	100.0
평균	95.5
표준편차	32.6

<표 3-14> 편익과 비용에서 각 영역의 상대적 크기, 2020년

(N=22)

	편익과 비용: 동일한 단위 부여			검정기준
	편익	비용	편익-비용	
전체	484.7	475.1	9.6	15.9
노동시장	100.0	74.3	25.7	29.5
사회복지	64.8	95.5	-30.7	-34.1
고립·격리	69.9	84.1	-14.2	-9.1
문화	105.1	69.4	35.7	40.9
정치	61.4	77.0	-15.7	-18.2
연쇄이민	83.5	74.8	8.7	15.9

<표 3-14>는 2020년 편익과 비용에서 각 영역의 상대적 크기를 노동시장의 편익 크기 100을 기준으로 단위 조정을 한 것이다. 여기서 ‘양의 값(+)'은 편익과 비용을 비교 했을 때 편익이 큰 것을 말하고 ‘음의 값(-)'은 편익과 비용을 비교 했을 때 비용이 큰 것을 말한다. 전체적으로 편익은 484.7이고 비용은 475.1이다. 즉, ‘편익에서 비용을 뺀 값'이 9.6이다.

노동시장 영역에서는 편익이 100, 비용이 74.3으로 ‘편익-비용'은 25.7이 나왔다.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편익이 64.8, 비용이 95.5로 ‘편익-비용'은 -30.7이 나왔다. 사회적 고립과 공간적 격리 극복의 영역에서는 편익이 69.9, 비용이 84.1로 ‘편익-비용'은 -14.2가 나왔다. 문화영역에서는 편익이 105.1, 비용이 69.4로 ‘편익-비용'은 35.7이 나

왔다. 정치영역에서는 편익이 61.4, 비용이 77.0으로 ‘편익-비용’은 -15.7이 나왔다. 연쇄이민영역에서는 편익이 83.5, 비용이 74.8로 ‘편익-비용’은 8.7이 나왔다.

‘편익-비용’의 값을 ‘<표 3-10>에서 제시한 평균 값’(검정 기준)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는 9.6과 15.9, 노동시장 영역은 25.7과 29.5, 사회복지 영역은 -30.7과 -34.1, 사회적 고립과 공간적 격리의 영역은 -14.2와 -9.1, 문화영역은 35.7과 40.9, 정치영역은 -15.7과 -18.2, 연쇄이민 영역은 8.7과 15.9로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것을 통해, 응답자들의 태도를 정확히 측정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요컨대, 노동시장, 문화, 연쇄이민의 영역에서는 순편익이 발생하고 사회복지, 사회적 고립과 공간적 격리의 극복, 정치영역에서는 순비용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3) 결혼이민자 수용의 편익과 비용

<표 3-15>는 2009년 이민자 수용의 총비용 중 정부의 지원비용 511억 원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여준다. 응답자 중 23.8%가 70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였고, 다음으로는 20과 60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응답이 각각 19%였으며, 25와 30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응답 각각 9.5%였고, 기타 응답은 4.8%였다. 전문가들의 평가 의견에 따르면, 2009년도 이민자 수용의 총비용에서 지원비용이 차지하는 평균 비중은 44.5다.

<표 3-15> 2009년 이민자 수용의 총비용 중 지원비용 511억 원이 차지하는 비율

(N=21)	
비중	%
5	4.8
10	4.8
20	19.0
25	9.5
30	9.5
50	4.8
60	19.0
70	23.8
90	4.8
계	100.0
평균	44.5
표준편차	25.1

여기서 전체 평균 44.5를 이용하여, 2009년 한국사회에서 결혼이민자를 수용함으로써 부담하는 총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 그 금액은 1,148억 원에 달한다.

<표 3-16>은 2009년 결혼이민자 수용의 편익과 비용의 금액을 계산한 것이다. 여기서 절대값의 비용은 위에서 산정한 ‘이민자 수용의 총비용’이다. 한국사회 전체의 편익은 1,171억 원이고, 비용은 1,148억 원으로, 23억 원의 편익이 발생한다.

세부 영역별 편익과 비용의 금액을 비교하면, 노동시장 영역에서의 상대값은 편익이 21이고 비용이 16으로 편익이 5가 크다. 그것을 금액으로 보면 편익은 242억 원, 비용은 179억 원으로 편익이 62억 원만큼 발생한다. 사회복지 영역의 상대값은 편익이 14이고 비용이 20으로 비용이 편익보다 6이 크다. 이를 금액으로 보면 편익은 156억 원, 비용은 231억 원으로 편익이 -74억 원만큼 발생한다. 사회적 고립과 공간적 격리 극복 영역의 상대값은 편익이 15이고 비용이 18로 비용이 편익보다 3이 크다. 이를 금액으로 보면 편익은 169억 원이고 비용은 203억 원으로 편익이 -34억 원 만큼 발생한다. 문화영역의 상대값은 편익이 22이고 비용이 15로 편익이 8만큼 크다. 이를 금액으로 보면 편익은 254억 원이고 비용은 168억 원으로 편익이 86억 원만큼 발생한다. 정치영역의 상대값은 편익이 13이고 비용이 16으로 비용이 3만큼 크다. 이를 금액으로 보면 편익은 148억 원이고 비용은 186억 원으로 편익이 -38억 원만큼 발생한다. 연쇄이민영역의 상대값은 편익이 18이고 비용이 16으로 편익이 2만큼 크다. 이를 금액으로 보면 편익은 202억 원이고 비용은 181억 원으로 편익이 21억 원만큼 발생한다.

<표 3-16> 결혼이민자 수용의 편익과 비용, 2009년

(단위: 상대값, 억 원; 2009년 불변가격)

	상대값			절대값		
	편익	비용	편익-비용	편익	비용	편익-비용
전체	102	100	2	1,171	1,148	23
노동시장	21	16	5	242	179	62
사회복지	14	20	-6	156	231	-74
고립·격리	15	18	-3	169	203	-34
문화	22	15	8	254	168	86
정치	13	16	-3	148	186	-38
연쇄이민	18	16	2	202	181	21

결국 2009년 결혼이민자 수용의 편익과 비용은 노동시장, 문화, 가족이민과 이민의 장기지속의 영역에서는 순편익이 발생하고, 사회복지와 사회적 고립 및 공간적 격리 극복, 정치영역에서는 순비용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표 3-17>은 2009년 물가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2009년의 다문화가족 1인당 지원비용이 100이라고 가정하고, 2009~2020년 다문화가족 구성원 1인당 지원 금액의 증가율을 나타낸 결과이다. 우선 분포를 보면 증가율이 '150~199'가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0~99'와 '101~149'는 각각 22.7%, '200~299'는 18.2%, '300~499'는 4.5%로 나타났다. 증가율의 평균은 164.8%다.

여기서 증가율의 평균을 이용하여 2020년의 다문화가족 구성원 1인당 지원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020년 다문화가족 1인당 지원 금액은 1,148억 원으로 계산되며, 그 결과를 이용하여 2020년 다문화가족 수용에 따른 총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 그 값은 4,633억 원으로 추산된다.

<표 3-17> 다문화가족 구성원 1인당 지원 금액의 증가율, 2009~2020년

(N=22)

비중	%
50~99(75)	22.7
101~149(125)	22.7
150~199(175)	31.8
200~299(250)	18.2
300~499(400)	4.5
계	100.0
평균	164.8
표준편차	79.7

<표 3-18>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다문화가족 구성원 수를 추계한 것을 요약한 것이다(제2장 참조). 2009년 결혼이민자는 167,090명이고, 자녀는 99,684명으로 총 266,774명이다. 2020년 결혼이민자 수는 350,862명이 되고, 자녀는 302,692명으로 총 653,554명으로 추계된다. 2009년에 비교해서 2020년의 다문화가족 구성원 수는 2.45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된다.

<표 3-18> 다문화가족 구성원 수 추계, 2009~2020년

(단위: 명, 비)

연도	결혼이민자	자녀	전체	결혼이민자	자녀	전체
2009년	167,090	99,684	266,774	1.000	1.000	1.000
2010년	183,934	114,560	298,494	1.101	1.149	1.119
2011년	200,753	130,411	331,164	1.201	1.308	1.241
2012년	217,550	147,144	364,694	1.302	1.476	1.367
2013년	234,319	164,698	399,017	1.402	1.652	1.496
2014년	251,062	183,002	434,064	1.503	1.836	1.627
2015년	267,775	201,942	469,718	1.603	2.026	1.761
2016년	284,460	221,405	505,865	1.702	2.221	1.896
2017년	301,112	241,263	542,375	1.802	2.420	2.033
2018년	317,729	261,450	579,179	1.902	2.623	2.171
2019년	334,314	281,943	616,257	2.001	2.828	2.310
2020년	350,862	302,692	653,554	2.100	3.037	2.450

<표 3-19> 결혼이민자 수용의 편익과 비용, 2009~2020년

(단위: 억 원; 2009년 불변가격)

	2009년			2020년		
	편익	비용	편익-비용	편익	비용	편익-비용
전체	1,171	1,148	23	4,726	4,633	93
노동시장	242	179	62	975	725	251
사회복지	156	231	-74	632	931	-299
고립·격리	169	203	-34	681	820	-138
문화	254	168	86	1,025	677	348
정치	148	186	-38	598	751	-153
연쇄이민	202	181	21	814	730	85

<표 3-19>는 2009년과 2020년의 결혼이민자 수용의 편익과 비용을 나타낸다. 2020년의 전체적인 편익은 4,726억 원이고, 비용은 4,633억 원으로, 순편익이 93억 원 발생할 것으로 계산된다. 세부영역으로 보면, 노동시장 영역에서는 편익이 975억 원, 비용이 725억 원으로, 251억 원의 순편익이 발생한다.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편익이 632억 원, 비용이 931억 원으로, 299억 원의 순비용이 발생한다. 사회적 고립과 공간적 격리 극복 영역에서는 편익이 681억 원, 비용이 820억 원으로

로, 138억 원의 순비용이 발생한다. 문화영역에서는 편익이 1,025억 원, 비용이 677억 원으로, 348억 원의 순편익이 발생한다. 정치영역에서는 편익이 598억 원, 비용이 751억 원으로 153억 원의 순편익이 발생한다. 연쇄이민 영역에서는 편익이 814억 원, 비용이 730억 원으로, 85억 원의 순편익이 발생한다.

요컨대, 2020년 결혼이민자 수용에 따른 총편익이 총비용에 비해 크게 발생할 것으로 파악된다. 영역별로 분석해 보면, 노동시장, 문화, 연쇄이민 영역에서는 순편익이 발생하고, 사회복지, 사회적 고립과 공간적 격리 극복, 정치 영역에서는 순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표 3-20> 2020년 이민자 지원 비용의 바람직한 구성비율

(단위: %; N=22)

	한국어 또는 교육 지원	이민자·가족 지원	다문화 환경 조성사업 및 기타	사회통합이수제 관련 사업
0	-	-	-	13.6
2	-	-	-	27.3
5	-	-	-	22.7
7	-	-	4.5	-
9	-	-	4.5	-
10	-	4.5	18.2	18.2
15	4.5	0.0	13.6	4.5
18	-	-	-	4.5
20	9.1	36.4	13.6	4.5
21	-	4.5	-	-
23	-	4.5	-	-
24	-	4.5	4.5	-
25	9.1	-	13.6	-
27	-	4.5	-	-
28	-	-	4.5	-
30	9.1	13.6	9.1	4.5
35	-	4.5	-	-
38	4.5	4.5	-	-
40	-	9.1	4.5	-
45	13.6	-	-	-
50	31.8	9.1	9.1	-
60	4.5	-	-	-
62	4.5	-	-	-
65	4.5	-	-	-
68	4.5	-	-	-
계	100.0	100.0	100.0	100.0
평균	42.9	27.6	22.2	7.3
표준편차	15.4	10.6	12.4	7.7

4) 결혼이민자 지원비용의 구성과 금액

<표 3-20>은 2020년 이민자 지원 비용의 바람직한 구성비율이다. 먼저 각 지원 부분에 대한 응답 내용의 평균을 살펴보면, ‘한국어 또는 교육 지원’의 부분이 평균 42.9로 가장 많이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이민자·가족지원’이 27.6, ‘다문화 환경조성사업 및 기타’가 22.2, 사회통합이수제 관련 사업이 7.3으로 나타났다.

각 부분에 대한 바람직한 지원 비율에 대한 구체적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어 또는 교육 지원’ 부분에서는 50%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31.8%로 가장 많았으며, ‘이민자·가족지원’의 부분에서는 20%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36.4%로 다른 응답보다 매우 높았다. ‘다문화 환경 조성사업 및 기타’ 부분에서는 10%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18.2%로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15%, 20%, 25%의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각각 13.6%로 동일하게 응답되었다. ‘사회통합이수제 관련 사업’에 대한 바람직한 지원 비용의 비율은 “2%가 적당하다”는 응답이 27.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5%가 적당하다”는 응답이 22.7%였다.

<표 3-21> 결혼이민자 지원 비용 정부예산, 2009~2020년

(단위: 억 원; 2009년 불변가격)

	2009년		2020년	
	금액	%	금액	%
전체	511	100.0	2,063	100.0
한국어 또는 교육 지원	318	62.2	884	42.9
이민자·가족 지원	120	23.5	570	27.6
다문화 환경 조성사업 및 기타	61	11.9	458	22.2
사회통합이수제 관련 사업	12	2.3	151	7.3

<표 3-21>은 2009~2020년 결혼이민자 지원 비용에 충당되는 정부 예산 금액을 보여준다. 2009년도 결혼이민자 지원 비용(정부예산)은 다문화가족 지원 부처

예산을 근거로 하여 산출한 것이다. 2009년도 결혼이민자 지원 총금액은 511억 원이고, ‘한국어 또는 교육 지원’은 318억 원, ‘이민자·가족 지원’은 120억 원, ‘다문화 환경 조성사업 및 기타’는 61억 원, ‘사회통합이수제 관련 사업’은 12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0년 결혼이민자 또는 그 자녀 1인당 지원 금액’과 ‘결혼이민자 지원 비용 정부예산 항목별 비율’을 이용하여 세부항목별 예산을 작성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 지원 비용 금액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총비용은 2,063억 원이며, ‘한국어 또는 교육 지원’은 884억 원, ‘이민자·가족 지원’은 570억 원, ‘다문화 환경 조성사업 및 기타’는 458억 원, ‘사회통합이수제 관련 사업’은 151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제4장

결혼이민자 수용의 사회복지비용 분석: 현재와 미래

제4장 결혼이민자 수용의 사회복지비용 분석: 현재와 미래

결혼이민자를 수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중 복지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결혼이민자 대상 복지 지출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아동 양육 지원에 맞추어져 있으므로, 이 장에서는 그것만을 따로 추려내어 살펴보기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과 비용추정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 3항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개별가구를 단위로 하여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행할 수 있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1항에서는 개별가구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 규정하고, 그 이외 자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자(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 중 생계를 책임지는 자가 그 부양의무자인 경우에 한한다)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시행령 제5조의 2에 근거하여 수급권자 범위에 ‘외국인에 대한 특례’가 적용된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자녀(계부(모)자 관계 및 양친자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자,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미성년 자녀는 만20세 미만인 자를 의미함 - 민법 제4조 참조)이다. 그것은 2006년부터 적용되었다.)

<표 4-1> 성별, 한국인배우자 연령별 기초생활보장보장 수급 현황, 2009년

(단위: 명, %)

구분	합계	수급유형(국적취득)			수급유형(국적 미취득)		
		배우자와 결혼이민자 모두	혼인 배우자만	중 사망 이혼 배우자 결혼이민자	배우자와 결혼이민자 모두	혼인 배우자만	중 사망 이혼 배우자 결혼이민자
전체	8,249	1,300	493	953	1,526	3,705	272
(비율)	(100.0)	(15.8)	(6.0)	(11.6)	(18.5)	(44.9)	(3.3)
결혼이민자성별							
남	985	129	57	111	81	574	33
(비율)	(100.0)	(13.1)	(5.8)	(11.3)	(8.2)	(58.3)	(3.4)
여	7,264	1,171	436	842	1,445	3,131	239
(비율)	(100.0)	(16.1)	(6.0)	(11.6)	(19.9)	(43.1)	(3.3)
한국인 배우자 연령							
기타	758	0	0	649	0	0	109
(비율)	(100.0)	(0.0)	(0.0)	(85.6)	(0.0)	(0.0)	(14.4)
1~19세	2	1	1	0	0	0	0
(비율)	(100.0)	(50.0)	(50.0)	(0.0)	(0.0)	(0.0)	(0.0)
20~29세	129	3	10	0	31	84	1
(비율)	(100.0)	(2.3)	(7.8)	(0.0)	(24.0)	(65.1)	(0.8)
30~39세	1,064	118	47	23	348	481	47
(비율)	(100.0)	(6.0)	(2.4)	(1.2)	(17.7)	(24.5)	(2.4)
40~49세	3,218	637	172	131	901	1,284	93
(비율)	(100.0)	(19.8)	(5.3)	(4.1)	(28.0)	(39.9)	(2.9)
50~59세	1,843	251	158	72	199	1,146	17
(비율)	(100.0)	(13.6)	(8.6)	(3.9)	(10.8)	(62.2)	(0.9)
60세 이상	1,235	290	105	78	47	710	5
(비율)	(100.0)	(23.5)	(8.5)	(6.3)	(3.8)	(57.5)	(0.4)
수급기간							
1년미만	1,620	201	71	223	414	597	114
(비율)	(100.0)	(12.4)	(4.4)	(13.8)	(25.6)	(36.9)	(7.0)
1~2년미만	1,216	152	61	203	255	485	60
(비율)	(100.0)	(12.5)	(5.0)	(16.7)	(21.0)	(39.9)	(4.9)
2~3년미만	1,095	164	66	151	189	458	67
(비율)	(100.0)	(15.0)	(6.0)	(13.8)	(17.3)	(41.8)	(6.1)
3~4년미만	929	167	55	125	130	440	12
(비율)	(100.0)	(18.0)	(5.9)	(13.5)	(14.0)	(47.4)	(1.3)
4~5년미만	729	133	43	81	102	367	3
(비율)	(100.0)	(18.2)	(5.9)	(11.1)	(14.0)	(50.3)	(0.4)
5년 이상	2,660	483	197	170	436	1,358	16
(비율)	(100.0)	(18.2)	(7.4)	(6.4)	(16.4)	(51.1)	(0.6)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 기초현황자료, 2009.

- 1) 2009년에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24조에 따라 법무부 난민인정협의회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수급 대상에 추가로 포함되었다.

<표 4-2> 시도별 기초생활보장보장 수급 현황, 2009년

(단위: 명, %)

구분	합계	수급유형(국적취득)			수급유형(국적 미취득)		
		배우자와 결혼이민자 모두	혼인 배우자만	배우자 사망 이혼 결혼이민자	배우자와 결혼이민자 모두	혼인 배우자만	배우자 사망 이혼 결혼이민자
합계	8,249	1,300	493	953	1,526	3,705	272
유형 건수							
서울특별시	1,801	261	131	299	153	876	81
부산광역시	567	107	12	63	87	293	5
대구광역시	353	51	6	33	84	163	16
인천광역시	443	63	58	45	42	230	5
광주광역시	302	51	9	28	60	149	5
대전광역시	218	27	6	13	37	128	7
울산광역시	88	12	6	16	18	30	6
경기도	1,316	179	102	215	106	687	27
강원도	288	55	8	18	85	111	11
충청북도	226	21	4	16	51	122	12
충청남도	355	60	21	31	102	124	17
전라북도	673	96	54	47	161	278	37
전라남도	620	142	32	36	198	193	19
경상북도	451	76	23	38	171	136	7
경상남도	472	86	19	42	147	164	14
제주특별자치도	76	13	2	13	24	21	3
유형 비율							
서울특별시	100.0	15.8	6.0	11.6	18.5	44.9	3.3
부산광역시	100.0	14.5	7.3	16.6	8.5	48.6	4.5
대구광역시	100.0	18.9	2.1	11.1	15.3	51.7	0.9
인천광역시	100.0	14.4	1.7	9.3	23.8	46.2	4.5
광주광역시	100.0	14.2	13.1	10.2	9.5	51.9	1.1
대전광역시	100.0	16.9	3.0	9.3	19.9	49.3	1.7
울산광역시	100.0	12.4	2.8	6.0	17.0	58.7	3.2
경기도	100.0	13.6	6.8	18.2	20.5	34.1	6.8
강원도	100.0	13.6	7.8	16.3	8.1	52.2	2.1
충청북도	100.0	19.1	2.8	6.3	29.5	38.5	3.8
충청남도	100.0	9.3	1.8	7.1	22.6	54.0	5.3
전라북도	100.0	16.9	5.9	8.7	28.7	34.9	4.8
전라남도	100.0	14.3	8.0	7.0	23.9	41.3	5.5
경상북도	100.0	22.9	5.2	5.8	31.9	31.1	3.1
경상남도	100.0	16.9	5.1	8.4	37.9	30.2	1.6
제주특별자치도	100.0	18.2	4.0	8.9	31.1	34.7	3.0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 기초현황자료, 2009.

그러한 법적 조항에 의하여 결혼이민자는 국적취득자와 미취득자, 혼인 중과 혼인외인 자가 모두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의 기초생활보장보장 수급은 국적 취득과 미취득으로 구분하고, 이를 각각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혼인상태이면서 결혼이민자만 수급자인 경우’, ‘혼인상태와 무관하게 결혼이민자가 수급자인 경우’의 세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표 4-2>에는 시도별 결혼이민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유형 건수와 유형별 분포를 제시하였다. 먼저 시도별로는 서울과 경기도에 각각 1801건, 1316건으로 가장 많이 분포한다. 시도별 수급 유형별 분포를 보면 국적 취득 혼인상태에서 결혼이민자와 배우자가 모두 수급자인 유형 비율은 전라남도가 가장 높고, 국적 취득 혼인상태에서 배우자만 수급자인 비율은 인천에서 가장 높고, 국적 취득 상태에서 배우자 없이 결혼이민자 수급 유형 비율은 울산시, 제주도 및 서울시에 비교적 높다. 국적 미취득 혼인상태에서 결혼이민자와 배우자가 모두 수급자인 유형 비율은 경상북도에서 37.9%로 가장 높고 전남, 경남, 제주도에서 30%를 넘는다. 국적 미취득 혼인상태에서 배우자만 수급자인 비율은 대전이 58%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고 국적 취득 상태에서 배우자 없이 결혼이민자 수급 유형 비율은 울산시가 6.8%로 비교적 높다.

<표 4-3>에서는 시도별 유형 건수를 기초로 기초생활 수급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수를 산출하여 전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비 비율을 산출하였다. 유형 건수로 산출한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수는 각각 4,051명, 7,024명으로 총 11,075명이다.²⁾ 이는 전체적으로는 수급자의 0.77%이고 20세 이상 수급자 기준으로는 1.07%에 해당한다.

결혼이민자의 성별을 반영하여 결혼이민자 수급자와 그 배우자 수급자의 성별로 수를 산출하였는데, 남자가 6537명, 여자가 4,538명으로 전체 수급자 중에서는 남자는 1.06%, 여자는 0.55%를 차지하고, 20세이상 중의 비율로 계산하면 각각 1.59%, 0.72%를 차지한다.

2) 국적 취득과 미취득자 모두 결혼이민자와 배우자가 각각 수급자인 경우와 두 사람이 모두 수급자인 경우의 사례수를 별도로 합하여 산출하였다.

시도별로 보면 특히 서울에서 기초생활보장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 수의 비율이 전체 수급자의 1.15%이고 20세 이상 수급자 대비 비율은 1.56%로 가장 높다. 그 다음은 인천시, 경기도, 전라남도과 전라북도가 비교적 비율이 높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출신국별 기초생활보장보장 수급 유형 건수를 알아보고자 한다. <표 4-4>를 보면, 중국이 가장 많고, 다음이 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일본 등의 순이다.

<표 4-3> 시도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비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 수급자 비율

(단위: 명, %)

시도	전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A)	20세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B)	기초생활보장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결혼이민자	배우자	계 (C)	전체대비 비율 (C/A)	20세이상 대비 비율 (C/B)
전체	1,444,010	1,038,677	4,051	7,024	11,075	0.77	1.07
수급자 성별							
남	617,015	410,834	354	6,183	6,537	1.06	1.59
여	826,995	627,843	3,697	841	4,538	0.55	0.72
시도							
서울	193,260	142,167	794	1,421	2,215	1.15	1.56
부산	131,778	96,795	262	499	761	0.58	0.79
대구	94,220	64,399	184	304	488	0.52	0.76
인천	66,523	46,153	155	393	548	0.82	1.19
광주	58,288	37,072	144	269	413	0.71	1.11
대전	43,621	29,012	84	198	282	0.65	0.97
울산	17,701	12,470	52	66	118	0.67	0.95
경기	197,112	141,270	527	1,074	1,601	0.81	1.13
강원	61,716	45,129	169	259	428	0.69	0.95
충북	52,306	38,088	100	198	298	0.57	0.78
충남	69,237	50,684	210	307	517	0.75	1.02
전북	109,630	77,711	341	589	930	0.85	1.20
전남	109,062	80,766	395	565	960	0.88	1.19
경북	117,897	88,698	292	406	698	0.59	0.79
경남	100,559	74,445	289	416	705	0.70	0.95
제주	21,100	13,818	53	60	113	0.54	0.82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표 4-4> 출신국가별 기초생활보장보장 수급 현황, 2009년

(단위: 명, %)

구분	합계	수급유형(국적취득)			수급유형(국적 미취득)		
		배우자와 결혼이민 자 모두	혼인 배우자만	배우자 사망 이혼 결혼이민자	배우자와 결혼이민자 모두	혼인 배우자만	배우자 사망 이혼 결혼이민자
합계	8,249	1,300	493	953	1,526	3,705	272
유형 수							
중국(한족)	3,095	536	256	576	189	1,458	80
중국(조선족)	1,954	217	136	171	93	1,306	31
베트남	1,212	63	26	21	606	440	56
필리핀	884	366	51	77	217	146	27
일본	382	31	2	8	200	99	42
몽골	76	7	0	3	23	41	2
태국	124	14	1	5	47	51	6
대만	18	4	0	12	1	1	0
인도네시아	25	6	1	0	8	7	3
미국	6	0	0	1	2	3	0
러시아	31	5	0	4	4	18	0
기타 출신국	320	23	9	15	127	131	15
기타, 미상	122	28	11	60	9	4	10
유형 비율							
전체	100.00	15.76	5.98	11.55	18.50	44.91	3.29
중국(한족)	100.00	17.32	8.27	18.61	6.11	47.11	2.58
중국(조선족)	100.00	11.11	6.96	8.75	4.76	66.84	1.59
베트남	100.00	5.20	2.15	1.73	50.00	36.30	4.62
필리핀	100.00	41.40	5.77	8.71	24.55	16.52	3.05
일본	100.00	8.12	0.52	2.09	52.36	25.92	10.99
몽골	100.00	9.21	0.00	3.95	30.26	53.95	2.63
태국	100.00	11.29	0.81	4.03	37.90	41.13	4.84
대만	100.00	22.22	0.00	66.67	5.56	5.56	0.00
인도네시아	100.00	24.00	4.00	0.00	32.00	28.00	12.00
미국	100.00	0.00	0.00	16.67	33.33	50.00	0.00
러시아	100.00	16.13	0.00	12.90	12.90	58.06	0.00
기타 출신국	100.00	7.19	2.81	4.69	39.69	40.94	4.69
기타, 미상	100.00	22.95	9.02	49.18	7.38	3.28	8.20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 기초현황자료, 2009.

유형을 비율로 보면 필리핀이 국적을 취득하여 배우자와 모두 수급자인 비율이 41.4%로 타 출신국가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고, 일본과 베트남은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채 결혼이민자와 배우자가 모두 수급자인 비율이 50% 이상으로 타 출신국가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다. 조선족의 경우는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채 결혼이민자만 수급자인 비율이 66%이다.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채 배우자 없이 결혼이민자만 수급자인 비율은 인도네시아와 일본이 10% 이상으로 다른 나라 출신에 비하여 높다.

2009년 7월 생계급여 액수는 <표 4-5>와 같다. 이 <표 4-5>는 계속해 분석할 비용 추정의 기준이 된 자료다. 결혼이민자는 월 3억2450만원이 소요되었고, 배우자는 22억 8835만원이 집행되었다.

<표 4-5> 생계급여 지급 총액, 2009년 7월

(단위: 원)

분류	수	금액	비고
결혼이민자	1,064	324,503,470	이민자
	1,057	322,114,920	세대주
배우자	6,487	2,288,353,065	배우자
	6,524	2,301,090,662	세대주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 기초현황자료, 2009.

2) 비용 추정

가. 추정방법

연도별 결혼이민자와 결혼이민자 배우자의 기초수급자수 추정방법은, 먼저 각국 별로 기초생활수급자 유형 건수를 이용하여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의 기초생활수급자 수를 산출하고, 2009년 결혼이민자수에 적용하여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발생률을 산출하고, 이 비율을 2010~2020년 각 연도 각국 결혼이민자수를 적용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발생대상수를 추정하였다.

<표 4-6> 출신국가별 기초생활보장보장 발생비율, 2009년

구분	한족	조선족	일본	미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몽골	기타	전체
이민자	0.0284	0.0095	0.0524	0.0028	0.0244	0.0716	(0.0244)	0.0327	0.0142	0.0252	0.0242
배우자	0.0501	0.0326	0.0619	0.0046	0.0371	0.0813	(0.0421)	0.0514	0.0289	0.0265	0.0420

주: 캄보디아는 2009년 자료 미비로 평균값을 적용.

<표 4-7> 연도별 기초생활보장보장 수급자수 추정, 2009~2020년

(단위: 명)

구분	2009 (A)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B)	B/A
이민자													
한족	1381	1454	1528	1601	1674	1747	1819	1891	1963	2035	2107	2178	1.58
조선족	512	563	613	663	714	764	814	864	913	963	1012	1062	2.07
일본	281	316	351	386	420	455	490	524	559	593	627	661	2.35
미국	3	3	3	3	3	3	3	3	3	4	4	4	1.33
베트남	746	765	785	804	823	843	862	881	901	920	265	958	1.28
필리핀	687	731	774	818	861	905	948	991	1034	1078	1121	1164	1.69
캄보디아	69	82	95	108	121	134	147	160	172	185	198	211	3.06
태국	72	81	89	98	106	115	123	132	140	149	157	165	2.29
몽골	35	39	44	48	52	56	61	65	69	74	78	82	2.34
기타	265	308	351	395	438	481	523	566	609	651	694	736	2.78
계	4051	4342	4633	4923	5212	5501	5790	6078	6365	6651	6263	7222	1.78
배우자													
한족	2439	2569	2698	2827	2956	3085	3213	3340	3468	3595	3721	3847	1.58
조선족	1752	1925	2098	2270	2442	2613	2785	2955	3125	3295	3464	3633	2.07
일본	332	373	414	456	497	538	579	619	660	701	741	782	2.36
미국	5	5	5	5	5	5	6	6	6	6	6	6	1.20
베트남	1135	1164	1194	1223	1253	1282	1312	1341	1370	1400	1429	1458	1.28
필리핀	780	830	879	928	978	1027	1076	1125	1175	1224	1273	1321	1.69
캄보디아	119	141	164	186	208	231	253	275	297	320	342	364	3.06
태국	113	126	140	153	166	180	193	207	220	233	246	260	2.30
몽골	71	80	88	97	106	114	123	132	140	149	158	166	2.34
기타	278	323	369	414	459	504	549	594	639	683	728	772	2.78
계	7024	7537	8049	8560	9070	9579	10088	10594	11100	11605	12108	12610	1.80

주: 결혼이민자수 추계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 분류기준이 상이하여 조정하였음.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 기초현황자료, 2009.

기초생활수급자 발생 대상 수 <표 4-7>을 추정하기 위한 자료로 <표 4-4>를 이용하여 출신국가별 기초생활보장보장 발생비율을 산출하였다. 이는 <표 4-6>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결혼이민자 2.4%, 배우자 4.2%이다. 국가별로는 필리핀이 이민자와 배우자 모두 다른 국가에 비하여 높다. 조선족이 이민자의 경우 타 국가 출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은 이 비율을 적용하여 기초생활보장보장수급자 수를 추정한 것이다. 결혼이민자가 2020년에 2009년에 대비 2.1배 정도 증가하는데 기초생활보장보장수급자 수는 약 80%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결혼이민자 출신국가별로는 증가 추세의 차이로 인하여 차이를 보인다. 한족, 베트남, 필리핀이 증가 비율이 다소 낮은 편이고, 특히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민자의 수급자가 절대수로는 많지는 않지만 현재보다 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계산된다. 결혼이민자의 배우자도 이와 유사하게 국가별 차이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표 4-8> 월 생계급여 및 2009년 대비 비율 추정, 2009~2020년

(단위: 백만 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액수												
이민자												
이민자	325	348	371	394	418	441	464	487	510	533	556	579
세대주	322	345	368	391	414	437	460	483	506	529	552	574
배우자	0	0	0	0	0	0	0	0	0	0	0	0
배우자	2288	2455	2622	2789	2955	3121	3286	3452	3616	3781	3945	4108
세대주	2301	2469	2637	2804	2971	3138	3305	3471	3636	3802	3967	4131
비율												
이민자	100.0	107.2	114.4	121.5	128.7	135.8	142.9	150.0	157.1	164.2	171.2	178.3
배우자	100.0	107.3	114.6	121.9	129.1	136.4	143.6	150.8	158.0	165.2	172.4	179.5

주: 2009년 불변가격임

나. 추정 비용

다음은 앞의 <표 4-4>의 2009년 7월 생계급여 자료를 토대로 결혼이민자수 총수 대비 급여비용을 이용하여 각 연도 생계급여 비용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로, <표 4-8>을 보면 소요예산도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증가에 따라 2009년 대비

80%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계산되었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2009년에는 이민자를 보면 월 3억2450만원이 소요되었으나 2020년엔, 5억 7900만원이 소요된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69억5천만원이다. 배우자는 2009년에는 월 22억8800만원이 소요되었으나 2020년은 41억 3100만원이 소요된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495억여원이다.

3) 토의

결혼이민자가 계속 증가하는 현실에서 현재와 같은 수급자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 결혼이민자는 2배 정도 증가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1.8배 정도 증가한다. 이는 결혼이민자나 그 배우자나 비율이 유사하다. 따라서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 훈련이나 교육 지원 등을 통하여 이들의 자활을 적극도와야 할 것이다. 출신국가별로 수급자 비율이 차이를 보이므로 이 비율이 높은 국가 출신의 결혼이민자 대상의 보완적 정책이 요구된다.

2. 보육 현황과 보육료 지원 비용 추정

1) 보육시설 이용 현황

2009년 4월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총 23103명으로 전체 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의 39.05%로 계산된다. 이용률은 연령별로 보면 0세아 7.1% 1세아 39.0%, 2세아 67.8%, 3세아 65.6%, 4세아 58.5%, 5세아 47.0%이다(표 4-9 참조).

<표 4-10>은 연령 및 시설유형별로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수를 나타낸다. 민간 보육시설에 아동의 58.9%가 다니고 있고, 가정보육시설에 16.0%, 법인 13.5%, 국공립 11.1%의 순이다.

<표 4-9> 연령별 성별 보육시설 이용 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수 및 전체 대비 비율

(단위: 명, %)

구분	합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이상	비고
전체	23,103 (39.05)	1,327 (7.05)	5,091 (38.98)	6,051 (67.75)	4,638 (65.55)	3,597 (58.48)	2,399 (46.97)	561	23,664
남자	12,013 (39.57)	692 (7.18)	2,656 (39.45)	3,164 (68.68)	2,405 (66.62)	1,873 (59.31)	1,223 (46.84)	276	12,289
여자	11,090 (38.51)	635 (6.91)	2,435 (38.49)	2,887 (66.77)	2,233 (64.44)	1,724 (57.6)	1,176 (47.1)	285	11,375

주: ()는 전체 아동 대비 비율.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4) e-보육 자료.

<표 4-10> 연령별 시설유형별 보육시설 이용 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수

(단위: 명, %)

구분	합계	국공립	법인	민간	부모협동	가정	직장
0세	1,327	40	95	517	2	672	1
1세	5,091	409	619	2,483	0	1,558	22
2세	6,051	661	794	3,403	2	1,171	20
3세	4,638	580	679	3,099	0	255	25
4세	3,597	539	546	2,421	0	75	16
5세	2,399	359	379	1,616	1	39	5
소계	23,103	2,588	3,112	13,539	5	3,770	89
6세 이상	561	48	87	403	0	23	0
합계	23,664	2,636	3,199	13,942	5	3,793	89
(비율)	(100.0)	(11.1)	(13.5)	(58.9)	-	(16.0)	(0.4)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4) e-보육 자료.

<표 4-11>은 연령 및 시도별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수와 전체 결혼이민자 가정 아동 대비 비율을 나타낸다. 전체를 시도별로 보면 울산이 가장 낮고 경기, 인천도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이에 비하여 제주도가 48% 수준으로 가장 높고, 광주, 충남, 전북이 45% 이상으로 비교적 높다.

<표 4-12>는 연령별 보육시설 이용 아동 부모 출신국가별 수 및 전체 대비 비율을 나타낸다. 태국과 필리핀 가정이 보육시설 이용률이 50%를 넘어서 가장 높고, 베트남이 37.1%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표 4-11> 연령별 시도별 보육시설 이용 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수 및 전체 대비 비율

(단위: 명, %)

구분	합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이상	전체
전체	2,3103 (39.05)	1,327 (7.05)	5,091 (38.98)	6,051 (67.75)	4,638 (65.55)	3,597 (58.48)	2,399 (46.97)	561	23,664
서울	3,001 (37.49)	163 (7.27)	540 (32.22)	728 (61.9)	640 (59.31)	540 (54.77)	390 (46.15)	132	3,133
부산	1,104 (38.16)	70 (7.1)	252 (38.53)	284 (69.78)	218 (69.21)	173 (55.99)	107 (48.2)	44	1,148
대구	808 (37.79)	52 (7.02)	178 (35.74)	223 (69.69)	161 (73.18)	114 (61.96)	80 (45.71)	23	831
인천	1,189 (35.44)	48 (5.38)	175 (25.29)	313 (58.5)	285 (59.75)	224 (54.5)	144 (41.38)	32	1,221
광주	688 (45.59)	52 (10.83)	167 (47.44)	163 (71.18)	115 (72.33)	112 (67.47)	79 (64.23)	11	699
대전	494 (40.03)	31 (8.01)	112 (39.72)	171 (80.66)	95 (60.9)	48 (45.28)	37 (40.66)	7	501
울산	348 (32.37)	14 (3.54)	77 (32.08)	113 (70.63)	86 (66.67)	38 (43.18)	20 (31.75)	5	353
경기	4,761 (35.99)	246 (6.3)	931 (33.31)	1213 (58.83)	992 (58.87)	829 (55.05)	550 (43.17)	73	4,834
강원	838 (41.04)	15 (2.57)	159 (35.97)	212 (67.3)	190 (73.36)	168 (64.37)	94 (51.65)	9	847
충북	913 (39.66)	41 (5.18)	175 (37.0)	273 (73.39)	187 (70.04)	146 (62.93)	91 (54.49)	12	925
충남	1,758 (45.94)	92 (7.34)	410 (49.64)	463 (76.28)	371 (77.29)	255 (69.67)	167 (56.61)	19	1,777
전북	1,522 (45.46)	110 (9.78)	374 (51.59)	367 (75.51)	286 (73.15)	234 (68.42)	151 (54.12)	57	1,579
전남	1,877 (43.61)	131 (8.93)	427 (46.01)	466 (76.52)	362 (73.73)	262 (64.37)	229 (56.97)	39	1,916
경북	1,511 (36.88)	92 (6.37)	378 (38.61)	449 (70.49)	286 (67.29)	192 (58.18)	114 (40.57)	58	1,569
경남	1,927 (38.13)	144 (7.76)	633 (47.17)	521 (74.86)	297 (64.29)	208 (53.75)	124 (39.74)	38	1,965
제주	364 (48.73)	26 (9.12)	103 (66.45)	92 (85.19)	67 (83.75)	54 (77.14)	22 (44.9)	2	366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4) e-보육 자료.

<표 4-12> 보육시설 이용 아동 부모 출신국가별 수 및 전체 대비 비율

(단위: 명, %)

부모 출신국	0~5세 결혼이민자 수	0~6세 결혼이민자 수
합계	20,012 (40.93)	20,271
중국(한족)	5,774 (42.67)	5,873
중국(조선족)	2,917 (44.05)	2,963
베트남	5,657 (37.17)	5,675
필리핀	2,371 (51.30)	2,410
일본	853 (41.67)	882
몽골	415 (44.72)	417
태국	392 (52.62)	399
대만	29 (47.54)	29
인도네시아	97 (45.97)	100
미국	81 (27.46)	82
러시아	130 (41.01)	130
기타	1,296 (30.23)	1,311

주: 다자녀 가구도 하나의 가구로 계산 (전체)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4) e-보육 자료.

2) 보육료 지원 현황

2009년 4월 현재 보육시설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은 총 19,626명으로 전체 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의 33.2%다. 보육아동의 90% 이상이다. 연령별로 보면 0세아 6.7% 1세아 34.9%, 2세아 60.4%, 3세아 51%, 4세아 46.7%, 5세아 38.8%이다. 성별 차이는 거의 없다(표 4-13).

<표 4-13> 연령별 성별 보육료 지원 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수 및 전체 대비 비율

(단위: 명, %)

구분	합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계
전체	19,626 (33.18)	1,237 (6.57)	4,559 (34.91)	5,391 (60.36)	3,608 (51)	2,871 (46.68)	1,960 (38.37)	419	20,045
남자	10,173 (33.51)	649 (6.73)	2,358 (35.02)	2,830 (61.43)	1,866 (51.69)	1,484 (46.99)	986 (37.76)	200	10,373
여자	9,453 (32.82)	588 (6.39)	2,201 (34.79)	2,561 (59.23)	1,742 (50.27)	1,387 (46.34)	974 (39.01)	219	9,672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4) e-보육 자료.

<표 4-14> 연령별 시설유형별 보육료 지원 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수

(단위: 명, %)

연령·보육시설	합계	국공립	법인	민간	부모협동	가정	직장
0세	1,237	30	66	485	2	654	0
1세	4,559	293	448	2,292	0	1,515	11
2세	5,391	436	578	3,211	2	1,150	14
3세	3,608	444	515	2,419	0	219	11
4세	2,871	407	440	1,953	0	63	8
5세	1,960	275	302	1,350	1	30	2
소계	19,626	1,885	2,349	11,710	5	3,631	46
6세 이상	419	31	70	303	0	15	0
계	20,045	1,916	2,419	12,013	5	3,646	46
(비율)	(100.0)	(9.6)	(12.1)	(59.9)	(0.02)	(18.2)	(0.2)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4) e-보육 자료.

<표 4-15>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 중 연령별 보육료 지원 대상

(단위: 명)

구분	전체	일반아동 기본보육료	차등보육료(저소득)					다자녀 보육료	만5세 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1층	2층	3층	4층	5층			
0세	1,237	287	118	370	196	160	84	21	0	1
1세	4,559	789	368	1,418	858	713	368	28	0	17
2세	5,391	851	357	1,662	1,013	914	540	25	0	29
3세	3,608	0	313	1,361	766	690	430	11	0	37
4세	2,871	0	294	1,069	582	542	294	3	43	44
5세	1,960	0	2	2	2	0	1	0	1,923	30
소계	19,626	1,927	1,452	5,882	3,417	3,019	1,717	88	1,966	158
6세	419	0	143	216	0	0	0	0	4	56
합계	20,045	1,927	1,595	6,098	3,417	3,019	1,717	88	1,970	214

주: 6세 포함.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4) e-보육 자료.

<표 4-14>는 연령 및 시설유형별로 보육료 지원 아동수를 나타낸다. 민간보육시설에 아동의 59.9%이고, 가정보육시설에 18.2%, 법인 12.1%, 국공립 9.6%의 순이다. <표 4-15>는 연령별 보육료 지원 아동의 가구소득 계층별 아동수를 나타낸다. 2층에 가정 많은 아동이 분포하고, 그 다음은 3층, 4층이다.

<표 4-16> 연령별 시도별 보육료 지원 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수 및 전체 대비 비율

(단위: 명, %)

구분	합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비고
합계	19,626 (33.18)	1,237 (6.57)	4,559 (34.91)	5,391 (60.36)	3,608 (51)	2,871 (46.68)	1,960 (38.37)	419	20,045
서울	2,577 (32.2)	154 (6.87)	494 (29.47)	664 (56.46)	507 (46.99)	442 (44.83)	316 (37.4)	87	2,664
부산	1,021 (35.29)	68 (6.9)	245 (37.46)	272 (66.83)	191 (60.63)	148 (47.9)	97 (43.69)	34	1,055
대구	755 (35.31)	50 (6.75)	173 (34.74)	213 (66.56)	141 (64.09)	105 (57.07)	73 (41.71)	18	773
인천	1,042 (31.06)	46 (5.16)	164 (23.7)	295 (55.14)	226 (47.38)	184 (44.77)	127 (36.49)	23	1,065
광주	645 (42.74)	50 (10.42)	154 (43.75)	156 (68.12)	105 (66.04)	103 (62.05)	77 (62.6)	7	652
대전	460 (37.28)	29 (7.49)	108 (38.3)	161 (75.94)	81 (51.92)	46 (43.4)	35 (38.46)	6	466
울산	303 (28.19)	13 (3.29)	72 (30)	108 (67.5)	62 (48.06)	31 (35.23)	17 (26.98)	4	307
경기	4,020 (30.39)	235 (6.02)	865 (30.95)	1,123 (54.46)	745 (44.21)	625 (41.5)	427 (33.52)	45	4,065
강원	629 (30.8)	13 (2.23)	131 (29.64)	164 (52.06)	135 (52.12)	119 (45.59)	67 (36.81)	7	636
충북	777 (33.75)	40 (5.06)	152 (32.14)	244 (65.59)	147 (55.06)	121 (52.16)	73 (43.71)	9	786
충남	1,286 (33.6)	81 (6.46)	333 (40.31)	369 (60.79)	224 (46.67)	174 (47.54)	105 (35.59)	16	1,302
전북	1,304 (38.95)	104 (9.24)	325 (44.83)	317 (65.23)	235 (60.1)	190 (55.56)	133 (47.67)	46	1,350
전남	1,624 (37.73)	114 (7.77)	368 (39.66)	411 (67.49)	300 (61.1)	227 (55.77)	204 (50.75)	36	1,660
경북	1,220 (29.78)	85 (5.88)	318 (32.48)	358 (56.2)	218 (51.29)	145 (43.94)	96 (34.16)	46	1,266
경남	1,676 (33.16)	135 (7.28)	577 (43)	462 (66.38)	240 (51.95)	167 (43.15)	95 (30.45)	34	1,710
제주	287 (38.42)	20 (7.02)	80 (51.61)	74 (68.52)	51 (63.75)	44 (62.86)	18 (36.73)	1	288

주: 6세 포함.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4) e-보육 자료.

<표 4-16>은 연령 및 시도별로 보육료 지원 아동수와 전체 결혼이민자 가정 아동 대비 비율을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33%의 아동이 보육료를 지원 받는다. 시도별로 보면 이용률과 유사하게 울산이 28%로 가장 낮고 경기, 인천도 30~31%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이에 비하여 광주가 42.7%로 가장 높고 제주도 전북, 전남이

37~38% 수준이다.

<표 4-17>은 연령별 보육료 지원 아동 부모 출신국가별 수 및 전체 대비 비율을 나타낸다. 이 역시 이용률과 마찬가지로 태국과 필리핀 가정이 보육시설 이용률이 45% 수준으로 가장 높고, 미국 이외에 베트남이 31.5%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보육료 지원으로 2009년 4월 현재 50억228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산출되었다(표 4-18).

<표 4-17> 연령별 보육료 지원 아동 부모 출신국가별 수 및 전체 대비 비율

(단위: 명, %)

부모 출신국	0~5세 결혼이민자 부모수	0~6세 결혼이민자 부모 수
합계	17,025 (34.82%)	17,223
중국	4,939 (36.50%)	5,011
중국(조선족)	2,482 (37.48%)	2,516
베트남	4,793 (31.49%)	4,807
필리핀	2,071 (44.81%)	2,103
일본	710 (34.68%)	735
몽골	363 (39.12%)	364
태국	342 (45.91%)	349
대만	24 (39.34%)	24
인도네시아	89 (42.18%)	91
미국	51 (17.29%)	52
러시아	110 (34.70%)	110
기타	1,051 (24.52%)	1,061

주: 다자녀 가구도 하나의 가구로 계산 (자녀 5세 이하).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4) e-보육 자료.

<표 4-18> 2009년 4월 결혼이민자 가정 아동 보육료 지원금

(단위: 명, %)

대상자 수	보육료 지급 총액	비고
20,045	502,280만원	전체
19,626	497,622만원	5세 이하

주: 6세 포함.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4) e-보육 자료.

3) 보육비용 추정

가. 방법

결혼이민자 가족 아동의 보육료 지원 비용을 추계하기 위하여 먼저 연도별 결혼이민자 자녀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 수를 아동연령 및 보육료 지원 수준별로 추정하였다. 이는 2009년 0~5세 각 연령별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수와 2009년 4월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 중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수(표 4-15 참조)를 기준으로 지원수준별 지원 대상 발생률(표 4-19 참조)을 산출하여, 이 비율을 0~5세 2010~2020년 추정 아동수에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표 4-19>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 중 보육료 지원 대상 발생률, 2009년

구분	기본보육료	1~3층	4층	5층	다자녀가구	만5세아 무상	장애아 무상	합
0세아	0.0215	0.0514	0.0120	0.0063	0.0016	0.0000	0.0001	0.0929
1세아	0.0509	0.1706	0.0460	0.0237	0.0018	0.0000	0.0011	0.2941
2세아	0.0701	0.2496	0.0752	0.0445	0.0021	0.0000	0.0024	0.4438
3세아	0.0000	0.2872	0.0812	0.0506	0.0013	0.0000	0.0044	0.4247
4세아	0.0000	0.2820	0.0786	0.0426	0.0004	0.0062	0.0064	0.4163
5세아	0.0000	0.0010	0.0000	0.0002	0.0000	0.3329	0.0052	0.3393
전체	0.1425	1.0418	0.2931	0.1679	0.0072	0.3391	0.0195	2.0111

주: 다자녀가구 지원은 중복 지원임.

다음은 이와 같은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수에 연령별 지원수준별 정부 지원금액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보육료 지원 비용을 계산하였는데, 보육료 지원비용은 기본보육료, 차등보육료,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장애아무상보육료의 네 가지 종류에 한정하였고 중복 지원인 두자녀 가구 지원과 0.1세아 양육수당은 제외하였다. 전체 아동 중 보육료 지원아동이나 정부의 지원기준은 2009년 하반기와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비용 추정시의 문제점으로는 보육료 지원제도가 2009년 7월을 기준으로 전면적으로 변경되었는데, 기준이 되는 자료는 2009년 4월 자료이라는 점이였다. 이에 4월 기준 자료를 7월 기준으로 계산 환산하였다. 즉 2009년 7월 이전에는 1, 2등

급은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이고, 3등급은 지원 기준 액의 80%, 4등급 60%, 5등급 30%를 지원받았는데, 2009년 7월부터는 1, 2, 3 등급은 전액을 지원하고 4등급 중 일부와 5등급 중 일부가 60% 지원 대상이 되며 5등급 중 일부와 일반 아동 중 일부가 30% 지원 대상이 된다. 이에 본 추정에서는 종전의 4등급 중 60%가 전액지원 대상이 되고, 4등급의 나머지 40%와 5등급 중 60%가 지원 비율 60% 대상이 되고, 5등급 중 나머지 40%와 일반아 중 20%가 보육료 30% 지원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완, 변경된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등급 조정 비율은 결혼이민자 가구의 경제적 특성이 일반가구보다 취약함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연령별, 보육료 지원수준별 대상 아동수를 보완, 추정한 후에 각 연령 및 지원 수준별 지원금을 곱하여 이를 모두 합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산정하였다.

나. 추정 결과

<표 4-20>은 연도별 아동연령별 기본보육료, 차등보육료, 만5세아 및 장애아 무상 보육비용을 추정한 것이고, <표 4-21>은 그렇게 추정한 비용을 2009년 대비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표 4-20> 연도 및 아동연령별 월 보육료 지원 비용 추계, 2009~2020년

(단위: 백만 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0세아	436	552	593	632	668	701	732	760	783	804	825	845
1세아	1320	1109	1403	1507	1605	1697	1783	1861	1930	1989	2044	2098
2세아	1246	1555	1306	1652	1775	1890	1998	2099	2192	2273	2342	2408
3세아	1342	1876	2340	1966	2487	2672	2845	3008	3160	3300	3422	3526
4세아	461	556	777	969	814	1030	1107	1178	1246	1309	1366	1417
5세아	343	401	482	675	841	707	894	961	1023	1082	1137	1187
계	5150	6048	6901	7400	8190	8697	9360	9868	10335	10757	11137	11481

주: 1) 보육서비스 이용률과 보육료 지원기준이 2009년 하반기와 동일하다고 가정함, 2000년 불변가격임.

2) 본 추계에서 두 자녀 가정 지원과 영아 양육수당이 제외되었음.

<표 4-21> 2009년 대비 연도별 보육료 지원비용 비율, 2009~2020년

(단위: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0세아	100.0	126.5	135.9	144.7	153.0	160.8	167.9	174.1	179.4	184.4	189.2	193.8
1세아	100.0	84.0	106.2	114.2	121.6	128.5	135.0	141.0	146.2	150.6	154.8	158.9
2세아	100.0	124.7	104.8	132.5	142.4	151.7	160.3	168.4	175.9	182.4	187.9	193.2
3세아	100.0	139.8	174.4	146.5	185.3	199.1	212.0	224.2	235.5	245.9	255.0	262.8
4세아	100.0	120.4	168.4	210.0	176.4	223.2	239.8	255.4	270.0	283.6	296.2	307.1
5세아	100.0	116.7	140.5	196.5	245.1	205.8	260.5	279.9	298.0	315.1	331.0	345.6
계	100.0	117.4	134.0	143.7	159.0	168.9	181.8	191.6	200.7	208.9	216.3	222.9

월간 4종류의 보육료 지원액은 2009년에 총 51억 5천만 원 수준에서 2015년에 2009년 불면가격으로 약 1.8 배인 93억 6천만 원 수준으로 증가하고 2020년에는 2.2배인 114억8100만원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연간 비용으로 환산하면 2009년 618억 원이고 2020년 1377억 7200만원 규모이다. 보육료 지원 대상자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증가하거나 보육료 지원 대상이 확대될 경우 결혼이민자 가정 아동 보육비용도 당연히 더욱더 증가할 것이다.

4) 토의

질 높은 영유아 조기 교육과 보육서비스의 제공은 아동의 인지,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생애주기별로 영유아가의 투자가 투자효과가 가장 높다는 점에서 질 높은 보육 제공은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를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의 주요한 수단이 된다.

현재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 중 0~5세로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는 약 2만3천명 정도로 전체적인 보육시설 이용비율은 약 40% 정도로, 총량적으로는 전체적인 우리나라 보육이용률 수준이다. 그러나 이들 가정의 가정경제나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등 가정환경을 고려할 때 가정보다는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으므로 보육시설 이용률을 평균 이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이들이 많이 거주하는 농어촌 지역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외에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기관들의 아동 성장 발달에 기여하여야 하는 바가 더 더욱 중요하다. 특히 보육시설 이용비율이 부모의 출신국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바, 이용률이 낮은 국가 출신 부모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홍보나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시설 이용비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현재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들 보육료 지원에 들어가는 비용은 2009년 51억 수준에서 2020년에 약 2.2배가 되는 것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이 시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다른 연령대의 복지비용과는 달리 국가 인적자원 개발 투자라는 점은 일반 아동과 마찬가지로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들 아동의 보육시설의 조기 이용을 독려하여야 할 것이다.

제5장

결혼이민자 유입과 사회통합정책의 방향

제5장 결혼이민자 유입과 사회통합정책의 방향

1. 유입국에서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에 대한 이론적 접근

이민자가 유입국 사회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효과는 ‘그 나라 경제의 특성’과 ‘이민자의 특성’에 의하여 결정된다(Chiswick, 2005). 한국사회에서 결혼이민자 유입이 미치는 효과 역시 한국사회와 한국경제의 조건과 이민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이민자들의 사회·경제적 통합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동화(同化) 시각, 인적자본이론, 구조적 시각이 대표적이다(Zhou, 2004; Seol, 2006). 한국사회에서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에 관한 체계적 연구는 거의 없으므로, 여기서는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동화 시각

동화 시각(assimilation perspectives)은 이민자의 거주기간과 취업기간에 따라 이민자들의 경제적 성취가 결정되는 것으로 본다. 이민자들은 한 세대 내 또는 여러 세대에 걸친, 여러 단계의 사회경제적 통합 과정을 거친다. 이민자 1세는 문화 접변을 이루고 유입국 노동시장에서 자기 자리를 잡아서 주류사회와 더욱 더 많이 접촉하고, 마침내 주류사회와 닮아간다. 소수민족집단들은 장기간에 걸쳐서 각자 구분되는 존재로 남는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각 소수민족집단의 구분되는 특성들은 점점 “덜 중요해진다.” 소수민족집단들은 동화 단계에 접어들면, 지배집단 성원들과 결혼하고, 주류 제도에 진입하게 되면서, 더 이상 ‘소수자 집단’으로 존재하지 않는다(Park, 1950; Gordon, 1964, 1978; Alba and Nee, 1997). 이민 기간이 장기화 되어 세대가 바뀌면, 체류기간, 현지어 구사능력, 현지문화 노출 정도가 증가하면서, 이민자의 자녀와 주류사회 성원 간 결혼이 늘어나고, 사회적 상승 이동이 증가한다. 예컨대, 20세기 초 미국으로 건너온 남유럽 출신 가톨릭교

도 이민자들의 자손들은 평균 소득과 교육수준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백인들과 차이가 없다. 것처럼 이민자들이 주류사회를 추격하여 간극을 없애는 과정은 유대인 처럼 한 세대 내에 달성하기도 하고, 아일랜드와 이탈리아 출신 이민자처럼 두 세대 또는 세 세대에 걸쳐서 달성하기도 한다. 미국 사회학자들의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주류사회와 구분되는 유럽 출신 가톨릭 집단의 민족적 특성은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져 버렸다(Warner and Srole, 1945; Alba, 1985).

그러나 허시만과 펠콘(Hirschman and Falcon, 1985)이 미국사회의 25개 민족-종교 집단들의 교육 성취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세대와 미국 거주기간 모두 교육 성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른 연구에서는 한국인 등 몇몇 이민자 집단의 경우 주로 1세들이 ‘제한된 문화접변’과 ‘길지 않은 미국 체류기간’이라는 한계를 갖고도 상당한 교육수준과 직업적 성취를 달성하였음을 보여준다(Waldinger and Bozorgmehr, 1996). 그렇지만, 대조적으로, 카리브해 지역 나라 출신 흑인 이민자 2세의 경우, 매우 열악한 삶의 기회를 부여 받았고, 결국 문화접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모보다 더 못한 사회이동 전망을 갖고 있다(Portes and Stepick, 1993; Portes and Rumbaut, 2001; Rumbaut and Portes, 2001). 이러한 발견들은 어떤 개인의 동화 수준의 속도와 성과 차이가 ‘유입국 사회의 문화에 노출된 정도’나 ‘출신국의 문화를 포기한 정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2) 인적자본이론

동화 시각이 시간과 문화노출 효과를 강조한다면,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은 교육수준, 노동시장 숙련, 현지어 구사능력에 의한 노동시장에서의 위치와 경제적 성과의 차이를 설명한다. 인적자본이론은, 다양한 인종·출신국 배경을 가진 개인들이 충분한 인적자본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들은 성공에 이르는 ‘비교적 동등한 기회’를 가지는 것으로 예측한다. 인적자본이론에서는 경제구조의 주변부에 특정 소수자 집단 구성원들이 과잉대표되는 현상을 ‘그들의 인적자본 부족’의 결과로 파악한다. 그러므로 이민자 개인 수준에서 교육을 더 많이 받는 것이야말로

로 소득 불평등 해소, 노동시장에서의 동등한 지위, 궁극적으로는 빈곤 탈출을 위한 첫걸음이다. 인적자본이론은 여러 경험적 연구에 뒷받침되어 왔다. 랜드리(Landry, 1987)는, 지난 20년간 전혀 없이 교육·취업에서 많은 기회가 주어진 결과, 교육받고 재능 있는 흑인들이 동등한 인적자본을 가진 백인들과 같은 직업을 가질 수 있었고, 마침내 게토(ghetto)에서 벗어난 흑인 중간계급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치스윅(Chiswick, 1979)은 남성 이민노동자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노동자들과 동등한 인적자본을 가진 경우 동등한 소득을 획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보하스(Borjas, 1990)는 ‘이민의 선택성’(selectivity of immigration) 때문에 강력한 인적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노동시장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출발하지 않고 곧장 제1차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허시만과 왕(Hirschman and Wong, 1986)은 아시아 출신 이민자의 놀라운 교육적 성취는 백인들과 동등한 수준의 수입을 가능케 한 원천이라는 점을 발견하였다.

3) 구조적 시각

인적자본이론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구들은 성공적인 소수자 집단의 교육과 경험을 살펴보면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가치 절하(discounted)되어 왔고 교육적·경제적 성공의 패턴이 소수자 집단 내에서 항상 반복된 것은 아니었음을 강조한다. 예컨대, 모델(Model, 1991)은 ‘흑인’과 ‘비히스패닉 백인’의 소득 격차를 분석한 결과 측정가능한 인적자본과 시장에서 팔리는 숙련으로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함을 밝혔다. 그것을 흔히 ‘구조적 요인’(structural factors)이라 부른다. 직업과 소득의 불평등은 단순히 인적자본의 차이와 측정가능한 개인의 자질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공식·비공식 제도적 환경,¹⁾ 사회적 자본, 거주지 위치 등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다(Massey and

1) 이민자들은 본국에서 습득한 교육과 숙련을 그대로 새로운 지역에서 발휘할 수 없으므로, 특히 이민 초기에는 사회경제적 하강이동이 불가피하다(Chiswick 1978). 이민자가 처한 공식·비공식 제도적 환경은 ‘이전가능한 교육’(transferable education), ‘시장에서 팔리는 숙련’(marketable skills), 현지언어 구사능력, 공식적 취업 네트워크, 법적 지위 등을 규정하는 효과가 있다.

Denton, 1987; Portes, 1995a; Portes and Rumbaut, 1996). 즉, 구조적 시각(structural perspective)은 이민자의 적응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을 이해하는 틀(framework)을 제공한다.

노동시장분절이론(labor market segmentation theories)은 구조적 시각의 대표적인 이론이다. 그 접근은 임금 결정 과정에 가해지는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제약을 강조한다. 노동시장 구조는 결코 완전경쟁적이 아니고, 사회구조적 위치들 사이에서 개인의 이동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각 개인은 그가 처한 사회구조적 위치에 따라 동일한 개인적 특성에 대해서도 차별적인 평가와 보상을 받게 된다고 본다. 즉, 동질적인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임금격차는 존재하며, 노동이동의 제한에 의하여 비자발적인 실업이 발생하고 시장기능이 왜곡된다는 것이다. 노동자 일반의 경제적 역할이나 지위는 교육, 연령, 결혼상태, 숙련도, 충성심, 및 경력 등 개인적 자질에 의해서도 영향 받지만, 그보다는 실제 노동시장 구조 내부에 몸담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 및 기업규모 등의 부문 혹은 그들의 계급에 따라서 더욱 결정적으로 좌우된다. 노동시장이 분절되는 기준은 매우 다양하게 제시된다. 경제구조적 특징에 주목하는 학자들은 중심산업과 주변산업, 혹은 기업규모에 따라 대·중·소기업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하위집단별 특성에 주목하는 학자들은 성·출신국·민족·계급 등을 이용하여 분류한다.

이민자 노동시장에 초점을 맞춘 이론적 접근으로는 분단노동시장이론(split labor market theory)과 소수민족집단거주지이론(ethnic enclave theory)이 대표적이다(Seol, 2006). 그 이론들은 이민자들은 유입국 노동시장에서 내국인과 자유 경쟁을 하지 못하며, 특히 유입 초기의 언어적·문화적 혹은 인종적 장벽 때문에 제2차 노동시장에 편입될 수밖에 없거나(Bonacich, 1972), ‘유대인 경제,’ ‘차이나타운,’ 혹은 ‘코리아타운’과 같은 소수민족집단거주지를 형성하여 민족별로 독자적 시장을 운영하며 생활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Wilson and Portes, 1980). 말하자면 이 접근은 국가간 노동의 동질성이라는 가정을 거부한다. 현실적으로 이민자들은 내국인에 비하여 언어상의 장벽이 있을 뿐 아니라 저급의 기능과 숙련을 지니고 있어 내국인의 작업을 완벽하게 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유입국 사회에 들어온 후, 그들은 실업 상태에

있거나 내국인이 기피하는 작업 또는 종사하지 않는 직무만을 맡게 될 것이다. 그러한 경우 외국인노동자는 유입국 노동시장의 빈자리를 메워 주는 역할을 한다.

월딩저(Waldinger, 1996a)는 미국 뉴욕에서 이민자들이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노동 시장 부문’(vacant niches)을 채우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월딩저(Waldinger, 1996b)는 로스엔젤레스의 경우 이민자들은 자기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서 취업하고 있으나 토박이 소수자 집단 성원들이 심각한 실업에 시달림을 발견하였다. 그는 그 원인을 토박이 소수자의 숙련과 인적자본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그들이 서비스업과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와 연결된 ‘비공식적 사회적 네트워크’(informal social network)에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말하자면, 이민자의 ‘비공식적 사회적 네트워크’는 그들의 사회적 자본이 종종 되기도 한다.

이민자 자녀의 적응에 초점을 맞춘 이론적 접근으로는 ‘분절동화이론’(segmented assimilation theory)을 들 수 있다(Portes and Zhou, 1993; Rumbaut, 1994; Portes, 1995b; Zhou, 1997; Portes and Rumbaut, 2001; Rumbaut and Portes, 2001). 분절동화이론은 이민자 2세대 중 일부는 경쟁에 필요한 숙련을 습득하지 못하거나 노동시장에서 정규직을 차지하지 못한 채 부모들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못한 상태에 처하게 됨을 강조한다. 미국의 경우 히스패닉 노동자 이민자 2세에서 그러한 현상이 종종 발견되는데, 그들을 “무지개 저변계급”(rainbow underclass)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앞에서 소개한 동화이론에서는 이민 2세대들이 전반적으로 부모 세대보다 더 우월한 지위를 갖는다는 ‘낙관적 전망’을 갖고 있는 데 반해, 분절동화이론에서는 특정 구조적 요인의 작용으로 자연스러운 동화과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을 제시한다.²⁾

전반적으로, 구조적 시각은 ‘결과적 동화와 종족간 적응’(eventual assimilation and interethnic accommodation)에 대하여 비관적이다. 구조적 시각은, 소수자가 사회적 자원과 취업기회, 주거, 교육 등에 평등하게 접근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제약하여 인종·종족 간 소득과 직업성취의 차이를 초래하는 ‘종족적 위계’(ethnic

2) 이민자 1세와 2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비교하여, 그 지위의 상대적 상승-하강 여부를 따질 수도 있다. 이민자 2세대들이 1세에 비해 약간 상승이동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지배집단 또는 주류사회로의 통합을 의미한다고 단언하기 힘들다. 즉, 이민자 2세의 주류사회 편입이 고학력 이민자 가족에서만 발견된다고 한다면, ‘동화이론’보다는 ‘분절적 동화이론’의 설명력이 더 높을 것이다.

hierarchies)에 초점을 맞춘다(Portes and Böröcz, 1989). 이민자 적응의 쟁점에서, ‘이민을 받아들인 나라가 어느 정도의 편익(benefits)을 얻는가?’는 ‘그 나라의 어느 사회 계층이 이민자들을 흡수하는가?’에 달려 있다. 구조적 시각은 ‘구조적 강제 효과’(effects of structural constraints)를 설명한다. 그러나 구조적 시각은 사회이동의 거시적 과정과 일반적 유형을 예측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이론적 틀이므로, 다양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가진 집단 성원들이나 종족집단들 간의 미세한 차이를 다루는 설명력은 부족하다.

4) 세 이론의 비교 분석

이민자들의 사회·경제적 통합을 설명하는 세 가지 이론들, 즉 동화 시각, 인적자본이론, 구조적 시각은 이민자의 사회통합의 핵심을 달리 파악하고 있다.

<표 5-1>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에 대한 세 가지 이론적 접근

동화 시각	인적자본이론	구조적 시각
· “이민자들은 한 세대 내 또는 여러 세대에 걸친, 여러 단계의 사회경제적 통합 과정을 거친다.”	· “인적자본이 노동시장에서의 위치와 경제적 성과의 차이를 결정한다.”	· “인종·종족 위계가 소수자들이 사회적 자원과 기회에 접근할 때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한다.”
· 거주기간, 취업기간, 현지어 구사능력, 현지문화 노출정도 등	· 교육수준, 노동시장 숙련, 현지어 구사능력 등	· 인종, 출신국, 성, 공식·비공식 제도적 환경,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적 자본, 거주지 위치 등

<표 5-1>에 제시한 것처럼, ‘동화 시각’의 핵심 명제는 “이민자들은 한 세대 내 또는 여러 세대에 걸친, 여러 단계의 사회경제적 통합 과정을 거친다.”인데, 거주기간, 취업기간, 현지어 구사능력, 현지문화 노출정도 등의 변수를 강조한다. ‘인적자본이론’의 핵심 명제는 “인적자본이 노동시장에서의 위치와 경제적 성과의 차이를 결정한다.”인데, 교육수준, 노동시장 숙련, 현지어 구사능력 등의 변수가 중요시된다. ‘구조적 시각’에서는 “인종·종족 위계가 소수자들이 사회적 자원과 기회에 접근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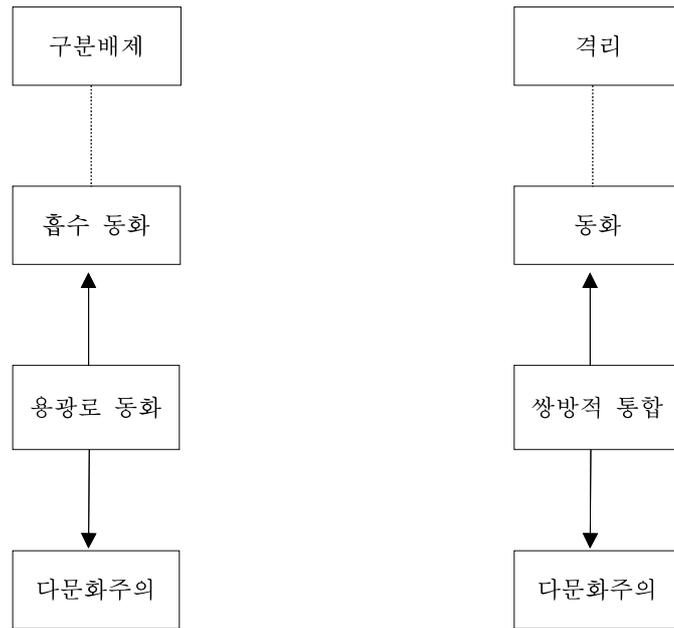
때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인종, 출신국, 성, 공식·비공식 제도적 환경,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적 자본, 거주지 위치 등 구조적 변수를 중시한다. 이 세 가지 이론적 입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요 변수들은 정책을 수립할 때 핵심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2. 유입국 사회의 이민자 사회통합 모형

이민 수용국 사회가 이민자·이주노동자를 통합하는 방식은 구분배제모형, 동화모형, 다문화주의모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Castles and Miller, 2009; Castles, 2007; Seol, 2005). [그림 5-1]은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유형을 구분한 것이다. 구분배제유형이 외국인 또는 이민자에게 가장 배타적 태도를 취한다면, 다문화주의모형은 가장 우호적 태도를 취하며, 동화모형은 그 중간에 해당된다.

고든(Gordon, 1978)은 동화를 ‘흡수 동화’와 ‘용광로 동화’라는 두 유형으로 구분한다. ‘흡수 동화’(absorption assimilation)는 소수민족집단의 성원이 지배집단의 생활 방식에 적응하는 것을 가리킨다. ‘용광로 동화’(melting pot assimilation)는 소수민족집단 성원이 주류사회의 수많은 새로운 행동 유형과 가치를 받아들이며 문화적으로 섞이는(cultural blending) 과정을 뜻한다. 용광로 속에서 쇠붙이가 녹는 것처럼 주류사회의 문화가 소수민족집단의 문화가 혼용된 새로운 것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04: Section 3.6)에서는 여러 나라 정부가 추구하는 이민자 사회통합 목표를 기준으로 동화, 쌍방향적 통합, 다문화주의, 격리의 네 유형으로 구분한다. 국제이주기구의 분류 체계는 앞서 소개한 카슬과 밀러(Castles and Miller, 2003)와 고든(Gordon, 1978)의 분류 방식을 결합하여 이름을 다르게 붙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설동훈·김명아, 2008).



(가) 카슬·밀러 및 고든의 모형 (나) 국제이주기구의 모형

[그림 5-1] 이민 수용국 사회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모형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스펙트럼이 다양함을 인식하고, 대상별로 접근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경향에 대하여 성찰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다문화·다인종 사회”의 이민자 통합 정책은 다문화주의가 최선인 것처럼 생각하는 세간의 오해는 극복되어야 한다. 또 동화모형은 구시대의 유물인 것처럼 파악하는 시각도 잘못된 것이다.³⁾ 한국 정부의 이민자 통합 정책은, ‘용광로 동화모형’과 ‘쌍방적 통합 모형’ 및 ‘다문화주의 모형’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사회통합 대상 이민자별로 적합한 것을 채택하여야 한다.

첫째, 공화주의에 기초를 둔 ‘용광로 동화모형’은 톨레랑스(*tolérance*, 寬容)와 라이시테(*laïcité*, 政教分離原則)로 유명한 프랑스의 이민자 통합 정책에서 비롯된 개념이

3) 동화이론은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내기는 하였지만, 이민자 사회통합에 관한 한 여전히 매우 유용한 사회이론이다(Waters and Jiménez, 2005).

다.4) 그 핵심은 이민자를 동화시켜 국민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공동체나 집단 수준의 동화’가 아니라 ‘개인 수준의 동화’를 전제로 한다.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이민자들에게 프랑스어와 기술을 가르쳐주고 프랑스 문화에 익숙해지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역시 이민자들이 프랑스 국민으로 쉽게 동화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프랑스에서 이민자에게 장기간에 걸친 문화적·민족적 다양성을 제공하는 정책은 발견되지 않는다. 독일의 이민자 통합 정책도 동화 모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쌍방적 통합’ 모형은 주류사회와 이민자가 상대방에게 적응하는 것을 기초로 한다. 주류사회가 이민자를 통합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변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를 ‘문화간주의’ 또는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라고 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나라는 아일랜드다.

셋째,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이민자 통합 정책은, 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스웨덴·미국·영국 등 전체 국민 중에서 이민자 집단 또는 소수민족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다. 다문화주의 정책은 이민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본국 문화를 유지하도록 적극 지원하거나, 본국 문화를 유지하는 것을 방관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전자를 개입주의 모형, 후자의 자유방임주의 모형이라 칭한다. 전자의 사례로는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 및 스웨덴이, 후자의 사례로는 미국과 영국이 주로 거론된다. 각국 사회에서 다문화주의 정책이 등장한 요인에 주목하여야 한다. 캐나다는 프랑스어 사용 지역의 분리 독립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스트레일리아는 아시아 출신 이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다문화주의 정책을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의 이민자 통합정책은 어떠한 것이 바람직할까? ‘공화주의 동화모형’과 ‘쌍방적 통합 모형’ 및 ‘다문화주의 모형’의 실제 모습은 명료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면 해답을 찾기가 훨씬 쉬울 것이다. 세 모형의 대표 격인 프랑스와 아일랜드 및 캐나다의 이민자 통합정책을 보면, 차이점 못지않게 유사점이 많다. 현재 한국의 정책과 그 세 나라의 정책을 비교·분석하면,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이민자 통합 정책의 골격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4) 제국주의적 동화모형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민자들이 한국어만 사용하도록 하고, 한국식 이름으로 고치도록 강요하는, 과거 조선총독부가 식민지 한국인에게 강요한 “흡수 동화” 방식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이주 기간

		교체순환 이주	영주 이주
숙련 수준 구성	육체노동 이주	<p>발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출국의 신용시장과 상품시장의 비효율성 극복 · 숙련과 자원 이전, 국내 생산 구조 강화 · 송출지역의 인구성장 유지 	<p>비발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출지역의 인구 감소와 생산 기반 구조 약화 초래 · 이주자 송금의 장기적 감소 · 유입국 사회에서 이주자 자녀들이 하향 동화의 위험에 처함 · 부분적 대항세력으로서 초국적 조직들의 성장
	전문기술 노동이주	<p>발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출국으로 과학기술 지식 이전 · 적절한 기반구조가 뒷받침될 때 이주자 저축이 새로운 생산을 위한 자금으로 투자되는 것을 장려 · 국가 과학기술 시설의 질과 성장 유지 	<p>혼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자원이 희소한 상황에서 국가적 숙련 인재의 유출 · 주재원의 초국적 기업가정신과 활동이 우선적으로 자본과 기술 이전을 통해 부정적 효과를 중립화 시킬 수 있음. 송출국에서의 제도적 맥락과 정부의 적극성에 따르는 성과

자료: Portes (2009: 18).

[그림 5-2] 국제이주의 유형과 발전 효과

지극히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민자 집단별로 통합 모형을 여러 갈래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민자의 속성에 근거하여 각기 다른 사회통합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은 이민자의 (예상) 체류기간이 ‘정착 이민자’인가 아니면 ‘단기 체류자’ 또는 ‘교체순환 이주자’인가에 따라 구분된다. ‘단기 체류자’라 할 지라도, 한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존재라면 ‘정착 유도 대상’으로 간주된다. 이를테면,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 및 유학생의 사회통합 모형은 완전히 다른 것이어야 한다. 한국인과 국제결혼한 이민자의 경우 정착과 국적취득 가능성을 고려한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저숙련 이주노동자는 한국에서 기술을 습득하여 본국으로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통합정책의 요체일 것이다. 저숙련 육체노동자의 경우, [그림 5-2]에 제시한 것처럼, 교체순환이주가 송출국과 유입국사회의 ‘발전’에 보탬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들이 영구 정착할 경우 유입국사회에서는 이민자와 그 자녀가 하층으로 자리 잡을 것이고, 송출국사회에서는 인구 감소와 생산 기반구조가 약화되는 부정적 영향을 초해할 가능성이 크다.5) 유학생은 그 전공에 따라 한국에서 취업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거나 적극적으로 취업하도록 권장하는 사람과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할 사람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어떤 유형의 정책을 취하든, ‘다문화 교육’은 이민자 통합 정책의 핵심 수단이다. 다문화교육은 이민자와 한국인이 상대방에 대해 제대로 알게 하고, 궁극적으로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프랑스와 아일랜드 또는 캐나다 정부 모두 이민자에 대한 ‘자국어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그 나라들에서는 공통적으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 교육’도 중시한다.

다문화사회의 진입단계에 있는 한국사회에서도 ‘다문화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일자리·배우자·학교 등을 찾아 한국으로 온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원래부터 한국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한국인과 이민자가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국사회 구성원 모두는 ‘더불어 사는 방법’을 학습해야 한다. 이민자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국인들에게 ‘이민자와 어울려 사는 자세’를 가르쳐야 한다. 공생 또는 상생의 열쇠는 한국사회 구성원 모두가 ‘입장 바꿔 생각해보기’(易地思之)의 자세를 익히는 데 있다.

다문화교육의 내용과 방법론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방송을 통해 종종 접하는, 이민자에게 일방적으로 한국문화를 주입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전통예절, 한복, 다도(茶道) 등 일반 한국인들도 익숙하지 않은 전통 한국문화를 이민자에게 익히도록 강요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그들이 한국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수적인 한국어 교육을 하면서, 그 내용에 정치·경제·사회 문제를 포함하도록 하는 방식이 좋다. 다문화교육은 한국인 대상 교양강좌를 이민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다문화교육은 한국인에게도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인 대상의 다문화교육은 ‘국제이해교육’ 또는 ‘다른 나라 문화의 이해’ 등으로 개념화되어 있다. 이민자의 유입으로 한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하여 사회적 활력이 생기는 밝은 측면이 많지만, 일자리에서의 경쟁, 범죄 등 어두운 측면도 있다. 다문화교육의 내용은 실

5) 유입국 사회에서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은 송출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하기보다는 자국의 이해관계만을 철저히 고려하여 추진되는 게 보통이다.

체적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어야 한다. 내국인 대상의 다문화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민자에 대한 ‘선입견’, ‘배타성’, ‘관심·지식의 결여’ 등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다문화교육의 방법론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다문화교육의 주체는 정부·학교뿐 아니라 대중매체·기업·사회단체·가족 등 사회 성원 전체라는 점이다. 다문화교육의 종류를 살펴보면, 이민자 대상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마련한 교과과정으로 제도화된 ‘학교에서 행하는 다문화교육’ 등 강의를 위주로 한 것이 있는가 하면, 방송 프로그램, 신문·잡지 등의 기사, 기업과 시민단체의 캠페인 등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말하자면, 정부와 학교 등 공식적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 ‘위로부터의 정책’과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참여’가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

체계적 다문화교육을 받은 한국인과 이민자는 갈등 예방 요령을 터득할 것이고,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해결의 방법을 쉽게 찾아낼 것이다. 다문화교육을 통해 원주민 한국인과 이민자는 사회적 갈등의 크기와 지속기간을 줄이는 있는 지혜를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제6장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전망과 대책

제6장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전망과 대책

1. 미래 한국사회의 발전 전망

2020년 한국사회를 지배할 핵심단어는 ‘저출산·고령화’와 ‘통일’ 및 ‘다문화’로 요약된다. 이 세 가지는 장기간 지속되는 추세(trend)로, 현재 그 단초를 찾을 수 있고, 그것을 근거자료로 삼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10년 후 한국사회는 현재와 같은 ‘고령화사회’(aging society)가 아니라, ‘고령사회’(aged society)의 모습을 띠 것이다.¹⁾ 생산연령인구(노동력)의 감소, 노인 피부양인구의 급증으로 요약되는 ‘인구지진’이 한국사회를 강타할 것이다. 젊은 노동력은 절대적 부족 상태가 되고, 노동력 자체도 고령화되어, 경제성장 동력의 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처할 것이다. 노인을 규정하는 연령 기준이 점점 높아질 것이다. 노동력을 늘리면서 노인 피부양인구를 줄이는 효율적 방법이기 때문이다. 전문기술인력과 같이 노동력 부족이 만성화된 노동시장 부문에서는 정년퇴직제도가 사라질 것이다.

고령사회의 충격은 노동시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로 확산된다. 생산연령 인구의 부족으로 정부의 세입 기반이 감소하는데, 노인 피부양인구 증가로 사회보장 부담은 늘어나, 국가재정수지가 악화될 것이다. 결국에는 사회보장제도에 위기가 닥칠 것이다. 특히 1955~1963년에 태어난 아기붐 세대는 자신들이 저축한 것만큼의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게 확실하다. 그러한 연금 재정의 파탄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할 경우 그 위기의 강도는 매우 클 것이다. 극단적인 경우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부양하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는 사태가 닥칠 지도 모른다. ‘부유한 노인들’과 ‘가난한 젊은이들’간의 대립과 갈등은 ‘세대간의 전쟁’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1) 일본과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7%를 초과하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를 초과하면 ‘고령 사회’(aged society), 20%를 초과하면 ‘초고령 사회’(hyper-aged society)로 분류한다. 그러나 그것은 UN 등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분류 방식은 아니다(한국통계진흥원, 2009: 34).

가족제도의 변화도 발생할 것이다. ‘일부일처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미래학자도 있다(Attali, 2005).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여러 차례 결혼하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다. 비혼(非婚)동거뿐 아니라, 동성(同性)부부, 시설가구, 비친족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비표준가족’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의 충격을 완화 내지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두 가지 추세로 ‘통일’과 ‘다문화’가 있다. 첫째, 10년 후에는 남북통일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임박한 상황이 될 것이다. 최소한 남북통일의 기운이 무르익어 가는 수준으로는 진전될 것이다. 이질적 경제제도와 발전 격차를 지닌 남북한 두 사회의 경제를 통합하는 데 막대한 ‘통일비용’이 들겠지만, 민족주의의 구심력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통일 비용극소화-효용극대화에 관한 연구가 붐을 이룰 것이다. 한국사회에 들어와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더 늘어날 것이다. 두 사회를 완전히 통합하기 이전의 단계에서는 ‘정치-경제 분리 원칙’에 기반을 둔 교류가 지속될 것이므로,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는 남북통일의 장애요인이 아니라 촉진요인이 될 것이다.

둘째, 한국 경제와 사회의 전지구화 현상의 반영으로 국내 이민자 수가 크게 늘 것이다. 2009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이민자는 단기계약 이주노동자 약 70만 명과 한국인과 국제결혼한 이민자 16만여 명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교체순환원칙’에 의하여 사람이 교체되면서 한국에 일시적으로 머무르지만, 결혼 이민자는 거의 전원이 국내에 정착하고 있다. 결혼이민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비율도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증가 추세를 보일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으로 왔다가 국내 기업에 취업하여 이민자로 정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계산한 결과, 2009~2020년에 결혼이민자 수는 2.10배, 결혼이민자의 자녀 수는 3.04배,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아우른 총수는 2.4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외국인·이민자와 그 자녀수는 2009년의 1,106,884명에 2.45를 곱한 값 2,711,866명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그것은 같은 해 추계인구 49,325,689명의 5.5% 수준이다. 물론 이 수치는 남북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에서 이주노동자 수가 결혼이민자와 동일한 비율로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를 둔 것으로 다소 무리한 추정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략의 규모를 파악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다문화가족인구는 증가하는 데 반해, 총인구는 2018년 정점에 달한 이후 하향 추세에 있을 것이므로, 그 비중은 단순한 수적 증가율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그 값을 OECD 회원국의 2007년 외국태생인구 비율과 비교해보면,²⁾ 핀란드와 헝가리보다는 높고 포르투갈보다는 낮다. 현재보다는 다문화수준이 훨씬 높아지겠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일 것이다.

<표 6-1> 한국의 외국인·이민자와 그 자녀 수, 2009~2020년

(단위: 명, %)

구분	2009년	2020년
총인구	49,593,665	49,325,689
외국인·이민자와 그 자녀 수	1,106,884	2,711,866
비율	2.2	5.5

자료: 행정안전부, 『200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2009.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표 6-2> 주요 OECD 회원국의 외국태생인구 비율, 2007년

(단위: %)

나라	%	나라	%	나라	%
룩셈부르크	36.2	스페인	13.4	슬로바키아	6.8
오스트레일리아	25.0	벨기에	13.0	체코	6.2
스위스	24.9	독일	12.9	포르투갈	6.1
뉴질랜드	21.6	네덜란드	10.7	핀란드	3.8
캐나다	20.1	그리스	10.3	헝가리	3.8
아일랜드	15.7	영국	10.2	이탈리아	2.5
오스트리아	14.2	노르웨이	9.5	터키	1.9
미국	13.6	프랑스	8.5	폴란드	1.6
스웨덴	13.4	덴마크	6.9	멕시코	0.4

자료: OECD, "Stocks of foreign-born population in selected OECD countries," 2009. <http://www.oecd.org/dataoecd/39/35/43185405.xls>.

2) 외국태생인구에는 그 나라에서 태어난 외국인 또는 이민자의 자녀가 포함되지 않는다. '부모양계 혈통주의'에 기반을 둔 국적 부여의 기본원칙을 갖고 있는 한국에서 결혼이민자의 자녀는 전원 한국국적을 가지고, 다른 이민자 가족의 자녀는 부모의 국적을 따른다.

<표 6-3> 한국의 외국인·이민자 수, 2004~2008년

(단위: 명)

연도	이민자				등록외국인 (A)	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B)	단기 불법체류자 (C)	국적취득 주민 수 (D)	북한이탈주민 누적인원 (E)	주한미군과 군속 및 가족 (F)	단기 합법체류자 (G)	체류외국인 총수 (A+B+C+G)
	(A+B+C+D+E+F)	(A+B+C)	(A+B+C+D)	(A+B+C+D+E)								
2004	707,195	610,625	636,159	642,463	468,875	22,534	119,216	25,534	6,304	64,732	139,940	750,873
2005	703,459	606,882	638,720	646,407	485,144	25,365	96,373	31,838	7,687	57,052	140,252	747,467
2006	869,388	764,442	803,967	813,673	631,219	29,388	103,835	39,525	9,706	55,715	144,436	910,149
2007	1,035,185	914,557	968,608	980,862	765,746	34,516	114,295	54,051	12,254	54,323	152,033	1,066,273
2008	1,136,488	1,001,950	1,067,461	1,082,524	854,007	41,457	106,486	65,511	15,063	53,964	156,916	1,158,866

주: 1) 국적취득주민 수는 행정안전부 통계에서 구하였다. 단, 2004년과 2005년은 해당연도 국적취득 자 수를 2006년 값에서 빼서 계산하였다.

2) 북한이탈주민 수는 보호결정을 기준으로 집계한 입국인원의 연도별 누적 치료 파악하였다.

3) 주한미군과 군속 및 가족 수는 각 연도 9월 30일 기준인데, 박정경수(2009)에서 구하였다.

4) 이 표에는 외국인·이민자의 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각 연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각 연도; 통일부, 『통일백서』, 각 연도; 박정경수(2009).

외국인·이민자와 그 자녀수 통계에는 ‘북한이탈주민’과 ‘주한미군과 군속 및 그 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 헌법에서 대한민국을 “한반도와 그 부속영토”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법률적으로는 독립국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 행정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통일부에서 관장한다. 아울러,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를 두고 주둔하고 있는데, 그 조약 제4조에 의하여 체결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해 ‘주한미군과 군속 및 그 가족’의 입국과 체류 관리가 이루어진다. <표 6-3>에서 보듯이, 그 두 범주를 포함할 경우, 국내 외국인·이민자 수는 ‘체류 외국인 수’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2020년의 외국태생인구 비율을 5.5% 수준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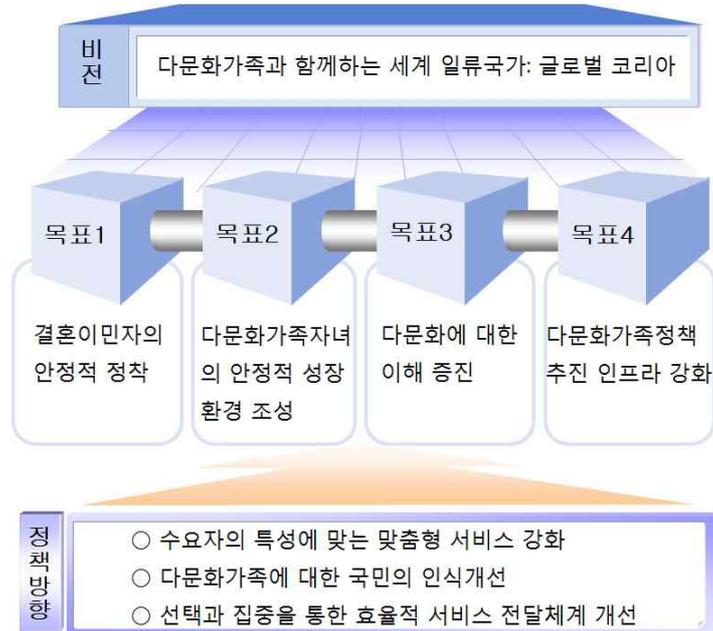
요컨대, ‘통일’ 분위기 고조와 ‘다문화’ 사회의 진입으로 인해 한국사회의 다양성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그 두 추세는 한국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저출산·고령화가 예기하는 암울한 미래를 회피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2. 다문화가족정책의 중장기 전망

한국사회에 거주하는 이민자와 그 자녀의 수가 많아지고, 그들의 사회적 구성이 달라져가는 추이를 파악한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가족 정책이 나아갈 바를 탐색해보기로 한다. 기존 다문화가족 정책의 요체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8년 발표한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대책』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그 후 약간의 수정·보완 절차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림 6-1]은 다문화가족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및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 다문화가족정책은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국가: 글로벌 코리아”라는 비전을 갖고 있다. 다문화가족정책은 네 개의 목표를 갖고 있는데,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다문화가족자녀의 안정적 성장환경 조성,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다문화가족정책 추진 인프라 강화가 그것이다. 다문화가족정책의 기본 방향은 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강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이다.



[그림 6-1] 다문화가족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및 비전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수가 2.45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2020년까지 시간적 간격을 늘려서 살펴봐도 다문화가족정책 비전과 목표 및 기본방향은 바르게 정립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정부는 전 부처 차원에서 부처별 업무 특성을 반영해 다문화가족 지원관련 사업 추진 중이다. 앞의 <표 3-9>에서 살펴본 것처럼, 법무부는 외국인정책 또는 이민정책을 총괄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총괄하며, 노동부에서는 외국인노동자정책을 다루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결혼이민자 자녀의 학교 교육 지원을 맡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민의 다문화성 제고와 한국어 교재 개발 업무를 맡고, 여성부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 보호와 폭력피해 예방,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 데 필수적인 여건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교육 사업을

말고 있다.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적응 수준을 높이려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각 부처가 맡고 있는 업무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그 역할 분담 내역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장기적 대안의 하나로 이민청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 이민청이 설립될 경우, 이민청에서는 다문화가족정책을 포함한 이민정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는 역할을 맡고, 집행 기능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맡으면 될 것이다.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8: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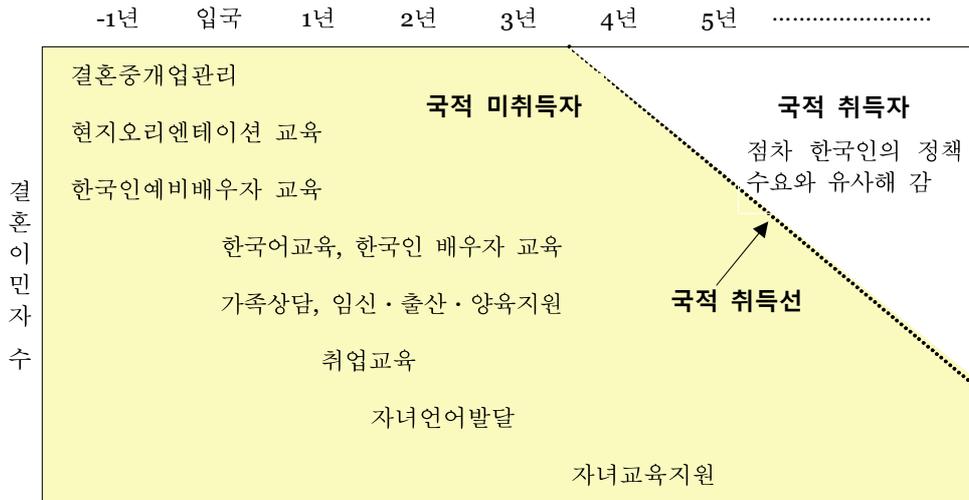
[그림 6-2]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정책과제

현재의 다문화가족 정책은 ‘가족생애주기’(family life cycle) 개념을 응용한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수립된 것으로, 중장기적 시각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6-2]에는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정책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여섯 단계의 가족 생애주기에 필요한 각각의 정책과제와 전체 단계에 걸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① 결혼 준비기: 결혼중개 탈법방지 및 결혼예정자사전 준비 지원, ② 가족 형성기: 결혼이민자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지원, ③ 자녀 양육기: 다문화가족자녀 임신·출산·양육지원, ④ 자녀 교육기: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습발달 및 역량개발 강화, ⑤ 가족역량강화기: 결혼이민자 경제·사회적 자립 역량 강화, ⑥ 가족 해체시: 해체 다문화 가족 자녀 및 한 부모 가족 보호·지원, ⑦ 전(全) 단계: 다문화사회 이행을 위한 기반 구축. 이민자 유입과 정착 기간이 장기화 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그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그림 6-2]의 정책을 결혼이민자 입국 전후로 재분류하여,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체계를 파악하면 [그림 6-3]과 같다. 입국 전에는 ‘결혼준비지원’이, 입국 후에는 ‘초기 사회적응 지원’, ‘자녀 양육 지원’,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이 배치되어 있다. 각 단계별로 사회통합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 [그림 6-4]와 같이 입국 전후부터 시간의 경과와 아울러 국적 취득이 이루어지면서 발생하는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지원하고 있다. 국적 취득 이전에는 이민자로서의 초기 적응 수요가 많다면, 국적 취득 이후에는 점차 일반 한국인의 정책 수요와 비슷해진다.

입국 전	입국 후		
결혼준비지원	초기사회적응지원	자녀양육지원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사전정보제공 · 결혼중개업 관리 · 현지 담당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교육 · 다국어 정보제공 · 통번역서비스 · 한국문화이해교육 · 가족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양육지원 · 언어발달지원 · 이중언어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교육·연계 자조모임

[그림 6-3]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체계



[그림 6-4] 다문화가족의 국적 취득 전후 정책 수요

요컨대, 한국의 다문화가족 정책은 매우 체계적으로 잘 짜여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베트남 출신으로 국제결혼중개업체 소개로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서 한국에 살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에 국한하여, 그 정책을 평가하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유형의 결혼이민자, 예컨대 중국 조선족 또는 일본인 여성 결혼이민자가 원하는 정책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는 미흡한 면이 있고, ‘선진국 출신의 남성 결혼이민자’ 또는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 일하다가 한국인 배우자를 만난 남성 또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정책 수요를 충족하는 것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정책은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문부터 개입하려는 차원에서 입안된 것이므로, 그 자체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다양한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대상자별로 특화된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정책을 이루는 것은 곤란하다.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방향의 첫째 항목인 ‘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실천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요 대상별로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그것을 실행하여야 한다.

3. 다문화가족정책의 중장기 대책

여기에서는 여섯 가지 사항을 중장기 대책으로 제시하기로 한다.

1) 결혼이민자 복지혜택 차별 철폐

정부의 결혼이민자 지원 대책은 복지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선진 복지국가와 한국의 이민자 통합 정책을 비교할 경우, 한국의 현행 정책은 매우 세분되어 있는 데 반해, 유럽 선진국의 정책은 ① 체류자격과 국적 관련 정책과 ② 이민자를 위한 언어와 적응 교육만이 두드러질 뿐 나머지 정책은 특별히 드러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 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서비스’에 의거하여 이민자 통합 문제를 해결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영국·프랑스·독일에서는 ‘외국인 등록’을 필하고 합법적 ‘체류허가’를 가진 모든 외국인에 대해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많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영국·독일·프랑스·캐나다·일본 등 선진국 정부는 ‘자국인의 배우자’인 결혼이민자에 대해 귀화하기 이전이라도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사회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정책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들이 한국인으로 귀화를 했든 안했든 ‘한국인의 배우자·부모·자녀’라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결혼이민자는 한국인의 가족 성원인 이상 자녀가 없고 외국 국적을 유지하더라도 복지제도 적용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한국인의 가족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자국민과 차등 없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부여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예산 제약이란 난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제도를 국민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러 유형의 외국인 중에서 ‘영주자’(F-5)와 ‘한국인의 배우자’(F-2-1) 및 ‘영주자의 배우자’(F-2-2)에 대해서는 ‘내국민 대우’를 해주는 방향으로 중장기 예산계획을 세워야 한다.

2) 국민의 배우자 비자 발급 요건의 강화

제4장의 분석에 의하면 결혼이민자 가족 중 일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고, 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아야 할 정도로 빈곤함에도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설동훈 외, 2005). 그것은 한국정부가 한국인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그 ‘혼인의 진정성’만을 따져 ‘위장결혼’이 아닌 경우 ‘인도적 관점’에서 거주 사증을 발급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런데 미국·영국·독일 등 선진복지국가에서는 자신의 배우자에게 안정된 주거와 생활여건을 제공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배우자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

<표 6-4> 미국인의 배우자가 비자 발급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재정보증서류

구비서류	K1/2	K3/4	CR/IR
재정보증서 I-864EZ (Affidavit of Support Under Section 213A of the Act), I-864 (Affidavit of Support Under Section 213A of the Act), I-864A (Contract Between Sponsor and Household Member)와 서명자의 시민권자·영주권자 증명, I-864 서명당시의 최근 세금보고서	X	X	○
재정보증서 I-134 (Affidavit of Support)와 보충서류	○	○	X

주: 1) IR-1/IR-2: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국 시민권자의 만21세 미만의 자녀(이민비자)
 2) CR-1/CR-2: 결혼기간이 2년이 넘지 않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만 21세 미만의 자녀(이민비자). 미국시민권자와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2년미만일 경우, 배우자는 조건부영주권을 받는다.
 3) K-3/K-4: IR-1/IR-2의 수속기간이 길어지는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자녀(비이민비자)
 4) K-1/K-2: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약혼자의 동반자녀(비이민비자)
 자료: 주한미국대사관, “이민(IV), 약혼, LIFE 법령(K/V) 비자 면접약속 안내,” 2008. <http://korean.seoul.usembassy.gov/uploads/68/H-/68H-J6XN2pieo081hcT5Ew/iseo13mayo8h.pdf>.

미국에 가려는 모든 이민신청자는 비자를 신청할 때 미국에 도착 후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를 받지 않을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결혼이민자도 그 점에서 예외가 아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표 6-4>에 제시한 ‘초청자가 작성한 재정보증서류’(I-864)를 제출해야 한다. 초청자는 시민권 증명 및 이민신청자가 미국입국 후 받게 될 초청자의 현재, 지속적인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임을 증명해야 한다.3) 초청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소득세 납부 증명도 첨부해야 한다. 초청자

의 소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공동재정보증인이 I-864를 추가적으로 작성하고 필요한 첨부서류를 다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그렇게 ‘재정보증을 받은 이민자’가 미국 연방정부의 공공부조 혜택을 받게 되면, 재정보증인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에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다.⁴⁾

영국에서는 배우자 비자의 발급 요건에 “영국인 초청자는 공공기금(public funds)의 도움 없이 자신과 부양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영국인 초청자는 자신과 부양가족이 공공기금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적절한 주거(adequate accommodation)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두 가지 사항을 적시하고 있다(설동훈·이혜경·조성남, 2006: 269).⁵⁾

독일에서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이 ‘정착허가’(Niederlassungserlaubnis)를 받기 위해서는 “생계가 안정되어 있고, 최소한 60개월 동안 법정 연금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본인 및 동거 가족을 위한 적절한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설동훈·이혜경·조성남, 2006: 288).

거의 모든 선진복지국가에서 정부는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는 자국민에게 주거와 재정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일정 기간 공공부조 혜택을 받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연대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매우 야박하게 들리겠지만, 그러한 정책이 전지구적 표준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알선하는 국제결혼이 성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3) 주한미국대사관,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와 직계가족,” 2009. http://korean.seoul.usembassy.gov/spouse_of_american.html.

4) 미국 연방정부의 공공부조 프로그램은 다섯 가지가 대표적이다. ① 푸드 스탬프(Food Stamp): 소득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영양가 있는 식품을 살 수 있도록 지급하는 교환권. ② 생활보조금(Supplement Security Income: SSI):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매월 제공하는 현금 급여. ③ 의료보호제도(Medicaid): 건강보험에 가입 되지 않았고 의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빈곤층 대상 의료보호제도. ④ 빈곤가족일시부조(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부양아동이 있는 한 부모 가족에게 제공하는 현금 급여. ⑤ 주(州)아동의료보험프로그램(State Child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 의료보호제도(Medicaid)의 하위유형으로, 저소득층의 아동·청소년(children and teenagers)을 위한 의료보험. 주한미국대사관, “재정보증서(I-864 시리즈의 양식) FAQ,” 2009. http://korean.seoul.usembassy.gov/affidavit_of_support.html.

5) <http://www.ukba.homeoffice.gov.uk/partnersandfamilies/partners/husbandswivescivilpartners>.

때, 그러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결혼이민자의 기초적 생활 보장을 한국인 배우자 (또는 그의 재정보증인)에게 요구함으로써 최소한의 경제적 지위 보장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국제결혼중개업체가 그러한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탈법 행위를 할 경우 처벌조항을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에 넣어둘 경우, 그 법률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조항으로 기능할 것이다. 결혼이민자 주거와 재정 능력 입증 제도가 시행되어 정착될 경우, 결혼이민자에게 차등 없는 복지 혜택을 부여하기는 매우 용이한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제4장에서 분석한 결혼이민자 대상 기초생활보장비 지출은 0이 될 것이고,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 전원에게 내국인과 차등 없는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장기과제’에서 ‘단기과제’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3)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 범위 확대

한국에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진다. 법률의 명칭은 다문화가족지원법으로, 결혼이민자뿐 아니라 다른 이민자 또는 종족적 소수자를 포괄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으나, 실상은 결혼이민자지원법을 예들려 표현한 것이다.

한국에서 법률 용어로 “다문화” 개념이 도입된 맥락은 제17대 국회 제269회 여성가족소위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법안(대안) 심사 과정에서 소위원장이 발언한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설동훈, 2009c). 그는 “다문화가족”의 개념을, “사실은 이주민가족이지만 사회적으로 낙인찍지 말자는 의미에서 다문화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취지로 도입하였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그 명칭이 의미하는 바와는 달리 ‘다문화가족 일반’이 아니라 “날 때부터”(生得的) 한국인과 결혼한 결혼이민자 또는 혼인귀화자 가족만 지원하는 법률이다. 그러므로 귀화한국인이 국제 결혼할 경우, 그의 배우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유학생은 배우자 동반이 가능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고용허가제·방문취업제를 통한 저숙련 이주노

동자는 그가 비록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배우자를 동반하거나 초청할 수도 없다. 서류미비 이주노동자 가족이 적용 대상이 아님은 부연의 여지가 없다. 그것이 한국의 다문화사회 정책의 핵심인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현실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날 때부터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또는 국적취득자만 지원하는 제한 규정은 삭제하는 게 옳다. 그것은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이룩하여야 한다.

4)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개정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다문화가족을 정의하면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결혼이민자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원래 결혼이민자는 본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한국국적을 취득한 것에 관계없이 사용하도록 고안한 개념이지만,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 ‘외국인’의 한 범주로 규정하다보니 국적취득자는 ‘결혼이민자’가 아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국적법상 간이귀화의 사유로 혼인이 있음을 고려하여 ‘혼인귀화자’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렇지만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를 병렬해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우스꽝스럽다. 단일 법률 안에 결혼과 혼인이라는 동의어가 사용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라 치더라도, 혼인귀화자는 결혼이민자의 한 하위유형일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이다. 말하자면, 결혼이민자 개념이 학계에서 사용하는 개념 또는 일상용어와는 다르게 정의된 것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의 ‘외국인주민’에는 국적취득자와 결혼이민자의 자녀 등 한국인이 포함된다. 정책당국에서 한국인을 외국인이라 부르는 기가 막힌 현실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포괄 범위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한 외국인과 국적취득자 처우 기본법’으로 법률 명칭을 바꾸고, 결혼이민자는 외국인과 국적취득자를 포괄하는 개념으

로 개정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그렇게 되면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혼인귀화자라는 용어는 불필요하게 될 것이고, 행정안전부 조사의 ‘외국인주민’ 개념은 ‘이민자주민’으로 쉽게 바꾸어 부를 수 있을 것이다.

5) 다문화가족정책의 다문화 감수성 함양

이민자의 사회통합 지원과 관련한 향후 과제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사회적 포함(social inclusion)의 실천’이다.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전체 구성원들이 부단히 노력하는 길밖에 없다.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이 사회적 포용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여야 한다. 정부는 규제와 지원이라는 두 방향에 걸친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을 적절히 활용하여, 시민사회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다문화 감수성 함양이 필수적이다.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면서, “다문화 아동” 또는 “다문화 아이들”이라는 표현도 통용되고 있는데, 그 용어 자체의 의미와는 무관하게 아이들을 ‘일반 한국인 아동’과 구분 짓고 편 가르며 따돌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말하자면,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를 한 개인의 지칭하는 집합적 개념으로 사용할 경우 그것은 차별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다문화가족 아이들 전용 공부방, 다문화학교 건립 역시 그 의도의 순수성과는 무관하게 그들을 격리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과거 1960년대 미국 인종차별철폐 정책의 출발점이 인종별로 분리되어 있던 학교를 통합하는 것이었음에 주목하면, ‘결혼이민자 아이들만 다니는 학교’는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또는 한국사회의 주요 구성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옳지만, 그들이 “우리도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으로 받아주세요.”라고 구걸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명백히 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 결혼이민자를 ‘일반 한국인들’과 구분되는 수동적 존재로 ‘격리’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다문화 감수성을 부여하려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6) 국민들의 다문화사회의식 고취

한국사회에는 수많은 외국인과 이민자가 거주하고 있다. 한국의 주요 도시에는 인종적·민족적 다양성이 이미 충분히 확보된 상태이다. 그렇지만 한국인들이 외국인과 함께 어울려 살 준비는 아직 덜 되어 있다. 일부 한국인들은 외국인의 유입을 순수혈통을 훼손하는 잡종교배로 파악하기까지 한다. 한국인들의 외국인에 대한 배타의식은 경우에 따라서는 차별적인 태도로 발현되는 바,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이민자를 일방적으로 ‘피해자’ 또는 ‘구호대상자’로 보는 관점 역시 극복되어야 한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타개하는 진취적인 인간이다. 이민이 사회구조적 속박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 또는 그 가족의 자발적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주류를 이룸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다문화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민자와 한국인 양자가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각각 상대방에게 적응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적응의 부담은 “뿌리 뽑힌 삶”을 영위해야 하는 외국인·이민자에게 더욱 가중된다. 그들은 한국어를 익혀야 하고, 한국문화와 관습을 이해하고 적응하려 노력해야 한다.

한국인들의 부담은 외국인·이민자만큼 크지는 않으나, 낯설고 이질적인 존재를 용인하고 이해하여야 하는 과제가 던져 진다. 한국인들은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학습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학교 교육은 물론이고, 대중매체를 활용한 국민의식 개혁 운동을 벌여야 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강혜정. 2009. 『농촌 다문화 후계세대 육성 방안에 관한 연구』. 농림수산물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 법무부 · 행정안전부 · 지식경제부 · 노동부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008. 『글로벌 고급인력 유치 방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05. 『외국인 진정 관련 결정례 등 자료 모음집』.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국.
- 김이선 · 황정미 · 이진영. 2007. 『다민족 ·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 (I): 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노동부 · 법무부 · 보건복지가족부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008.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국무총리실 외국인정책위원회. 2006.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국무총리실 외국인정책위원회.
- 박세훈 · 정소양. 2009.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따른 외국인의 공간분포 특성과 시사점.” 《국토정책 Brief》 254: 1-7.
- 박정경수. 2009. “범죄통계를 통해서 본 2009년 상반기 미군범죄.” 《평화의 불씨》 제70호.
- 법무부 · 통계청. 2008. 『체류 외국인 추계』. 법무부.
- 보건복지가족부. 2008.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대책』.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 2009. “다문화가족 기초현황자료.” 미간행.
- 설동훈. 2005. “이민과 다문화 사회의 도래.” 김영기 편, 『한국사회론』. 전북대학교출판부. pp. 3-23.
- 설동훈. 2007a. “외국인 ·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일반행정분야 종합보고서』.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야별 작업반. pp. 304-371.

- 설동훈. 2007b.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현실과 권리 보호.” 이재연·안동현·황옥경 편, 『아동과 권리』. 창지사. pp. 173-189.
- 설동훈. 2008.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현황과 정책.” 조정남 편, 『신세기의 민족질서와 한민족』. 백상재단. pp. 457-520.
- 설동훈. 2009a. “국내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과 교육: 소아를 중심으로.” 《대한소아과학회지》 52(4): 277-283.
- 설동훈. 2009b. “한국사회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새로운 ‘소수자 집단’에 대한 사회학적 설명.” 《사림》 34: 53-77.
- 설동훈. 2009c. “한국사회의 다문화 담론에 대한 성찰적 접근.” 『역사적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세계’의 아이덴티티와 다양성 (I)』. 동북아역사재단. pp. 167-192.
- 설동훈·김명아. 2008. 『한국의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 및 지수 개발에 대한 연구』. 법무부.
- 설동훈·김윤태·김현미·윤홍식·이혜경·임경택·정기선·주영수·한건수.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설동훈·김찬기. 2009.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 개편을 위한 연구』. 법무부.
- 설동훈·이혜경·조성남. 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유길상·이규용·설동훈·박성재. 2005. 『이민정책에 관한 연구』. 대통령자문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 유희정. 2008.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 실태 및 지원방안.” 《육아정책연구》 2(1): 1-22.
- 윤정향. 2009. 『외국인력 수요분석 및 활용방안』. 한국고용정보원.
- 이규용·유길상·이해춘·설동훈·박성재. 2007.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및 중장기 관리체계 개선 방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이규용·조동훈·박성재·설동훈·주무현. 2007. 『구조변화와 이주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이삼식·박종서·김필숙·김형석.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출산 행태와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종성. 2001. 『텔과이 방법』. 서울: 교육과학사.
- 이혜경 · 설동훈 · 전주상. 2009. 『이민자 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 효율화 방안』. 법무부.
- 통계청. 1990-2009. 『인구동태통계연보』. 통계청.
- 통계청. 2006.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 한건수 · 설동훈. 2007. 『이주자가 본 한국의 정책과 제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통계진흥원. 2009. 『2009 통계로 보는 대한민국』. 한국통계진흥원.
- 한백연구실. 1994. “노동시장개방의 문화적 파장.” 《포럼21》 10(여름): 29-45.
- 행정안전부. 2009. 『200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행정안전부.
- Alba, Richard D. 1985. *Italian Americans: Into the Twilight of Ethnicit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Alba, Richard D., and Victor Nee. 1997. “The Assimilation of Immigrant Groups: Concept, Theory, and Evidenc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1(4): 826-874.
- Attali, Jacques. 2005. “Monogamy: Here Today, Gone Tomorrow.” *Foreign Policy*, September/October 2005.
- Bodvarsson, Örn B., and Hendrik Van den Berg. 2009. *The Economics of Immigration*. Berlin: Springer-Verlag.
- Borjas, George. 1990. *Friends and Strangers: The Impact of Immigrants on the U.S. Economy*. New York: Basic Books.
- Borjas, George. 1994. “The Economics of Immigration.”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2(4): 1667-1717.
- Bonacich, Edna. 1972. “A Theory of Ethnic Antagonism: The Split Labor Marke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7(5):547-559.
- Castles, Stephen. 2007. “Will Labour Migration lead to a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 Paper presented at *Global Human Resources Forum 2007*, Seoul, 23-25 October, 2007.
- Castles, Stephen, and Mark J. Miller. 2009. *The Age of Migration*, 4th Edition.

- New York: Guilford Press.
- Chiswick, Barry R. 1978. "The Effect of Americanization on the Earnings of Foreign-Born M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6(5): 897-921.
- Chiswick, Barry R. 1979. "The Economic Progress of Immigrants: Some Apparently Universal Patterns." Pp. 357-399 in *Contemporary Economic Problems*, edited by William Feller. Washington, DC: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 Chiswick, Barry R. 2005. *The Economics of Immigration: Selected Papers of Barry R. Chiswick*. Cheltenham, England: Edward Elgar Publishing.
- Cohen, Robin. 2006. *Migration and its Enemies: Global Capital, Migrant Labour and the Nation-State*. Aldershot, England: Ashgate Publishing Limited.
- Cornelius, Wayne A., Takeyuki Tsuda, Philip L. Martin, and James F. Hollifield (eds.). 2004. *Controlling Immigration: A Global Perspective*, 2nd Editio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Cortese, Anthony J. 2003. *Walls and Bridges: Social Justice and Public Policy*.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DeVoretz, Don J. 2004. "Immigration Policy: Methods of Economic Assessment." *IZA Discussion Paper* No. 1217. Bonn, Germany: Das Institut zur Zukunft der Arbeit (IZA).
- Ehrenberg, Ronald G., and Robert S. Smith. 2006. *Modern Labor Economics: Theory and Public Policy*, Ninth Edition. Boston, MA: Pearson/Addison-Wesley.
- Entzinger, Han, and Renske Biezeveld. 2003. "Benchmarking in Immigrant Integration." Report for the European Commission under contract No. DG JAI-A-2/2002/006. Rotterdam, Netherlands: European Research Centre on Migration and Ethnic Relations (ERCOMER).
- European Commission. 2005. *Confronting Demographic Change: A New Solidarity Between the Generations*.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 Favell, Adrian. 2001. "Integration Policy and Integration Research in Europe:

- Review and Critique.” Pp. 349-400 in *Citizenship Today: Global Perspectives and Practices*, T. Alexander Aleinikoff and Douglas Klusmeyer.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Gaston, Noel, and Douglas Nelson. 2002. 12 The Employment and Wage Effects of Immigration: Trade and Labour Economics Perspectives. Pp. 201-235 in *Trade, Investment, Migration and Labour Market Adjustment*, edited by David Greenaway, Richard Upward and Katharine Wakeli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Gordon, Milton M. 1964. *Assimilation in American Life: The Role of Race, Religion, and National Origi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ordon, Milton M. 1978. *Human Nature, Class and Ethnic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ott, Ceri, and Karl Johnston. 2002. “The Migrant Population in the UK: Fiscal Effects.” *RDS Occasional Paper* No. 77. London: Home Office Research, Development and Statistics Directorate (RDS).
- Gross, Dominique M. 2007. “Immigration Incentives and Policy in Switzerland.” Pp. 183-213 in *International Migra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cy*, edited by Çağlar Özden and Maurice Schiff.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Hirschman, Charles, and Luis Falcon. 1985. “The Educational Attainment of Religio-ethnic Groups in the United States.” *Research in Sociology of Education and Socialization* 5: 83-120.
- Hirschman, Charles, and Morrison G. Wong. 1986. “The Extraordinary Educational Attainment of Asian Americans: A Search for Historical Evidence and Explanations.” *Social Forces* 65(1): 1-27.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2004. *Essentials of Migration Management: A Guide for Policy Makers and Practitioners, Volume Three: Managing Migration*. Geneva: IOM.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2005. *World Migration 2005: Costs and Benefits of International Migration*. Geneva, Switzerland: IOM.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2008. *World Migration 2008: Managing Labour Mobility in the Evolving Global Economy*. Geneva, Switzerland: IOM.
- Knox, Gary. 1983. "Slums and Poverty. Pp. 135-150 in *Social Costs in Modern Society: A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ssessment*, edited by John E. Ullmann. Westport, CT: Quorum Books.
- Kronauer, Martin. 1998. "Social Exclusion and Underclass: New Concepts for the Analysis of Poverty." Pp. 51-75 in *Empirical Poverty Research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edited by Hans-Jürgen Andreß. Aldershot, England: Ashgate Publishing Limited.
- Kymlicka, Will. 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Oxford, England: Clarendon Press.
- Landry, Bart. 1987. *The New Black Middle Class*.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assey, Douglas S., and Nancy A. Denton. 1987. "Trends in Residential Segregation of Blacks, Hispanics, and Asians: 1970-1980."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6): 802-825.
- Meyers, Eytan. 2007. *International Immigration Policy: A Theoretical and Comparative Analysi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Milewski, Nadja. 2010. *Fertility of Immigrants: A Two-Generational Approach in Germany*. Berlin: Springer-Verlag.
- Model, Suzanne. 1991. "Caribbean Immigrants: A Black Success Stor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5(2): 248-276.
- Niessen, Jan, Thomas Huddleston, and Laura Citron. 2007. *Migrant Integration*

- Policy Index 2006-2007*. Brussels: British Council Brussels.
- OECD. 2006. *From Immigration to Integration: Local Solutions to a Global Challenge*. Pari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OECD. 2009.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SOPEMI 2009 — Managing Labour Migration Beyond the Crisis*. Pari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Park, Robert Ezra. 1950. *Race and Culture*. Glencoe, IL: Free Press.
- Phillipson, Chris. 2006. "Ageing and Globalization." Pp. 201-207 in *The Futures of Old Age*, edited by John A. Vincent, Chris Phillipson and Murna Down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Phillipson, Chris. 2009. "Social Welfare, Aging, and Globalization in a Post-industrial Society." Pp. 57-70 in *The Welfare State in Post-Industrial Society: A Global Perspective*, edited by Jason Powell and Jon (Joe) Hendricks. New York: Springer.
- Portes, Alejandro. 1995a. "Economic Sociology and the Sociology of Immigration: A Conceptual Overview." Pp. 1-41 in *The Economic Sociology of Immigration: Essays on Networks, Ethnicity, and Entrepreneurship*, edited by Alejandro Porte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Portes, Alejandro. 1995b. "Children of Immigrants: Segmented Assimilation and Its Determinants." Pp. 248-280 in *The Economic Sociology of Immigration: Essays on Networks, Ethnicity, and Entrepreneurship*, edited by Alejandro Porte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Portes, Alejandro. 2009. "Migration and Development: Reconciling Opposite Views." *Ethnic and Racial Studies* 32(1): 5-22.
- Portes, Alejandro, and József Böröcz. 1989. "Contemporary Immigration: Theoretical Perspectives on Its Determinants and Modes of Incorpo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3(3): 606-630.
- Portes, Alejandro, and Rubén G. Rumbaut. 1996. *Immigrant America: A Portrait*, 2nd

- Edition.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Portes, Alejandro, and Rubén G. Rumbaut. 2001. *Legacies: The Story of the Immigrant Second Generation*.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Portes, Alejandro, and Alex Stepick. 1993. *City on the Edge: The Transformation of Miami*.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Portes, Alejandro, and Min Zhou. 1993. "The New Second Generation: Segmented Assimilation and Its Variants."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30: 74-96.
- Rumbaut, Rubén G. 1994. "The Crucible Within: Ethnic Identity, Self-Esteem, and Segmented Assimilation among Children of Immigrant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8(4): 748-794.
- Rumbaut, Rubén G, and Alejandro Portes. 2001. *Ethnicities: Children of Immigrants in America*.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eol, Dong-Hoon. 2005. "Global Dimensions in Mapping the Foreign Labor Policies of Korea: A Comparative and Functional Analysis." *Development and Society* 34(1): 75-124.
- Seol, Dong-Hoon. 2006. "Earnings Divergence of Foreign Workers in Korea in the 1990s: Dynamics of the Decline of Wage Discrimination against Industrial Technical Trainees." Pp. 167-228 in *East-Asian Cooperation in the Global Era*, edited by Seong-Ho Ahn and Byeong-Il Rho. Seoul: Daunsae Press.
- Seol, Dong-Hoon, and John D. Skrentny. 2004. "South Korea: Importing Undocumented Workers." Pp. 481-513 in *Controlling Immigration: A Global Perspective, 2nd Edition*, edited by Wayne A. Cornelius, Takeyuki Tsuda, Philip L. Martin, and James F. Hollifield.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Seol, Dong-Hoon, And John D. Skrentny. 2009a. "Ethnic Return Migration and Hierarchical Nationhood: Korean Chinese Foreign Workers in South Korea." *Ethnicities* 9(2): 147-174.
- Seol, Dong-Hoon, And John D. Skrentny. 2009b. "Why Is There So Little Migrant

- Settlement in East Asia?"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3(3): 578-620.
- Silver, Hilary. 1994. "Social Exclusion and Social Solidarity: Three Paradigm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33(6): 531-577.
- U.K. House of Lords. 2007a. *The Economic Impact of Immigration, Volume I. Report*. London: House of Lords.
- U.K. House of Lords. 2007b. *The Economic Impact of Immigration, Volume II. Evidence*. London: House of Lords.
- United Nations. 1998.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1998 Revision*. New York: United Nations.
- United Nations. 2001. *Replacement Migration: Is It a Solution to Declining and Ageing Populations?* New York: United Nations.
- United Nations. 2006. *International Migration 2006*. New York: United Nations.
- Waldinger, Roger. 1996a. *Still the Promised City: African-Americans and New Immigrants in Postindustrial New York*.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Waldinger, Roger. 1996b. "Ethnicity and Opportunity in the Plural City." Pp. 445-70 in *Ethnic Los Angeles*, edited by Roger Waldinger and Menhdi Bozorgmehr.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Waldinger, Roger, and Menhdi Bozorgmehr. Eds. 1996. *Ethnic Los Angele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Warner, W. Lloyd, and Leo Srole. 1945. *The Social Systems of American Ethnic Group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Warnes, Tony. 2006. "The Future Life Course, Migration and Old Age." Pp. 208-217 in *The Futures of Old Age*, edited by John A. Vincent, Chris Phillipson and Murna Down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Waters, Mary C., and Tomás R. Jiménez. 2005. "Assessing Immigrant Assimilation: New Empirical and Theoretical Challeng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31: 105-125.

- Wilson, Kenneth, and Alejandro Portes. 1980. "Immigrant Enclaves: An Analysis of the Labor Market Experiences of Cubans in Miami."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6(2): 295-319.
- Wirth, Louis. 1945. "The Problem of Minority Groups." Pp. 347-372 in *The Science of Man in the World Crisis*, edited by Ralph Lint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Wrench, John. 2007. *Diversity Management and Discrimination: Immigrants and Ethnic Minorities in the EU*. Aldershot, England: Ashgate Publishing Limited.
- Yu, Bin. 2008. *Chain Migration Explained: The Power of the Immigration Multiplier*. New York: LFB Scholarly Publishing LLC.
- Zhou, Min. 1997. "Segmented Assimilation: Issues, Controversies, and Recent Research on the New Second Gene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1(4): 975-1008.
- Zhou, Min. 2004. "Immigrants in the U.S. Economy." Pp. 131-153 in *International Migration: Prospects and Policies in a Global Market*, edited by Douglas S. Massey and J. Edward Taylo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Zhou, Min, and Yoshinori Kamo. 1994. "An Analysis of Earnings Patterns for Chinese, Japanese and Non-Hispanic Whites in the United States." *The Sociological Quarterly* 35(4): 581-602.
- Zolberg, Aristide R. 2006. *A Nation by Design: Immigration Policy in the Fashioning of America*.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부록

차례

- 부록 1. 다문화가족의 장래인구추계, 2009~2020년
- 부록 2. 제1차 전문가 델파이조사 질문지
- 부록 3. 제1차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정리
- 부록 4. 제2차 전문가 델파이조사 질문지

필자 소개

설동훈(薛東勳, Dong-Hoon Seol):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메일: dhseol@gmail.com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dhseol.org>

저서: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2005), 『이민정책에 관한 연구』 (2005),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2006), 『한국의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 및 지수 개발에 대한 연구』 (2008) 등.

서문희(徐文姬, Moon-Hee Suh):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

이-메일: suhnh@kicce.re.kr

저서: 『민간보육시설 기본보조금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기초조사』 (2007), 『영아보육종합방안 연구』 (2007) 등.

이삼식(李三植, Sam-Sic Le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메일: lss@kihasa.re.kr

저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결혼·출산행태와 정책방향』 (2007),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응 연구: 결혼·출산·자녀양육 친화적 가족문화 및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2007) 등.

김명아(金明阿, Myoung-Ah Kim):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이-메일: makim88@hanmail.net

저서: 『한국의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 및 지수 개발에 대한 연구』 (2008), 『사이버공간의 사회자본』 (2009) 등.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정책연구용역사업 연구보고서
다문화가족의 중장기 전망 및 대책 연구

인 쇄 : 2009년 10월 20일

발 행 : 2009년 10월 20일

지 은 이 : 설동훈 · 서문희 · 이삼식 · 김명아

발 행 인 : 전재희

발 행 처 :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110-793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전화: (02) 2023-8617

인 쇄 처 : 도서출판 기쁨사

전화: (031) 889-4451 팩스: (031) 889-4452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